

양화진의

진실



예자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의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

차례

『양화진의 진실 I』을 내며	04
1.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보고서의 근본적 오류와 한계	08
2.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보고서 각 주장의 허와 실	20
1) <양화진 사태의 개요>에 대하여	20
2) <예정 통합 총회장 성명서 - 작금의 유니온교회와 양화진외국인묘지 문제에 대한 본 교단의 입장>에 대하여	29
3) <마포구교회협의회성명서 - 양화진외국인묘원은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다>에 대하여	34

4) <예장통합 소속 100주년협의회 이사 제안서 –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45
5) <양화진외국인묘원에 1986년 세워졌다가 철거된 설명판>에 대하여	47
6) <우영수 목사 – 서울외국인묘지 사건의 실상>에 대하여	49
7) <이만규 목사 –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에 대하여	55
8) <정연희 – 한국교회 정말 어른이 안 계십니까?>에 대하여	64
9) <이재철 목사와 그 주변인사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하여>에 대하여	67
<부록 1>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84
<부록 2>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장 선교사 현황	202

『양화진의 진실 I』을 내며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강북노협 보고서)는 통합에 소속된 서울노회 · 서울동노회 · 서울북노회 · 서울강북노회 · 서울서노회 · 서울서북노회가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강북노협)란 이름으로 제작한 보고서입니다. 강북노협 보고서는 2009년에 열렸던 제94차 총회 때 1500여 명의 총대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100주년협의회)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100주년기념교회)는 강북노협 보고서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비판하는 보고서로서 갖추어야 할 사실적 · 법적 · 윤리적 정당성 중 그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강북노협 보고서에 공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쟁점들을 따져 볼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22일 예정통합 총회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소위 ‘총회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고회’에서 강북노협 보고서가 1년 만에 다시 배포되었고, 작년부터 최근까지 예정통합교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들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내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각종 형사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25년 전에 자신의 부친 언더우드 3세가 한경직 목사님과 합의하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을 100주년협의회에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소유권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연세대 교목실과 예장 통합을 내세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0년 8월 16일자 <기독교공보>는 선교기념관이 건축되기 3년 전 설교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으려고 힘쓰는 중입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해 “서울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예배 장소로 지어진 것으로 재확인”됐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형적인 왜곡 기사입니다. 기자가 인용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전집 17권 어디에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세운 선교기념관을 서울유니온교회에 영구적으로 지어 준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사실에 입각하여 바로 알리기 위해 『양화진의 진실 I -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 진상규명』을 내놓습니다.

이 진상규명집은 강북노협 보고서의 주장 하나 하나에 대해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강북노협이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이 불가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관련한 자료의 인용은 양화진문화원의 분류방식을 따랐고, 기타 자료는 일반 관례에 따라 출처를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유니온교회, 그리고 경성구미인모지회를 내세운 언더우드 4세 피터 언더우드는 수차례에 걸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형사상으로 고소, 고발하였지만 모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혐의없음이나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

나라 마포구교회협의회, 예정통합 교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당했던 간섭이나 수모 중 상당수는 현행법상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하지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일절 맞고소나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와 편견에 의해, 혹은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모두 함께 가야 할 형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오늘의 일을 물을 때 대답해 줄 역사적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래왔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지를 지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 8.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1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보고서의 근본적 오류와 한계**



이 글은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의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 전문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만 간추린 것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100주년협의회)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100주년기념교회)는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강북노협)가 제작한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보고서)에 실린 각각의 주장에 대해 차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공적인 보고서로서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오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적인 사실 확인 소홀

강북노협은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만,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을 공식화 한 것은 2003년 9월 30일의 제1차 임시이사회였습니다.¹⁾ “1986년에 세워진 양화진 봉헌관을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소설가 정연희 선생의 ‘봉헌’이라는 헌시(獻詩)가 새겨진 봉헌관은 처음 세워진 선교기념관 앞에 건재합니다. 양화진선교사모원이 “20명 이상의 담배를 금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양화진선교사모원 홈페이지(www.yanghwajin.net)에 접속만 해도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점은 알 수 있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묘지공원 전역을 기념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주일예배의 차량 통제를 위해 묘원 내 자동차 도로에 주차를 한 적은 있으나 자동차가 묘역을 침범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현재는 묘원 내 자동차 도로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강북노협은 이런 정도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 의도적인 사실왜곡

가. 이재철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주장

이재철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 보고서의 의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줍니다. 보고서 49쪽 <별첨7> 제목이 “이재철 목사 2007.10.18 100만원 벌금형 증명서”입니다만, 이는 이재철 목사에게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의 담당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고소자의 소 취하에 따라 법원은 이 공소장을 기각했습니다.²⁾ 강북노협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재철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나. 정체불명의 예장통합 소속 협의회 이사들 명의의 공문

보고서 10-12쪽의, 예장통합 소속 100주년협의회 이사 일동 명의의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은 협의회에 전달된 문서가 아닙니다. 강북노협은 보고서 앞에 수록한 ‘양화진 사태의 개요’에서 다른 사건들은 모두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반면 2008년 8월 8일자로 서명을 받은 이 문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양화진 사태의 개요’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를 불법적으로 쫓아냈다는 주장

강북노협은 보고서 4, 5-6, 19, 23, 27, 28쪽 등에서 100주년기념교회가 “2007년 8월 양화진 선교기념관에서 서울 유니온교회를 내쫓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유니온교회 측 인사가 외신기자에게 선교기념관의 건립용도가 묘지관리소라는 사실을 일러준 게 발단³⁾이 되어 마포구청은 선교기념관의 교회 및 예배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온교회는 그해 12월, 당시 100주년협의회회의 정진경 이사장·김경래 상임이사·정용섭 사무총장과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담임목사를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로 서울지방검찰청(서울지검)에 형사소송을 제기합니다. 2008년 3월에 이 사건이 서울지검에서 기각되자 서울고검에 항소합니다. 그러나 서울고검도 기각합니다. 그랬는데도 유니온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합니다. 재정신청은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거,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기각했을 때 고소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검사의 기각(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07년 12월 이전에도 재정신청제도가 있었지만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 이를테면 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인들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고발의 경우는 종전과 같습니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온교회는 서울지검과 고검이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니 서울고등법원에서 직접 이 사건을 심리하여 기소를 강제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가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더 이상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를 이유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과 고등법원은 공히 100주년협의회나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 즉 유니온교회를 쫓아내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⁵⁾ 그럼에도 강북노협이 유니온교회를 쫓아낸 것이 100주년기념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행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거부하는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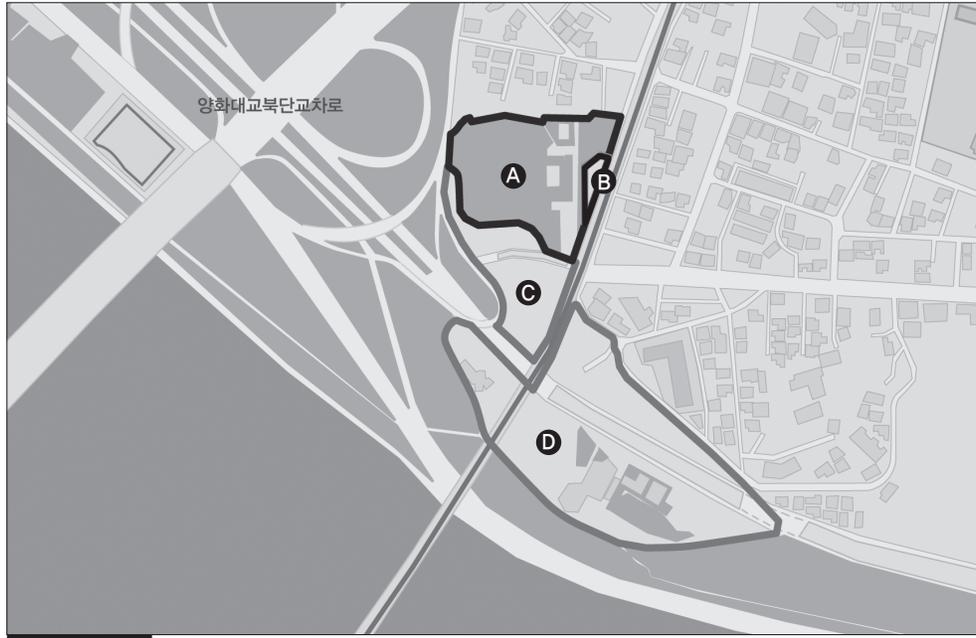
라.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역사왜곡을 했다는 주장

보고서는 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 설명판(서울 유니온교회의

역사적 배경 및 양화진 이야기를 기록한 설명판)을 무단 강제철거”하여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양화진 설명판’은 양화진선교사묘원 내의 나무처럼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청의 허가나 법령에 따라 설치나 제거를 해야 하는 시설물도 아닙니다. 100주년협의회가 세운 설명판을 100주년협의회 스스로 철거한 이유는 설명판의 오류, 이를테면 이미 고인이 된 한경직 목사가 여전히 100주년협의회 이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공원 기념을 위한 영구시설인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시설’로 오역되었거나, 1890년 당시 조선 왕을 황제라고 표기했거나, ‘Mission Memorial’로 표기해야 할 선교기념관을 ‘Memorial Chapel’로 표기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마.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조성한 양화진성지공원의 예산이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사용되었다는 주장

양화진성지공원과 양화진선교사묘원은 모든 면에서 별개입니다. 양화진성지공원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절두산 성지 사이에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130억을 들여 조성한 공원입니다.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공동 조성한 이 공원은 양화진선교사묘원과는 완전히 다른 공원입니다. 이처럼 양화진성지공원과 양화진선교사묘원이 별개이듯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양화진홍보관도 별개입니다. 현재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양화진홍보관은 양화진선교사묘원 경계 밖에 위치합니다. 땅도 마포구 소유입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홍보관을 건축해 2007년 12월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했으며, 그때부터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주관한 양화진성지공원을 완공한 2005년 5월은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마포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양화진성지공원에 사용된 예산 내역을 10일 이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모지회를 내세운 피터 언더우드이든 유니온교회이든 예장통합이든 이렇게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계속 해서 내고 있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이후 현금 중 50%는 반드시 교회 밖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정관⁶⁾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 5년 1개월 동안 75억을 들여 홍보관 건립과 양화진선교사묘원 및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세계적 표준에 입각하여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강북노협, 예장통합, 유니온교회와 피터 언더우드를 앞세운 경성구미인모지회 등은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맡은 이후의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변모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양화진성지공원의 예산



양화진선교사묘원(A)은 마포구 합정동 140, 141, 144, 145-1, 145-2, 145-3, 145-5, 146, 147, 147-1을 포함하고 있으며,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양화진홍보관(B)은 마포구가 소유한 142번지에 세워져 있다. 즉,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 밖에 있다. 그림 속 C가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130여 억을 들여 조성한 양화진성지공원이며, D는 절두산성지이다.

이 양화진선교사묘원에 투입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현행법에 대한 이중적 태도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강북노협이나 예장통합, 그리고 유니온교회나 마포구교회협의회 의 가장 큰 모순은 현행법에 대한 이중적 태도입니다. 한편에서는 현행법을 무시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끈질기게 민형사상으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가. 합법적 재판의 결과 수용 거부

- 재판에 의해 확정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법적 소유권⁷⁾을 현재까지 거부

경성구미인모지회(당시 대표 언더우드 3세)와 100주년협의회(당시 이사장 한경직 목사)는 1985년, 재판에 의해 합법적 증여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현재, 피터 언

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내세워 당시 자신의 부친이 한 일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재정신청 판결 불인정

유니온교회가 자신들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에 고소한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 사건이 기각되자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던 일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신청에서 기각되었다는 것은 유니온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낸 '예배 및 묘비관리 업무방해' 소송이 형사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를 쫓아내지 않았음이 더 이상 의의제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온교회와 강북노협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쫓겨났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자기 이름을 음각한 헤이든 기포드, 존슨 선교사와 묘지관리인이었던 최봉인 기념비를 원상 복구하라는 양화진선교회 회장 신호철의 '묘지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⁸⁾, 또는 각하⁹⁾ 결정 거부

서교동교회(담임목사 우영수) 은퇴장로이며 양화진선교회 회장 신호철이 2006년과 2007년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비석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묘비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은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노협은 마치 100주년기념교회가 적법하게 세워진 선교사묘비를 철거한 것처럼 "양화진 묘원에 세워졌던 봉헌판과 선교사 묘비를 즉각 원상복구하라"는 주장을 현재까지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 무혐의 결정 거부

피터 언더우드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름으로 2007년 12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양화진선교사묘원 내의 묘목을 동의 없이 자른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노협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여전히 현행법이나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원 내의 묘목을 잘랐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 목적 달성을 위한 민형사상의 소송 남발

-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4건의 민형사상 소송 제기

유니온교회와 급조된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거듭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어이 80세가 넘는 100주년협의회의 고 정진경 이사장이나 김경래 상임임사, 그리고 100주년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에게 수갑을 채우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 습니다. 만약 한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합법적이지 않은 근거를 내세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형사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온교회를 위시한 그분들은 고 정진경 목사, 이재철 목사, 김경래 장로, 정용섭 장로를 “쫓아낸 사람”들이라며 형사 고소하고 사법부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와 존 린튼, 그리고 강북노협 등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필요에 따라 거부하는 한편 자신들이 법원이나 검찰에 여러 차례 고소를 했지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죄를 입증하는데 실패한 문건들이 마치 결정적인 증거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 강북노협 핵심 주장의 논리적 모순

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은 외국인묘지공원이라 주장하면서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라는 주장

예정통합 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우영수 목사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본래 이름인 ‘서울 외국인묘지공원’으로 불러야 한다”며,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을 ‘양화진선교사묘원’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영수 목사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한국 기독교 공동유산이며 성지이므로 한국 기독교계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한 입으로 외국인묘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입으로는 한국기독교의 성지이므로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외국인묘지’라 부를 것인지 아니면 ‘선교사묘원’이라 부를 것인지는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이 단순히 ‘외국인이 묻힌 묘지’라면 한국 기독교계가 1980년대 초반부터 이곳에 막대한 재정을 들여 10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한국교단 대표들과 함께 100주년협회의 재단법인 설립 결정을 추진해 놓고 대표성 부정

유니온교회와 예장통합, 그리고 마포구교회협의회 등에서는 100주년협회가 첫째, 한국기독교 20개 교단과 26개의 연합체임을 천명하면서도 양화진선교사모원 관리권을 100주년기념교회에 위임하면서 소속 교단이나 단체들과 어떤 협의도 구한 바 없기 때문에, 둘째 100주년협회 이사를 각 교단이 파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예장통합 양화진대책분과장 이만규 목사는 100주년협회가 “교단의 대표성을 가진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양화진선교사모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없는 “임의 단체”라고 주장합니다.¹⁰⁾

1980년대 초반 100주년협회는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100주년기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의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간파한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최창근 장로, 현 100주년협회 이사)가 총회에 건의, 1983년 1월 31일 경동교회에서 열렸던 제3차 총회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가결하고 실행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였습니다. 100주년협회가 당시의 문화공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은 1984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¹¹⁾

이때 100주년협회는 '84 한국기독교 100주년선교대회(여의도)의 진행은 물론 추진하고 있던 모든 사업을 각 교단과 기관단체가 파송한 총대들이 모여 결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100주년협회가 재단법인 설립을 가결한 1983년 1월 31일의 제3차 총회 역시 17개 교단과 17개 기관단체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101명¹²⁾의 총대가 결정한 것입니다. 100주년협회 문서는 1983년 3차 총회에 각 교단과 기관단체가 파송한 총대 101명의 명단, 특히 예장통합 총회가 파송한 10명의 총대 중 참석자 8명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¹³⁾ 이런 업무 협조는 1984년 여의도 선교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0주년협회가 비법인사단에서 ‘재단법인’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한국교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임원, 즉 한경직, 강원룡, 박치순, 서병주, 이영수, 정진경, 지원상, 강병훈, 김용도, 신신묵, 강영백, 정이숙, 박순양, 최창근, 배태준 등의 이사와 양광석, 김경래, 김석태 등의 감사 선출 역시 한국교회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0주년협회가 갖는 대표성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위상과 권위를 상징”한다는 예장 통합 총회와 중경 총회장단¹⁴⁾, “한국교회의 대표신문”을 자처하는 <기독교공보>와 역사를 다루는 역사위원회에서는 100주년협회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부정합니다. 한국 기독교계가 힘을 모아 100주년 기념사업에 매진하던

1980년대에 100주년협의회를 이끌던 지도자는 예장통합 소속의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예장 통합 총회와 예하 기관들이 당시 100주년협의회가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이 불가능했던 역사적 정황¹⁵⁾을 인정하지 않거나, 100주년협의회 대표성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교단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재단법인인 100주년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업무의 검사와 감독¹⁶⁾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면 재단설립이 취소¹⁷⁾됩니다. 이사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면 해임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0주년협의회가 정관의 3조(목적)와 4조(사업)에 근거하여 설립한 100주년기념교회에게 맡긴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유지와 관리의 현행법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자기 주장을 뒤엎는 비윤리적 행동

유니온교회·급조한 경성구미인모지회를 앞세우는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4세)와 존 린튼·강북노협·예장통합 등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한경직 목사와 언더우드 3세(원일한 장로) 및 한국교회를 옥보인다는 주장을 이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조상이나 교단의 원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평가절하하고 있는지는 다음이 잘 보여줍니다.

가. 한경직 목사와 언더우드 3세를 모독한 예장통합 양화진문제대책분과장 이만규 목사
예장통합 총회 역사위 양화진문제대책분과장 이만규 목사는 2009년 5월 5일자 <기독교공보>에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념사업회가 일시적으로 관리를 해주려고 명의를 신탁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명의신탁’은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신탁하는 자와 받는 자가 공모하여 부동산 등의 명의를 감추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규 목사는 한경직 목사와 언더우드 3세(원일한 장로)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명의신탁’이라는 불법적 거래를 통해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분의 명예는 물론 한국 기독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니겠습니까.

나. 한경직 목사와 부친 언더우드 3세를 모독한 피터 언더우드(원한석)

양화진선교회의 신호철 회장은 2008년에 출판한 자신의 저서 『양화진외국인묘지 -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100주년협의회가 “당사자 간에 협의 통모하여” 소유권이 없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했다는 주장¹⁸⁾을 합니다. 언더우드 3세의 아들 피터 언더우드는 한국교회와 부친을 모독한 신호철을 꾸짖기는커녕 2008년 말, ‘급조한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워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신청’ 소송에서 1985년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계의 지도자들과 자신의 부친인 언더우드 3세 등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증여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펼칩니다.¹⁹⁾ 이어 피터 언더우드는 2010년 6월에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에서, 20여 년 전에 “원고 원일한과 피고 한경직 목사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토지 등기를 위해 ‘공모’하여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고, ‘편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²⁰⁾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교계 원로들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독하고 한국교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다. 이재철 목사에게 이단혐의를 씌우기 위해 타인의 글을 무단전재했을 뿐 아니라 글의 의도와 정반대로 사용한 예장통합 서울서노회

2009년 8월,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를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단헌법이 요구하는 직영 신학대학교 5인 이상 교수의 의견서도 받지 않고 털썩 기소부터 했다가²¹⁾ 정작 재판에서는 이단 혐의를 스스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1일에 예장통합 총회 때 배포한 보고서에 예장 합신 소속 노승수 목사가 자기 블로그에 올린 ‘사도신경의 음부강하에 대한 논란에 관하여’란 글을 무단 전재하였다가 비난을 자초합니다.²²⁾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 것은 노승수 목사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그 분의 ‘사도신경의 음부강하에 대한 논란에 관하여’란 글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요청한 사람이 양화진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우영수 목사와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노승수 목사가 강북노협에 의해 자기 글이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뉴스앤조이>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북노협은 노승수 목사의 글을 무단 전재함은 물론 이재철 목사에게 이단 혐의를 씌울 목적에서 그 글을 악의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10월 10일 서울서노회장 차광호 목사가 노승수 목사에게 사과를 하고 일단락되었습니다.²³⁾

라. 이재철 목사의, 소위 불법을 조사하기 위한 기소위원회 직후 기독교언론 기자에게 촌지 제공 시도한 서노회 차광호 노회장

예정통합의 서울서노회 차광호 노회장(당시)은 2009년 8월 28일, 이재철 목사의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제1차 기소위원회에서 모 기독교언론 기자에게 촌지를 건네려다가 거절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²⁴⁾ 현직 노회장이 소위 불법을 재판하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버젓이 촌지를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 1) 자료 2003-B-003 협의회, 임시이사회 의사록(2003.9.30)
- 2)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경성구미인묘지회 측에서는 검찰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대하여 ‘100만원 벌금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의 구형(求刑)에 불과한 것이며, 이마저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소송을 철회함으로써 모든 법적 소송은 종료되었다. (자료 2007-A-025 서울지검, 사자명예훼손 공소장(2007.10.18)/자료 2008-A-001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08.1.16))
- 3) 자료 2009-C-028-Y 지강유철, ‘유니온교회 문제, 그게 이렇습니다’, 〈버들꽃나루사람들〉(2009.09)
- 4) 마포구청은 ‘외국인묘지공원 관리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녹지환경과-13564)을 통해 “...건축물은 공원관리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되었으나 교회 및 예배 용도로 사용중에 있어 지역주민 및 각종 언론 등으로부터 문제화 되고 있기에 통보하오니 2007.8.20일한 당초 허가된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 (자료 2007-A-014 마포구 공문/녹지환경과-13564)
- 5)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 판결문에서 “100주년협의회 임원 내지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의 고소사실(업무방해)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자료 2009-A-009 서울고법, 재정신청 판결문(2009.4.13))
- 6)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7조 제정 31. 현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하여 사용한다. 32. 매월 첫째 주일에 그 전월의 재정 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 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면으로 보고한다. (자료 2006-C-009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 7) 양화진묘지는 1985년 5월8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100주년협의회 소유권이 인정되었고, 그해 6월17일 소유권등기를 마침으로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자료 1985-A-005 서울지법, 양화진 토지 소유권에 대한 판결문/자료 1986-A-002 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
- 8) 자료 2006-A-007 서울지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2006.12)
- 9) 자료 2007-A-008 서울고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항고) 결정문(2006.12)
- 10) 〈기독교공보〉 2009년 7월 18일 자 16면.
- 11) 자료 1984-B-010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법인 설립 허가증
- 12) 17개 교단 총대가 77명이요 기관단체 총대는 24명이었다.
- 13) 자료 1983-B-002 협의회, 제3차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각 교단 및 기관단체 참석자 명단. 이날 총회에

참석한 예장통합 총대는 박치순, 이의호, 림인식, 임옥 목사, 공덕귀, 이창로, 전재성, 최창근 장로 등 8명이며, 이들은 비법인사단이었던 100주년협회의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 14) 예장 통합 총회가 2009년 6월 10일 자료 협의회에 보낸 예장총 제93-710호 공문
- 15) 100주년기념사업협회가 집행한 예산만으로도 50억이 넘었던 수익금은 각 교단과 교회의 현금, 기념배지나 우표 등을 판매 수익금 뿐 아니라 양화진선교사모원 내의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의 건축에서 보듯 대우나 현대와 같은 그룹의 기부나 일부 성도들의 출연 등으로 채워졌는데 이런 모금이나 출연이나 기부가 가능해지기 위해서 재단법인의 설립은 정당했다.
- 16) 「민법」 제37조, 「공법」 제14조 및 제17조 및 「공법 시행령」 제27조.
- 17) 「민법」 제3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 18)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2008.1. p.144.
- 19)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 20)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2010.6).
- 21) 김세진,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다루기에는 ‘준비 미흡’”, <뉴스앤조이>, 2009년 8월 29일자.
- 22) 김세진,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잡기 위해서라면”, <뉴스앤조이>, 2009년 10월 9일자.
- 23) 김세진, “차광호 목사와 이 아무개 씨, 노승수 목사에게 사과”, <뉴스앤조이>, 2009년 10월 11일자.
- 24) 김세진,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다루기에는 ‘준비 미흡(박스 기사)’”, <뉴스앤조이>, 2009년 8월 29일자.

2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보고서 각 주장의 허와 실



1) <양화진 사태의 개요(pp.2-3)>에 대하여

(1) 도입부의 오류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의 관리문제(재정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할 방
도로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을 추진하였다.

- ①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하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담당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이하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성지로서 관리되는데 점점 더 폐허처럼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부실은 1890년 설치 이후 매 시기마다 제기되었으나¹⁾, 1986년 유니

온교회가 관리의 주체가 된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이 무렵의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 부실 실태는 <기독교공보>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 보도²⁾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100주년협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한국기독교를 대표하는 성지로 보존·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을 추진했다.³⁾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은 재정적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유니온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묘지를 예약판매 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였다. 100주년협회는 더 이상 유니온교회에 묘원 관리를 맡길 수 없었다.

- ② 100주년협회가 100주년기념교회 건립을 공식화 한 것은 2003년 9월 30일의 제1차 임시이사회였다. 2005년부터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을 추진했다는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이하 강북노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2005년 7월 28일자 항목의 오류

100주년기념교회는 새로운 예배시설을 건축하는 일이 무산되면서 기념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버리고 ‘영구 사용’하겠다고 통보. 이재철 목사(기념교회)는 “백주년기념교회가 기념관 건물에 입주한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기념관 건물을 접수하는데 있다”고 통보.

- 1) 자료 1896-A-008: <The Independent> 사설(Editorial) (1896.10.31) 참조. : “... It(yangwhachin) looks sorrowful not only because it is a place where the dear ones are laid to rest, but because the way in which it has been neglected is truly mournful. ... We suggested that the committee on cemetery will call a mass meeting of foreign residents at an early date, and make a some arrangements by which the cemetery in yangwhachin can be made respectable.” 이 기사는 당시 양화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서구인들이 선진국 사람이라는 존경심마저 잃고 있으므로 거류민들의 중지를 모아 이곳을 재정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당시 외국인 묘지회가 양화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2) 2000년대 초반 언론에는 양화진이 버려져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자료 :1994-A-001 ‘선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 신문기사(1994.7.8)//2001-A-001 김성순, <한국기독교공보>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2001.1.6)/2001-A-002 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독교공보> 주간논단(2001.10.20)/2003-A-002/김보현, <한국기독교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03.8.16)
- 3) 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 ① 강북노협은 “100주년기념교회는 새로운 예배시설을 건축하는 일이 무산되면서”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강북노협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예배시설을 건축하는 일”을 논의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 다만 100주년협의회 차원에서는 마포구청에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연결한 합정동 142-1 일원 902m²(272평)이 지대가 낮고 낙후된 건물들로 인하여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양화진성지공원의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의 홍보안내와 화장실을 포함한 휴식 공간, 그리고 문화탐방 교육 및 추모집회 시설을 100주년협의회 자비로 건축을 청원한 일이 있었다.
- ② 양화진선교사묘원의 합법적인 소유자는 100주년협의회이다.⁴⁾ 1985년 경성구미인모지회와 100주년협의회 사이에 진행된 재판의 판결에 의해 적법하게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00주년협의회는 1986년 10월 선교기념관을 건립하면서 당시 이사장 한경직 목사의 배려로 고정된 예배처소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던 유니온교회에게 선교기념관 2층 대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로 보존 관리케 했다.⁵⁾ 본래 100주년협의회는 선교기념관 1층을 100주년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언더우드 3세(원일한)로부터 선교기념관 1층을 유니온교회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이를 추가로 허락해 주었다.
- ③ 100주년기념교회가 선교기념관 건물에 입주한 이유와 목적을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기념관 건물을 접수하는 데 있다”고 한 강북노협의 주장은 공적인 문서와 어울리지 않게 저급하다. 2005년에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되었을 때는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 예배당 공동사용을 구두 및 공문으로 요청했던 것이다.⁶⁾ 그러나 유니온교회로부터 온 공문은 시설 사용에 지나친 제한을 가할 뿐 아니라 표현이 고압적이어서 누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주인이고, 누가 100주년

4)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985년 5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100주년협의회 소유권이 인정되었고, 그해 6월17일 소유권등기를 마침으로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자료 1985-A-005 서울지법, 양화진 토지소유권에 대한 판결문) 또 법제처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 의해서도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의 정당한 소유자로 확인되고 있다.(자료 1986-A-002 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

5) 선교기념관 건립 당시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당시 한경직 이사장과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6) 자료 2005-B-008 100주년협의회가 유니온교회에 보낸 서신(2005.4.29)

협의회의 배려로 선교기념관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혼동될 정도였다.⁷⁾ 2005년 9월에는 유니온교회가 일방적으로 100주년기념교회의 예배시간과 겹치게 선교기념관을 제3자에게 대관해 준 일이 있었다.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는 서둘러 예배를 마쳐야 했다.⁸⁾ 더욱이 당일 선교기념관을 사용한 단체에서 오디오 시스템을 망가뜨려 100주년기념교회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오디오 시스템을 수리해야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100주년협의회는 더 이상 선교사들에 대한 겸양과 섬김의 자세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이사회 결의로 2005년 9월 14일 공문을 통해 양화진선교사모원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100주년기념교회에 위임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⁹⁾

(3) 2005년 8월 말 항목의 오류

양화진 설명판(서울 유니온교회의 역사적 배경 및 양화진 이야기 현판)을 무단 강제 철거.

- ① 유니온교회와 강북노협은 소위 설명판 철거가 마치 대단한 역사왜곡이라도 되는 양 침소봉대(針小棒大)하였다. 설명판은 양화진선교사모원 내의 나무처럼 보호를 받고 있거나 구청의 허가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100주년협의회가 세운 설명판을 스스로 철거한 이유는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서는 47쪽 '5. <양화진외국인모원에 1986년에 세워졌다가 철거된 설명판>에 대하여'에서 설명하고 있다.

7) 자료 2005-E-007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서신(2005.4.26)

8) 2005년 9월11일 주일에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2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국내 코스타 관련 단체에 선교기념관 찬양집회를 허락해주고 이 사실을 주일 전날에 알려주어 100주년교회는 2부 예배를 예정보다 30분 정도 일찍 끝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9) 유니온교회의 부당한 횡포가 도를 넘자 100주년협의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5년 10월1일부터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 관리를 100주년기념교회에 위임하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하고 이를 양 교회에 통보했다.(자료 2005-B-013 100주년협의회, 100주년협의회 결의 및 제안(2005.9.14))

(4) 2007년 4월 항목의 오류

서울유니온교회는 기념교회 교인들이 묘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동의 없이 묘목을 자르고 묘지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데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유니온교회는 양화진묘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통보.

- ① 전 세계의 모든 묘원은 묘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묘원 내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경우, 100주년기념교회 초창기에 묘원 내 도로에 주차한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묘원 내 주차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는 주차하지 않고 있다.
- ② 100주년기념교회는 황폐했던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로를 포장했으며, 묘지 주변의 잔디 보호를 위해 전지작업을 했고, 잔디와 각종 화초를 새로 심었다. 묘역별로 낮은 울타리를 설치해 참배객들에 의해 묘지가 밟히지 않도록 했고, 묘역 사이에 참배로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몇 그루의 나무를 마포구청의 허가를 받고 공원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베어냈다. 묘지에 너무 가까워서 잔디를 고사시키거나 참배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나무 일부를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유니온교회 측의 ‘동의 없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¹⁰⁾
- ③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관리의 주체로서 효과적이고 경건한 참배를 위해 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은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묘원을 개방하는 곳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다. 주일에도 참배는 전혀 제한이 없다. 단지 1월1일, 설연휴와 추석연휴, 성탄절과 주일 등에 한해 100주년기념교회가 제공하는 무료안내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다. 묘원 개방시간을 정한 것은 모든 문화시설이 그렇지만 일몰 이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당연한 규정이다.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외국인 묘지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12시부터 16시까지만 개방한다.¹¹⁾

10) 마포구청은 ‘공원 내 수목 제거는 2004년 4월, 2006년 3월, 2006년 11월 등 3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이는 공원 및 묘지관리 차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조치’라고 인정했다.(자료 2007-A-037 마포구청, 외국인묘지공원 관련 민원관계자 면담 및 검토결과(의견) 보고(녹지환경과-17779))

(5) 2007년 5월 항목의 오류

기념교회는 서울 유니온교회에 양화진에 대한 소유권에 관해 논의하자고 연락. 협의회와 기념교회는 양화진의 역사적 배경은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서울유니온교회는 이를 거절.

- ①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에 2007년 5월, 소유권에 관해 논의하지는 연락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강북노협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는지 밝혀야 한다. 강북노협은 이 부분을 포함하여 보고서의 많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6) 2007년 6월 16일, 17일, 19일 항목의 오류

“... 100주년협의회는 기념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철 목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전함. 이재철 목사는 ‘자신은 현 상황과 관련해서 두 교회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함.

- ① 강북노협은 100주년협의회의 누구로부터 100주년기념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철 목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2005년 7월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위임했으며, 2005년 9월 14일 이를 문서로 100주년기념교회와 유니온교회에 통보했다.¹¹⁾ 또 2006년 10월14일, 이에 관한 협약

11) 요코하마외국인묘지홈페이지(www.yfg-japan.com)에는 “墓地内は通常非公開ですが、3月から12月まで・週土・日・祭日(雨天を除く)午後12時00分～午後4時00分に外国人墓地募金公開を行っています。10分程度で一巡できる順路が設けてあり、お礼として配られるパンフレットに沿って進むと歴史に残る人たちの墓所を巡ることができます。”라고 되어 있다.

12) 자료 2005-B-013-X 협의회, 공문-결의 및 제안(기백 05-015/2005.9.14)

자료 2005-B-015-X 협의회, 공문-양화진선교사공원묘지 운영관리의 건(기백 05-017/2005.10.12)

자료 2005-B-016-X 협의회, 공문-유니온교회에 보내는 결의사항(기백05-018/2005.11.9)

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두 기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와 교회는 한국 기독교100주년사업의 후속관리와 임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공동체이다.”¹³⁾ 그러므로 양자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통제를 하거나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 2007년 8월 4일, 12일, 19일 항목의 오류

기념교회에서 출입구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출입구를 막아 유니온교회의 양화진 선교기념관 진입을 봉쇄하여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 밖에서 예배를 드림.

-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2007년 8월 뿐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경비원을 배치하여 선교기념관 출입구를 막지 않았다. 2007년 8월 5일,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은 이렇다. 100주년협의회가 세운 100주년기념교회의 실체를 유니온교회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사장 정진경 목사는 “누가 객이고, 누가 주인인지 가리기 위해 2007년 8월 5일부터 예배시간을 조정하기로 하고 4월 30일, 유니온교회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2007년 7월 중순, 유니온교회에 소속된 한국인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100주년기념교회에 전화를 걸어, 유니온교회 보아탕 목사가 8월 5일 새벽에 강대상을 점령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이후에 마포경찰서 외사과 형사가 100주년기념교회 사무장을 찾아와서 존 린튼(인요한)이 마포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8월 5일 새벽 양화진 선교기념관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테니 경찰 15명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니온교회측이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된 100주년기념교회는, 예배당에서 강대상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즉, 유니온교회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어주겠다고 미리 통보하고 선교기념관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다. 그러나 유니온교회는 애초 계획대로 2007년 8월 5일 새벽, 물리적으로 선교기념관 진입을 시도했으며,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같은 시간에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양화진에는 새벽부터 KBS

13) 자료 2006-B-008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운영관리 협약서

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와서 이 사태를 취재했다.

(8) 2007년 8월 16일 항목의 오류

…20명 이상의 단체는 참배를 금지하고, 참배시간도 오전 10시~오후 5시로 규정하며, 주말에는 참배를 일체 금지…

- ① 100주년기념교회의 모원관리규정 제16조 ‘나’항은 5인 이상의 ‘단체참배의 경우, 그 인솔자나 안내자는 모원에 대한 해설 등을 허가된 장소에서 행하고, 묘역에서는 참배만 하도록 참배객을 조용히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참배 안내 세칙은 단체참배객 규모를 안내자 1명당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수의 참배객이 찾는 묘원의 특성상 모두가 경건하고 질서 있게 참배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안내할 수 있는 인원을 규정한 것이지, 20명 이상의 단체참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안내자 1명당 20명 제한규정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처럼 참배객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② 모원관리규정에는 참배, 성묘 시간을 월~토요일, 10:00~17:00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원 관리와 참배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이외에 실제 양화진선교사모원 참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즉, 양화진선교사모원은 1년 365일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단, 1년 중 1월 1일, 설연휴와 추석연휴, 성탄절, 주일과 평일 중 개방되지 않은 시간에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제공하는 무료안내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모든 공공시설물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것이 상례이며, 실제로는 아무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배시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

(9) 2009년 4월 11일 항목의 오류

마포구교회협의회가 선교 125주년을 맞아 부활절연합예배를 언더우드 묘역에서 드리고 성명서를 발표함.

- ① 2009년 4월 11일 마포구교회협의회 언더우드 묘역 앞에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는 주최한 단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마포구교회협의회가 주최했다는 그 날의 부활절 연

합예배를 전하는 기독교언론의 기사 속 사진에는 서대문구에 교회가 있는 예장 통합 교단 서울서노회 차광호 당시 노회장과 용산구에 교회가 있는 서노회 김용민 목사가 보이기 때문이다.¹⁴⁾

(10) 2009년 6월 26일 항목의 오류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본 노회 전도목사) 교단 탈퇴서 제출(접수 후 현재 미처리).

- ① 강북노협은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가 예장통합 교단에 교단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탈퇴서를 “접수 후 현재 미처리”라고 했는데 이는 예장통합의 헌법시행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시행규정 88조는,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별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철 목사는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 직원의 탈퇴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시행규정 제88조에 의하면 “권고 사직된 것”이다. 왜냐하면 서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장 차광호 목사 외 8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2009년 6월 24일이었고, 서노회 기소위원회가 이재철 목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보낸 출석요구서는 7월 3일에야 발송되었기 때문이다. 교단 탈퇴서를 낸 6월 26일 당시 이재철 목사는 재판에 계류는커녕 기소조차 안 된 시점이었다. 예장통합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가 이재철 목사를 재판국에 기소한 날은 2009년 7월16일이었다.¹⁵⁾

14) 김혜미, “양화진은 한국교회 공동유산”, <기독교공보>, 2009년 4월 14일자

15) 자료 2009-P-040 예장통합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 판결문(2009.10.10)

2) <예장 통합 총회장 성명서 - 작금의 유니온교회와 양화진외국인묘지 문제에 대한 본 교단의 입장(P.4)>에 대하여

2007년 미국장로교 총무 커크패트릭 목사와 재미 한국선교사모임이 한국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2007년 6월 20일, 미국장로교 총무 커크패트릭 목사가 이광선 당시 총회장에 보낸 서신¹⁶⁾ : ‘양화진 묘원의 문제로 1) 나무 몇 그루가 잘리고, 몇 개의 기념비가 없어지거나 움직였으며, 자동차가 묘지 옆에 세워져 있으며, 2) 미국 선교사 리처드 한 목사의 부인이 양화진에 묻히기로 예약되어 있었으나 거부되었고, 3)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운영을 맡은 이후 많은 교인들로 인해 일요일 방문객이 불편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양화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 (2) 2008년 7월27일, 미국에 있는 한국선교사모임(Korea Missionary Fellowship) 회원 공동서신¹⁷⁾ : ‘서울외국인묘지와 선교기념관 소유와 운영에 대한 갈등 소식을 들은 상심했으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원한다.’

(1) 4쪽 3~6줄

본 교단은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둘러싼 경성구미인묘지회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 사이의 갈등이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회협의회와 미국장로교회, 재미한국선교사유족회 등 한국교회와 외국교회들까지 우려하는 문제로 비화된 것에 깊은 아픔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① 미국장로교와 미국의 한국선교사모임에서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를 인식하고 우려를 표명하게 된 이면에는 유니온교회 측의 음해와 비방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⁸⁾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2005년 9월 초부터 국내외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16) 자료 2007-P-011 미국장로교회, 커크패트릭 목사 서신(2007.7)

17) 자료 2008-P-003 한국선교사협회, 통합총회에 보낸 호소문(2008.7.27)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선교사 묘지를 파내려 한다는데 사실인가?”라는 확인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 ②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2007년 8월, 미국 커크패트릭 목사에게 답신을 보내 1985년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폐허가 되다시피 한 상황과, 2005년 창립된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로 아름답게 가꾸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세워졌던 일부 불법적인 기념비들은 묘원 성격에 걸맞게 스스로 철거하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거부한 일부 불법 기념물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거했음을 설명했다. 또 한국의 실정법상 양화진선교사묘원에 더 이상 신규 매장 이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유니온교회가 이미 예약한 37기의 예약묘지 역시 불법임을 설명했다. 또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나무 일부를 전지한 것은 선교사 무덤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마포구청에 신고한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음도 설명했다.¹⁹⁾ 이 해명편지 이후 미국 장로교와 커크패트릭 목사로부터는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었다. 한편, 미국에 있는 재미한국선교사협회 회원들에게도 이 같은 상황과 함께 유니온교회, 그리고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내세운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가 묘원의 재산권을 주장하며 업무방해 등으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고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도 설명했다.²⁰⁾

(2) 4쪽 20~22줄

그러므로 협의회가 한국교회 공동의 유산이자 공동의 책임을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교회라는 어느 한 특정교회에 전권위임한 것은 협의회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18) 유니온교회는 2005년 말부터 국내외 언론과 재미 한국선교사협회 및 유족들에게 100주년협의회가 선교사 묘를 이장하라고 할 것이라는 등, 일방적으로 선교사들의 매장을 불허한다는 등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음해하는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렸다.(자료 2007-C-003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사이에 오간 메일(2007.3)/자료 2009-C-028 지강유철, ‘유니온교회 문제, 그게 이렇습니다’, <버들꽃나무사람들>2009.8)

19) 자료 2007-C-015 100주년기념교회가 커크패트릭 목사에게 보낸 서신(2007.8.7)

자료 2007-B-023 100주년협의회가 커크패트릭 목사에게 보낸 서신(2007.9.17)

20) 자료 2009-B-045 100주년협의회가 재미한국선교사회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2009.7)

- ① 양화진선교사모원이 한국교회 공동의 유산이기에 아름답게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동안 한국교회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1986년 이후 양화진선교사모원을 관리해오던 유니온교회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당시의 양화진선교사모원은 공동묘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관리 협조를 한국교회에 호소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양화진선교사모원을 특정교단에 속한 개교회가 맡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거절했다.²¹⁾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모원 등의 관리를 요청했던 4개 교회 중 3개 교회는 예장통합 교회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0주년기념교회가 독립교회로 창립되었다. ‘양화진의 관리책임을 어느 한 특정 교회에 전권위임’했다는 성명서의 주장은 이러한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배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체결한 협약서²²⁾는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100주년협의회는 ‘어느 한 특정교회’에 양화진선교사모원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한 몸이 되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법체제상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인체 형식을 빌었으므로 형식적 위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3) 4쪽 23~24줄

본 교단은 1986년에 세워진 양화진 봉헌판을 원상복구하고, 묘지회와 협의회, 기념교회 모두가 봉헌판에 담겨진 처음정신대로 돌아갈 것을 바란다.

- ① 1986년에 건립된 선교기념관 앞에 세워진 봉헌판은 정연희 선생이 쓴 ‘봉헌’이라는 제목의 헌시(獻詩)를 새긴 동판으로 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설명판 철거 이유 등에 대해서는 47쪽 ‘5. 양화진외국인묘원에 1986년 세워졌다가 철거된 설명판에 대하여’참조)
- ② 양화진선교사모원의 처음 정신은 강원룡 목사가 선교기념관 헌당식에서 행한 ‘산돌로 지은 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고양하고, 세

21) 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22) 자료 2006-B-008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 및 순교자기념관 운영관리 협약서 (2006.10.14)

계선교의 발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2006년 9월부터 안내 봉사팀을 운영하며 동영상과 직접 안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역사와 선교사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8월 19일까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찾은 이들은 모두 202,028명이며 월 평균 참배객 수는 4,592명이다. 특히 2008년 양화진홀의 개관 이후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참배객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제 양화진선교사묘원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들르는 곳이 되었다. 한국 최고의 개신교 성지로 거듭난 것이다.

(4) 4쪽 25~27줄

본 교단은 한국교회와 외국인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협력과 우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발전과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 100주년협의회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개편되고 보완될 것을 촉구한다.

- ① 외국인교회와 특정 선교사 후손이 소위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로 100주년협의회의 원로들과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를 고소하고, 특정교단이 그 교단신문을 앞세워 다수의 힘에 편승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협력과 우의(友誼)라는 소중한 자산을 이어가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양화진선교사묘원에 대해 관심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외면하다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지다움을 되찾자 선교사에 대한 보은을 거론하며 공동관리를 주장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 ② 한국교회와 외국인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협력정신은 오히려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와 예장통합교단이 훼손하고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2008년 12월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민사조정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의제자백 판결에 따른 대위등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주장하여 원일한 장로와 한경직 목사가 불법적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²³⁾ 이어 2010년 6월 제출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고(경성구미인묘지회: 당시 회장 원일한)와 피고(100주년기념사업회: 당시 이사장 한경직)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위하여 ‘공모’하여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편법’으로 이 사건 토지

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²⁴⁾했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두 분으로 대표되는 한국교회와 외국인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협력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더군다나 이러한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무분별하게 되풀이하는 예정통합은 존경하는 분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23)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24)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 (2010.6)

3) <마포구교회협의회성명서 - 양화진외국인묘원은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다(pp.5~9)>에 대하여

(1) 5쪽 7~14줄

양화진묘원은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과 역사교육 현장이다. 그리고 마포구의 역사적인 유적지이며 구민들의 휴식공간이다. 양화진은 어느 한 교회가 독차지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공동유산 ... 우리는 ... 자신의 온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신 외국인 선교사들의 숭고한 신앙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한국교회 앞에 천명한다.

- ④ 1890년 헤론 선교사가 이곳에 묻힌 이래 양화진선교사묘원은 시기마다 부실한 관리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²⁵⁾ 해방 이후에도 이곳은 외국인들의 공동묘지에 불과했을 뿐 아무도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주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곳에 묻힌 이들의 후손들조차도 한국전쟁 후에는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고 일부 남아 있던 유족들도 조상의 묘지 관리를 거의 포기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²⁶⁾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진정한 신앙과 역사교육현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 말, 정부가 양화대교를 확장하고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양화진 묘지를 점유하게 되자 보상금문제가 대두되었고, 경성구미인모지회는 그제야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려는 활동을 시작했다.²⁷⁾

25) <The Independent> 사설(Editorial)에는 양화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처량하므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자료 1896-A-008: <The Independent> 사설(Editorial) (1896.10.31))

26) 원일한 경성구미인회장은 1964년 말 서울시에 낸 진정서에서 경성구미인모지회는 ‘느슨한 조직’이고 심지어 한국전쟁 후에는 한국에 유족이 없어 묘지관리를 유니온교회에 위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Until a few years ago the management of the cemetery and title to the land was under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a loose organization of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other friends in the community.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relatives remaining in Korea was very small, so in 1956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formally turned over responsibility to the Seoul Union Church.(자료1964-D-002 원일한,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양화진 묘지 보호 진정서 사본-영문(1964. 12. 31))

27) 경성구미인모지회는 양화진 토지보존등기 진정서에서 “... 보상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마포구청으로부터 받고 ... 비로소 미등기사실을 발견 ...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를 소원”한다고 밝히고 있다.(자료

- ② 양화진선교사모원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묻힌 성지라는 사실을 처음 주목한 사람은 오리(吾里) 전택부 장로다.²⁸⁾ 그는 양화대교 교차로 건설로 양화진선교사모원이 없어지거나 이전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양화진선교사모원을 찾았다. 그 이후 당시의 쓰라렸던 감회를 <기독교공보>에 연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사회가 양화진선교사모원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구성된 100주년협의회를 중심으로 양화진선교사모원의 정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 원일한 장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100주년협의회 총재 한정직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③ 선교기념관이 준공된 1986년 10월 이후,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으로 입주하려던 계획을 보류한 100주년협의회 배려로 선교기념관을 예배처소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편 양화진선교사모원의 관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양화진선교사모원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포함)의 공동묘지로 더욱 고착되는 듯했고,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폐허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양화진 일대는 1965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이후부터는 새로운 묘지 조성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2000년 1월 발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묘지 설치 금지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양화진선교사모원에는 공원조성이 끝난 1986년 10월부터 2004년까지 42기의 새 무덤이 조성되었고, 37기의 무덤을 예약하고 돈을 미리 받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²⁹⁾
- ④ 1986년 이후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 관리를 위해 국

1980-D-005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보존등기 진정서(1980.11.20) 또 당시 묘지회가 묘지보상금 수령과 토지등기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묘지회의 명칭이 서로 달라 급조된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자료 1978-D-001 서울외국인묘지회 정관(1978.11)/자료 1978-D-002 경성구미인묘지회 정관(1978.11)/자료 1979-D-001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등기신청서 사본(1979.11)/자료 1979-D-002 서울외국인묘지회, 토지권리취득 허가신청서 사본(1979.12))

- 28) 전택부 선생은 양화진을 찾은 후 신문기고를 통해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수많은 외국인이 묻혀 있는 이곳이 마구 짓밟히고 버려지고 ... 인근 파출소의 순경도 모르고 있었다’고 탄식했다. (자료 1979-A-004 전택부, ‘양화진의외인열전(1)’, <한국기독교공보>, 4면(1979.9.29)/1986-A-008 전택부, ‘머리 글’, <양화진 선교사 열전>, p.10(1986.8)/2005-A-014 전택부, ‘개정판을 내며’, <양화진 선교사 열전>, p.5, (2005.9))
- 29) 유니온교회는 37기의 묘지를 예약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 (자료 2010-C-012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 안장자 현황(2010.7.1)/자료 2005-D-024 양화진묘지 사전 매매 리스트 및 영수증(2005.12))

내 여러 교회와 믿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헌금을 기부 받았다. 그러나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며 마포구민의 휴식공간이라고 주장하는 마포구 관내의 교회들로부터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감리교단 소속의 단 두 교회가 총 400여 만 원을 후원한 것이 전부다.³⁰⁾

(2) 5쪽 23~6쪽 2줄

100주년기념교회는 ...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건립한 양화진 선교기념관에서 서울유니온교회가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한 역사와 전통을 훼손하고, 2007년 8월 양화진 선교기념관에서 서울 유니온교회를 내쫓는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 ①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쫓겨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유니온교회가 제기한 업무방해 소송 판결로 명백한 결론이 난 사안이다. 당시, 법원은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법률적 소유자로서 행한 모든 행위에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으며 유니온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판결했다.³¹⁾
- ②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도 자승자박의 결과다. 유니온교회 측이 의도적으로 선교기념관의 건립용도가 묘지관리소라는 사실을 외신기자에게 알려준 게 발단이 되어 마포구청이 문제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선교기념관의 교회 및 예배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³²⁾
- ③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던 19년 동안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한국의

30) 100주년협회의 제26회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중 '4. 100주년사업 협찬교회 헌금내역' 자료에 보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마포구 관내 교회에서 헌금한 것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아현중앙감리교회(3,400,000원)와 서강감리교회(600,000원)가 전부였다.(100주년협회의 제26회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p.22)

31)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 판결문에서 '100주년협의회 임원 내지 기념교회 담임목사의 고소사실(업무방해)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자료 2009-A-009 서울고법, 재정신청 판결문(2009.4.13))

현행법에 저촉되는 일이 많았다. 마포구교회협의회는 유니온교회의 부당한 일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성지라고 주장하는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이들의 행위³³⁾마저도 묵인, 방조하였다.

(3) 6쪽 8~10줄

100주년기념교회는 어느 누구의 지도감독도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만든 정관에 따라 향존적인 장로와 권사를 단순한 호칭으로 사용하여 한국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더 나아가 무너뜨리고 있다.

- ④ 100주년기념교회의 정관은 100주년협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³⁴⁾ 100주년기념교회의 정관은 창립 직후부터 온 교우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그 내용을 정리하였고, 100주년협의회가 결정한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³⁵⁾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잠든 은인을 기리며 전도하는 연합교회,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고 개혁의 비전을 가꾸는 깨어 있는 교회’를 지향한다. 2006년 10월14일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는, 1)교회는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 2)교회는 독자적인 정관을 제정, 운영한다, 3)100주년협의회는 정관 내용을 검토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교회 정관은 100주년협의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32) 마포구청은 ‘외국인묘지공원 관리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녹지환경과-13564)을 통해 “..건축물은 공원 관리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되었으나 교회 및 예배 용도로 사용중에 있어 지역주민 및 각종 언론 등으로 부터 문제화 되고 있기에 통보하오니 2007.8.20일한 당초 허가된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자료 2007-A-014 마포구 공문/녹지환경과-13564/2007.8.7)

33) 양화진선교회는 2002년 4월 창립되어 양화진을 안내하고 있다. 양화진선교회는 방문객들에게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있다. 즉, 양화진을 무대로 선교사 안내라는 이름 아래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양화진선교회 양화진 안내 홈페이지/www.yanghwajin.co.kr)

34) 자료 2006-B-008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협약서(2006.10.14)

35)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추진하며 설정한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에 의하면,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에 잠든 복음의 은인을 기리며, 연합교회를 지향하며, 100주년기념사업의 정신과 유산, 유적을 보존 전승하고, 100주년협의회는 후견자의 입장에서 100주년기념교회를 섬긴다고 되어 있다.(자료 2005-B-003 100주년협의회,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2005.4))

- ② ‘장로, 권사 호칭제’는 모든 교단을 아우를 수 있는 연합교회를 지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장로 권사제도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제정 당시 생각지 못했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장로와 권사로 호칭하면 장로와 권사를 계급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자격 요건이 너무 없으면 장로 권사의 호칭을 받기 위해 교회를 옮길 수 있으며, 일괄적으로 장로와 권사로 호칭하다보면 신실치 못한 신자로 인해 한국교회에 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³⁶⁾ 100주년기념교회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2009년 6월의 정관개정을 통해 장로 권사 호칭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³⁷⁾ 그해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는 호칭장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³⁸⁾했다.
- ③ 한국교회, 특히 예정통합이 채택하고 있는 장로선출의 대의성은 문제가 적지 않다. 예정통합 헌법은 공동의회에서 참석교인의 2/3의 찬성을 얻은 이를 장로로 택하고 있으나 문제는 공동의회 의사정족수의 개념이 없을 뿐 아니라 전체 교인의 몇 퍼센트가 공동의회에 참석했는지조차 문제 삼지를 않는다.³⁹⁾ 따라서 진정한 대의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가령 1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1천 명만 참석하였다더라도 공동의회는 성립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는 전체 주민의 1/3 이상이 투표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처럼 예정 통합의 의사정족수가 빠진 공동의회 대의성은 일반 상식에 반한다. 100주년기념교회의 ‘장로 권사 호칭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36) 이재철 목사는 2009년 7월 12일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주일 설교(‘떠를 띠고’:성경 행12:6~12)에서 장로 호칭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7) 강화된 호칭 장로 권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5조(교인자격 및 호칭)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우리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지 7년 이상 된 자 ③ 디도서 2장 2절-3절에 합당한 자 ④ <새신자반> 10주, <성숙자반> 10주, <사명자반> 10주, 총 30주간의 훈련을 거친 자 ⑤ 우리교회에서 3년 이상의 봉사경력을 지닌 자 ⑥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역자가 추천하는 자 4. 타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자는 ④항의 과정을 거쳐 그 호칭대로 호칭한다.”

38) 기독교한국침례회는 2009년 열린 99차 총회에서 장로 호칭제를 통과시켰다. 치리권이 있는 장로제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장로라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민일보, 2009.11.25일자 기사 ‘긴급점검-장로, 그는 누구인가?’)

39) 예정 통합 헌법 제90조에 의하면,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7.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6쪽 19~7쪽 6줄

“3. 한국교회의 신앙유산인 양화진묘원을 불법적으로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4. 기독교 성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무례를 즉각 중지하라.”

- ① 국어사전은 ‘사유화’를 ‘개인의 소유가 됨, 또는 개인의 소유로 만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화’란 용어는 ‘불법적이거나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이나 공공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는 의미로 더 자주 통용된다.
- ②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사유화’는 보통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 운영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도들의 헌금 중 50퍼센트를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 정신과 정관⁴⁰⁾ 규정에 따라 한국교회 공동의 신앙유산답게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경건의 공간으로, 마포구민에게는 사색과 휴식의 공간으로 가꾸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에서 참배객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③ 오히려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사유화하려는 이들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이다.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양화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1913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5년 이후 20여 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사실상 해체되었다⁴¹⁾). 최근 양화진선교사묘원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경성구미

40)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7조 재정 31. 헌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하여 사용한다. 32. 매월 첫째 주일에 그 전월의 재정 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 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면으로 보고한다. (자료 2006-C-009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41)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985년 해체되었다는 주장은 유니온교회가 작성한 2007년 6월3일자 유니온교회 총회(Seoul Union Church General Meeting)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즉, 피터 언더우드는 이날 회의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훨씬 이전에 존재해 있던 유니온교회에 1985년경 흡수되어 있었는데, 다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피터 언더우드를 회장으로 선

인묘지회’는 소송을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서, 이전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승계했다거나⁴²⁾, 법인은커녕 공신력 있는 단체(비법인사단)로 인정할만한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사유화하려는, 실체도 불분명한 단체다.

- ④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역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24쪽 (4)-① 항목 참조).

(5) 7쪽 7줄

양화진 묘원에 세워졌던 봉헌판(현판)과 선교사 묘비를 즉각 원상복구하라.

-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봉헌판은 1986년에 세운 정연희의 ‘봉헌’ 시를 동판에 새긴 것이 유일하다. 이 시비(詩碑)는 지금도 선교기념관 앞에 세워져 있다.
- ②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비판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봉헌판은 ‘서울 유니온교회의 역사적 배경 및 양화진 이야기를 담은 ‘양화진 설명판’이다. 설명판을 철거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았고, 한글과 영문 상호간에 상치되는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다. 그릇된 내용을 담은 설명판 철거는 관리권자의 당연한 의무다.(상세한 내용

출하고 양화진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시작했다.(자료 2007-E-005-X 유니온교회, 교인 총회 회의록(2007.6.3)/자료 2007-D-006-X 경성구미인묘지회, 총회 회의록(2007.6.3))

- 42) 신호철은 그의 책 『양화진의국인묘지,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에서 “1913년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성구미인묘지회(京城歐米人墓地會)’와 현재의 ‘경성구미인묘지회(京城歐美人墓地會)’는 승계가 아닌 차명의 형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편법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p.143) 사실, 현재의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간에 양화진을 관리했던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정통성을 있는 조직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만하다. 해방 이후 언더우드 2세를 중심으로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가 조직되었으나 1956년 양화진 관리를 서울유니온교회에 위임했다. 이후 이 조직은 1970년대 말, 양화대교 증설과 서울지하철 건설로 양화진 묘지 일부가 강제 수용되고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만들어진 문서를 보면, ‘서울외국인묘지회’라는 이름과 ‘경성구미인묘지회’라는 이름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당시 실체는 없고 이름만 있던 조직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가장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판단된다.(자료 1978-D-001 서울외국인묘지회 정관/1978-D-002 경성구미인묘지회 정관/1979-D-001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1979-D-002 서울외국인묘지회, 토지권리취득허가신청서/1980-D-005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권리취득 허가신청서)

은 47쪽 '5.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에 1986년 세워졌다가 철거된 설명판〉에 대하여' 참조)

- ③ 기념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원칙의 문제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안장된 선교사는 물론 일반 무덤을 포함하여 단 하나의 묘비도 철거하지 않았다. 단지 묘원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기념비 일부를 철거했을 뿐이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맡으며 가장 주목한 문제 중 하나는 무분별하게 세워진 기념비들이었다. 묘원은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이지 살아 있는 이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선교사를 기린다는 미명 하에 교회나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담긴 기념비가 많이 세워져 있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묘원의 성격과 본뜻에 어긋나는 기념비들의 철거 원칙을 세우고, 이런 기념비를 세운 기관이나 개인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자진철거를 요청했고,⁴³⁾ 이에 내리교회, 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등은 자진 철거했다.
- ④ 서교동교회의 신호철 은퇴장로는 이 조치에 불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기념비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2006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묘비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당하였다.⁴⁴⁾ 그는 서울고법에 다시 항소했으나 2007년 6월 12일 각하 처분을 받았다.⁴⁵⁾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시행한 기념비 철거 요청이 정당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판결 이후 100주년협의회는 나머지 3개의 기념비를 철거한 바 있다. 선교사 묘비를 원상 복구하라는 마포구교회협의회 주장은 적법하게 세워진 묘비 중에 철거된 묘비가 없다는 점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주장이다.

43) 100주년협의회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사랑의교회, 인천내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우이중앙교회, 서교동교회 등에 묘원에 부적합한 기념비 등을 자진철거해 줄 것을 요청(기백 2006-02,03,04,05)하여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취지를 이해하고 자진 철거했다.

44) 자료 2006-A-007 서울지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2006.12)

45) 자료 2007-A-008 서울고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항고) 결정문(2006.12)

(6) 7쪽 14~21줄

100주년기념교회는 마포구민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휴식처이며 신앙순례지인 양화진을 독점하고 있다. ... 주일에는 자신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일 참배를 제한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20명 이상 단체의 참배를 제한하고, 참배시간을 제한하는 등 자체 관리규정을 만들어 진행을 일삼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흑심을 버리고 양화진을 떠나 이전하라.

-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모원의 관리를 담당한 5년 동안 양화진선교사모원을 독점했거나 독점을 시도한 적이 없다. 마포구교회협의회 측은 독점의 근거로 주일 참배 제한, 20명 이상 단체 참배 제한, 참배시간 제한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모두 날로 증가하는 참배객들로부터 양화진모원을 지키기 위한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다.(이에 대해서는 27쪽 (8) '2007년 8월 16일 항목의 오류' 참조)
- ② 100주년기념교회는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보존과 관리라는 특별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 교회이다.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협의회 지도부의 간곡한 청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받아 순종한 것뿐이다.⁴⁶⁾ 자신들의 주장이나 입장과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동역자를 흑심 운운하며 소명지인 양화진에서 떠나라는 강북노협에 경악할 따름이다.

(7) 7쪽 24~8쪽 2줄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을 한국교회 어느 교단의 지도 감독도 받지 않는 일개 교회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 100주년기념교회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순교자 추서 역시 자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더 이상 한국교회 앞에 온갖 무례와 불법을 서슴지 않는 100주년기념교회의 불순한 행위들을 바로 잡고 정리하여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라.

46) 자료 2005-B-006 김경래 장로 비망록(2005.4.25)

자료 2005-C-010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취임사(2005.7.10)

-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정신과 목적상 특정 교단에 소속될 수 없다. 이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다.⁴⁷⁾ 100주년기념교회가 한국기독교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에 가입한 것은 교인들이 낸 헌금의 세금 처리 등의 행정편의를 위함이다.
- ② 현재까지 100주년기념교회는 새로운 인물을 순교자로 추서하거나 이미 순교자로 공인된 분들을 제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100주년기념교회가 독단적으로 순교자 지정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국기독교의 순교자 인정 및 추서는 오랫동안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 온 과제였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단의 요구를 조율할 만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순교자 추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순교자 추서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과 이 일을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100주년협의회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학계의 원로와 중견 학자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

(8) 8쪽 6~12줄

어떻게 한국교회 앞에 불법을 자행하고 무례를 일삼는 이재철 목사가 ... 100주년협의회 이사에게 올라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어느 교단과 어느 기독교 단체의 동의를 구하였는지 각각 해명하고, 실추된 한국교회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와 무례를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고 이를 바로잡으라.

- ① 이재철 목사는 이제까지 교회법이나 현행법을 어겨 어떤 단죄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강북노협의 이 발언은 이재철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한다. 유니온교회 측에서 갖가지 이유로 이재철 목사와 100주년협의회의 고(故) 정진경 전 이사장을 비롯

47) 협약서에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1)100주년협의회와 교회의 관계는 한국기독교100주년사업의 후속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이며, 양자는 모원과 순교자기념관의 운영, 관리권 행사를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2) 100주년기념교회는 어느 특정 교단에 소속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자료 2006-B-008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협약서)

한 지도자들을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⁴⁸⁾ 이재철 목사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문제들, 이를테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고, 교회의 재정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단돈 1원까지 낱낱이 공개하여 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재철 목사는 목회자로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담임 목사직 이외에 다른 직책을 수락한 일이 없음을 들어 끝까지 100주년협의회 이사직을 고사했었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기 위해서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100주년기념교회의 담임목사는 반드시 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100주년협의회 강력한 요청을 수차례 받고 고뇌 끝에 순종하게 된 것이다.

- ② 100주년협의회 3대 이사장 고 정진경 목사는 소천하기 하루 전인 2009년 8월28일,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유니온교회는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과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에 의해 밝혀졌음을 밝히고, 예정통합 측에 의한 이재철 목사에 대한 핍박의 이면에는 매우 불순한 동기가 깔려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였다. 아울러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100주년기념사업의 정신과 유산 및 유적을 보존, 전승하고,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며 개혁의 비전을 가꾸는 깨어 있는 교회를 지향’하는 창립정신이 100주년기념교회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치하했다.⁴⁹⁾

48)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 관련 인사들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으며, 일부는 불기소되었다. 업무방해 소송의 경우에는 재정신청까지 요구했으나 각하되었다.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경성구미인묘지회 측에서는 검찰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대하여 ‘100만원 벌금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의 구형(求刑)에 불과한 것이며, 이마저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소송을 철회함으로써 모든 법적 소송은 종료되었다.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기한 ‘이전등기 말소 소송(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자료 2007-A-025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공소장(2007.10.18)/2008-A-001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08.1.16)/2009-A-009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판결문(2009초재155/2009.4.13)

49) 자료 2009-B-027 정진경,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에게(편지유언장/2009.8.27)

4) <예장통합 소속 100주년협의회 이사 제안서 -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PP.10~12)>에 대하여

이 문건은 100주년협의회에 전달되지 않은 문서이다. 문서 뒤에 붙은 서명도 이 문건에 서명한 것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따라서 이 제안서에 대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필요치 않으나 더 이상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이 문건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1) 11쪽 17~18줄

첫째, 양화진의 외국인공원모지는 100주년기념사업이 시행될 당시의 정신에 따라 원상 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① 100주년협의회 창립 취지 :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믿음의 유산들을 정리하고 더욱 빠르게 전승시키기 위해 모든 개신교 교단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념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⁵⁰⁾
- ② 사업의 방향과 목표 : '신앙 선배들의 업적을 기리고 전승함', '교회분열의 역사를 참회하고 하나의 교회를 지향함', '선교 2세기를 향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함', '세계선교에 이바지 함',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룸'.⁵¹⁾
- ③ 선교기념관의 건립 취지와 정신에 대해서는 선교기념관 현당 기념예배에서 강원룡 목사가 행한 설교, '산 돌로 지은 집'에 잘 드러나 있다. 강 목사는 "19세기 말엽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육신까지 묻은 역사적인 터전 위에 이 건물을 짓고 현당하게 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이 자리가 이 분들의 과거 업적과 공로를 기념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선교의 전선을 보다 더 넓혀나가기 위하여" 이 건물이 건축되었음을 강조했다.⁵²⁾ 이는 선교기념관이 선교사 개개인을 위한 보은의 장소가 아니라 선교 200주년을 내다보고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

50) 100주년협의회 간, <기념사업총람>, p.37, '사업의 취지'

51) 100주년협의회 간, <기념사업총람>, p.37, '사업의 방향과 목표'

52) 100주년협의회 간, <기념사업총람>, p.421, '말씀-산 돌로 지은 집'(강원룡)

는 곳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상회복인 것이다.

(2) 11쪽 19~21줄

둘째, 100주년기념교회의 활동이 교회를 설립할 당시의 취지에 부합된 것인지 또한 유니온교회를 비롯해 그간 관리에 참여해 온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다자간의 면담 내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 ① 무엇을 위한 면담 내지 대화냐가 중요하다. 특정 선교사 후손이 한국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근거 없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대화나 면담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5) <양화진외국인묘원에 1986년 세워졌다가 철거된 설명판(pp.17~18)>에 대하여

- ① 유니온교회와 강북노협은 소위 설명판 철거가 마치 대단한 역사왜곡이라도 되는 양 침소봉대(針小棒大)하였다. 설명판은 양화진선교사묘원 내의 나무처럼 보호를 받고 있거나 구청의 허가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설치물일 뿐이다. 100주년협의회가 설명판을 철거한 이유는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 ② 설명판 내용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 (1) “선교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오늘날 서울 유니온교회의 터가 된 묘지공원 안에 세우게 되었다.”의 영문, “to build a memorial chapel on the site next to the cemetery which became the home of Seoul Union Church”에는 “선교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라는 한글 설명판의 문구가 빠져있으며, “서울 외국인교회의 터가 된 묘지공원 안에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은 ‘became the home of Seoul Union Church’로 잘못 옮겼다.
 - (2) ‘서울 외국인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 기념교회인 영구시설로 처음 이사한 것은 1986년이였다.’는 한글 문장은 “In 1986, Seoul Union Church moved to its first permanent building, the memorial chapel in the foreigners cemetery at Yanghwajin”으로 영역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왜냐하면 영문에 its를 삽입하여 ‘공원 기념을 위한 영구시설인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시설’인 것처럼 오역했기 때문이다.
 - (3) ‘이 교회 건물은 오랫동안 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담임으로 사역하신 한경직 박사가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헌신적인 기독교실업인 독지가들의 협찬을 얻어 ‘선교기념관’으로 건립한 것이다.’라는 한글과, ‘The chapel was built through the generous efforts of the Council for the Hundred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chaired by Dr. Han Kyung-Jik, longtime pastor of the Yongnak Presbyterian Church.’이란 영문 표현은 모두 한경직 목사가 현재까지도 100주년협의회 이사장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글 설명에는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헌신적인 기독교실업인 독지가들의 협찬을 얻어 선교기념관이 지어졌다’는 문구가 영문에는 빠져있다.
 - (4) ‘... 장로교 선교회 소속 존 헤론 박사를 모시도록 양화진 땅을 고종황제가 기증했다.(... Korean Government granted a plot of land at Yanghwajin to bury Dr. John

Heron of the Presbyterian Mission...’라는 표현에도 오류가 있다. 1890년 당시 고종(영문은 Korean Government)은 조선의 황제가 아니라 왕이었다.

- (5) 영문 설명판은 ‘서울특별시 the Metropolis of Seoul’을 ‘The Special City of Seoul’이라고 잘못 표기했다.
- (6) ‘선교기념관’은 ‘Mission Memorial’로 표기해야 하나 설명판은 ‘Memorial Chapel’로 잘못 표기하였다. 1986년 7월, 유니온교회가 작성하여 100주년협의회에 제안한 관리규정(Regulations for the ...)을 보면, 선교기념관을 ‘Mission Memorial’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6) <우영수 목사 - 서울외국인모지 사건의 실상(pp.19~21)>에 대하여

(1) 19쪽 17~25줄

이후 100주년기념교회와 서울유니온교회는 갈등관계에 빠지고, 2007년 8월 서울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쫓겨나는 사태까지 이르고 말았다. ...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총장이었던 커크페트릭 목사는 공식서한을 통해 '오늘의 양화진묘원 실태를 심히 유감으로 여긴다'며 우려하는 탄원을 보내왔다. 또한 한국선교에 헌신했던 선교사 후손들의 모임인 재미한국선교사유족회 201명의 연서명 탄원서도 본 교단 총회에 전달되었다.

- ① 미국장로교와 미국에 있는 한국선교사모임에서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던 일은 앞에서 설명하였다.(자세한 내용은 29쪽 '2. <예장 통합 총회장 성명서-작금의 유니온교회와 양화진외국인모지 문제에 대한 본 교단의 입장>에 대하여' 1)-①과 ②를 참조 바람.)
- ②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모지회 측은 국내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보내 오해하게 만들었다.⁵³⁾ 예장통합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매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양화진선교사묘원이 훼손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인의 명예마저 훼손했다.

(2) 20쪽 6~13줄

1. 협의회는 창립 당시의 연합정신을 상실하였다. ... 한국기독교 20개 교단 및 26개 기관의 연합체임을 천명하면서도 운영관리의 전권을 넘겨주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교단과 단체들에 어떤 협의도 구한 바 없다.

53) 유니온교회는 2005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국내외 언론과 재미 한국선교사협회 및 유족들에게 100주년협의회가 선교사 묘를 이장하라고 할 것이라는 등, 일방적으로 선교사들의 매장을 불허한다는 등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음해하는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렸다.(자료 2009-C-028 지강유철, '유니온교회 문제, 그게 이렇습니다', <버들꽃나무사람들>2009.8)

- ① 1986년 이후 양화진선교사모원을 관리해온 유니온교회는 이미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당시 양화진선교사모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기독교보를 비롯한 언론보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⁵⁴⁾ 이런 상황에서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국교회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각 교회는 한국기독교 전체가 책임져야 할 양화진선교사모원을 개교회가 맡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⁵⁵⁾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운영과 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100주년협의회가 2005년 7월 창립한 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이다.
- ② 100주년협의회가 ‘운영관리의 전권을 넘겨주는 등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교단과 단체들에 어떤 협의도 구한 바 없다’는 주장은 재단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1981년 창립된 100주년협의회는 한국기독교100주년선교대회 등 100주년기념행사를 마친 후, 용인 순교자기념관과 양화진 선교기념관 등 방대한 100주년기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4년 11월에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초대 이사장에는 한경직 목사가 취임했다.⁵⁶⁾ 모든 의사결정은 정관에 정한 바대로 재단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창립 당시 정관 제정과 이사진 구성은 당시 한국 기독교계의 정신적 지도자이었던 고 한경직 이사장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으며, 당시의 이사진 구성을 교단과 기관의 파송이사로 구성하지 않은 것 역시 한경직 이사장을 비롯한 당시 한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결정이었다.⁵⁷⁾ 그 이후 100주년협의회의 의사결정이 교계나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은

54) 2000년대 초반 언론에는 양화진이 버려져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자료 : 1994-A-001 ‘선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 신문기사(1994.7.8)//2001-A-001 김성순, <한국기독교공보>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2001.1.6)/2001-A-002 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독교공보> 주간논단(2001.10.20)/2003-A-002/김보현, <한국기독교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03.8.16)

55) 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56) 자료 1981-B-001 100주년기념사업100주년협의회(가칭) 창립총회 회의자료(1981.1.27)

자료 1981-A-002 <기독교공보>, 1981년2월7일자 기사-100주년협의회 출범 기사

자료 1981-B-004 100주년기념사업100주년협의회 창립예배 순서지(1981.9.7)

자료 1981-B-005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총람>, p.38-39, ‘사업의 준비’(1981)

자료 1982-B-001 100주년기념사업100주년협의회 2차 총회 회의자료(1982.1.26)

자료 1983-B-001 <100주년협의회보>, 제2호, pp.2-3, (1983.1)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에게 양화진의 운영 관리를 맡길 때 교단이나 기관에 협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가장 많은 이사가 예장통합 소속임에도 예장통합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3) 20쪽 22~27줄

3. 고 한경직 목사님과 고 원일한 박사의 아름다운 협력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 선교기념관에서 22년간 예배를 드리던 유니온교회가 갑자기 예배장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어떠한 명분과 권리 주장에 의한 것이라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이며,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 ① 양화진선교사모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고 한경직 목사와 고 원일한 장로의 역할이 매우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던 양화진선교사모원 성지화와 선교기념관 건립사업을 한두 사람의 우정과 협력으로 축소하려는 처사는 옳지 않다. 두 분이 협력했던 본래의 취지를 살려 한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양화진선교사모원이 그러한 소명을 지닌 이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도록 가꾸고 돌봐야 할 것이다.
- ② 한경직 목사와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의 부친 원일한 박사(언더우드 3세)의 아름다운 협력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오늘날 경성구미인모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

57) 1983년 1월 31일 경동교회에서 열렸던 100주년협의회 제3차 총회는 재단법인 설립을 가결하고 실행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였던 바(17개 교단, 17개 기관에서 101명의 총대가 참석하였으며, 예장통합에서 가장 많은 8명의 총대가 참석), 1984년 6월 5일 열린 100주년협의회 제13차 실행위원회는 제3차 총회가 위임한 재단법인 정관 기초안과 임원 추천을 회장단에 맡기기로 가결하였다. 1984년 9월 14일 제14차 실행위원회는 회장단이 제안한 재단법인 정관초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재단법인 초대 임원으로 추천한 한경직, 강원룡, 박치순, 서병주, 이영수, 정진경, 지원상, 강병훈(이상 4년 임기 이사), 김용도, 신신목, 김영백, 정이숙, 박순양, 최창근, 배태준(이상 2년 임기 이사), 양광석, 김경래, 김석태(이상 감사)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연이어 열린 제1차 이사회는 한경직 목사를 이사장으로, 이영수 목사를 이사회 서기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자료 1983-B-003 제3회 정기총회 회의록/자료 1984-B-005 제13차 실행위원회록/자료 1984-B-006 제14차 실행위원회록/자료 1984-B-007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100주년협의회 제1차 이사회회의록)

와 이들의 거짓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예정통합 교단임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32쪽 (4)-② 항목 참조)

(4) 20쪽 28~21쪽 2줄

4. 본래 이름인 '서울외국인묘지공원'으로 해야 한다.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려는 처사이다. 묘원에는 선교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

-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외국인묘지'인가, 아니면 '선교사묘지'인가 하는 문제는 이곳의 정체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이곳을 단순히 '외국인이 묻힌 묘지'라고 정의한다면 한국 기독교계가 양화진선교사묘원에 막대한 재정을 들여 10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이곳이 '단순한 외국인묘지'에 불과했다면,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법적 소유주가 되는 것이 국내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안 피터 언더우드의 부친 원일한 장로(언더우드 3세)가 100주년협의회에 양화진을 증여하며 한경직 목사에게 이곳을 잘 가꾸고 보호해 달라는 부탁도 굳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② 우영수 목사를 비롯한 예정통합측에서는 언필칭 이곳을 '한국 기독교 공동유산이며 성지'이므로 한국 기독교계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입으로는 외국인묘지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입으로는 한국기독교의 성지이므로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상호 모순된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역사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890년 헤론 선교사의 안장으로 조성된 이래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조성된 139기의 무덤 중 100기(72%)가 선교사 관련 무덤으로서 선교사묘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1986년까지, 즉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일반 외국인의 무덤이 급증하여 전체 무덤 중 선교사 관련 무덤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었다.⁵⁸⁾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역사적 정체성이 이러한에도 현재 선교사 무덤보다 일반 외국인의 묘가 많다고 하여 외국인묘지라고 주장하려면 이곳이 한국교회의 성지요, 공동유산이라는 주장

58) 자료 2010-C-012 양화진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

을 철회함으로써 최소한 주장의 일관성이거나 유지해야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 ③ ‘양화진선교사묘원’의 행정구역상 이름은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이다. 그러나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조차 이곳에 대한 명칭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100주년사업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자로서 공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마포구청 양화진팀과의 협의하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으로 이름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위 세부표기’로서 관할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⁵⁹⁾ 당시 마포구청은 ‘양화진’과 ‘절두산’ 등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상호 연관성 있는 이름을 통해 이곳이 한국의 구교와 신교를 아우르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성지로 가꾸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양화진’이 들어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였다.⁶⁰⁾

(5) 21쪽 3~10줄/21~23줄

5. 양화진묘원은 어느 한 교회가 독차지할 수 없는 서울시와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일순례를 금하고 있으며 ...”
6. 양화진묘원은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과 역사의 교육현장이다. ... 2001년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양화진묘원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단장한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
7. 양화진외국인묘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은 설립 초기의 정신을 살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공동유산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한 교회가 독차지하여 교계와 지역 사회에 마찰음을 내는 것은 연합정신에 위배된다.

59) 마포구는 양화진묘지공원의 이름에 관한 민원질의 회신에서, 도로표지판에 기록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라는 이름은 ‘절두산순교박물관’과 같이 지명 등에 대한 ‘하위 세부표기’로서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자료 2007-A-035 마포구청, 민원사항(양화진묘지의 명칭문제)에 대한 회신)

60) 이준범, <행정예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2009, 희망제작소, pp.103~140. 이 책의 저자는 양화진의 성지화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공무원(팀장)으로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기여도를 매우 크게 평가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 저자는 양화진의 이름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라 칭하고 있다.

-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주체로서 효과적이고 경건한 참배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제정,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 관리규정에는 참배, 성묘 시간은 월~토요일, 10:00~17:00로 규정되어 있으나, 묘원 관리와 참배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묘원 참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즉,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년 365일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단, 1년 중 1월 1일, 설연휴와 추석연휴, 성탄절, 주일과 평일 중 개방되지 않은 시간에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제공하는 무료안내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100주년기념교회가 묘지를 일방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은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이다.
- ② 2006년 9월부터 2010년 8월 19일 현재 202,028명이 다녀갔고 월 평균으로는 4,592명이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찾았다.⁶¹⁾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역사를 담은 양화진홀이 개관되고,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안내를 통해 교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외부 인사들이 돈을 받고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상업적으로 안내하는 일도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 ③ ‘공동유산’과 ‘공동관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100주년협의회는 한국교회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교관이 연합하여 창립한 초교파적 기구로서 100주년협의회에 증여된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 등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참여 교단의 합의를 거쳐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했음은 앞에서 설명했다.(50쪽, 2)–③ 항목 참조) 따라서 100주년협의회가 소유한 유산은 바로 한국교회 공동의 유산이며, 이 100주년협의회가 관리하는 것은 바로 한국교회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창립한 100주년기념교회는 각 교단에서 파송 받은 협력사역자들로 구성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예장통합 출신 교역자 8명이 헌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에도 수십 개 교단 중 특정 교단인 예장통합만이 새삼스럽게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공동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큰 발언이다.

61)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성지로 가꾸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모두 75억 원을 사용하여 양화진홍보관을 짓고 묘원을 가꾸는 한편, 양화진홀을 개관하였으며, 무료안내를 통해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다.

7) <이만규 목사,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pp.22~24)>에 대하여

(1) 23쪽 6~11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념사업회가 일시적으로 관리를 해주려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맡은 것을 가지고 기념사업협의회는 그 땅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주장을 하고 한국교회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100주년기념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또 목사님과 100주년기념교회는 위임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듯...

- ① ‘명의신탁’은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신탁하는 자와 받는 자가 공모하여 부동산 등의 명의를 감추는 등의 불법 행위이다. 그런데 이만규 목사는 어떤 근거의 제시도 없이 전언(傳言)의 형식으로 20여 년 전 한경직 목사와 원일한 장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양화진선교사모원 증여 행위에 대해 ‘명의신탁’이라는 불법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두 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 ② 양화진선교사모원 토지의 증여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주장은, 서교동교회의 신호철 은퇴장로가 자신의 저서 『양화진외국인묘지 -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에서 “두 단체(경성구미인묘지회와 100주년협의회)가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당사자 간에 협의 통모하여”⁶²⁾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했다고 처음 제기하였다. 이후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름으로 2008년 12월 제기한 양화진선교사모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민사조정신청서에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의제자백 판결에 따른 대위등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주장하여 원일한 장로(언더우드 3세)와 한경직 목사가 불법적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⁶³⁾ 또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2010년 6월 제출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고(경성구미인묘지회: 당시 회장 언더우드 3세)와 피고(100주년기념사업회: 당시 이사장 한경직)는 이 사건 토

62)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 -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2008.1. p.144.

63)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지의 등기를 위하여 ‘공모’,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 ‘편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⁶⁴⁾했다. 언더우드 4세가 자신의 부친인 언더우드 3세가 한 일을 부정하는 해괴한 일을 자행한 셈이다.

- ③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소유할 수도 없고 관리할 능력도 없던 당시 경성구미인묘지회의 대표 원일한 장로는 100주년협의회에 증여의사를 표시했고, 법원 판결에 의해 증여 및 등기이전 절차가 이루어졌다.⁶⁵⁾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위해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였다.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는 것은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책임을 방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100주년협의회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창립한 100주년기념교회를 통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된 셈이다. 이는 100주년협의회가 제정한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⁶⁶⁾과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체결한 ‘협약서’⁶⁷⁾에 명시된 내용이다.

(2) 23쪽 13~14줄

“...수도권 교회들의 교회학교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되던 주일추념을 금지하고 주일은 온통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버리는 처사”

-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이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신앙 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가 관리를 담당한 이후부터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이

64)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 (2010.6)

65) 자료 1985-D-002 경성구미인묘지회 회의록(양화진묘지를 100주년협회에 증여 결의/1985.2.22)

자료 1985-D-003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 증여증서(1985.3.4)

자료 1985-B-004 100주년협회,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청구 소송 소장(1985. 4)

자료 1985-A-005 서울민사지방법원, 양화진 공원 토지에 대한 판결문(85가합 1530/ 1985.5.8)

자료 1986-A-002 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1986. 7)

66) 자료 2005-B-003 100주년협회,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2005.4)

67) 자료 2006-B-008 100주년협회와 100주년기념교회 협약서(2006.10.14)

후 지난 5년 1개월 동안 75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여 양화진홍보관을 건립했을 뿐 아니라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아름답게 가꾸었으며, 특히 2006년 9월부터 안내 봉사팀을 운영하며 동영상과 직접 안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역사와 선교사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양화진홍의 개관 이후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참배객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 2010년 8월 19일까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찾은 이들은 모두 202,028명으로 월 평균으로는 4,592명에 달한다.

- ② 주일 추념 금지와 묘원의 주차장화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24쪽 (4)-① 항목과 27쪽 (8) 항목 참조)

(3) 23쪽 15~27줄

사실 한국교회는 그 땅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땅에 대한 실제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예배처소를 빼앗기고 고등법원에 제소를 했다는 유니온교회의 주장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양화진의 외국인묘지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이요 성지라고 생각... 그 양화진묘지는 한국교회 모두의 것으로 함께 아끼고 귀히 여기는 성지로 가꾸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굳이 독점 관리를 자임하시려는 것에 대하여 순수성을 믿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① 만일, 양화진선교사묘원이 한경직 목사와 원일한 장로(언더우드 3세)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염원대로 제대로 관리되고 보존되었다면,⁶⁸⁾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위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전까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방치와 일부 외국인들에 의한 탈법은 심각했다.⁶⁹⁾

68) 2000년대 초반 언론에는 양화진이 버려져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자료 :1994-A-001 ‘선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 신문기사(1994.7.8)//2001-A-001 김성순, <한국기독교공보>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2001.1.6)/2001-A-002 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독교공보> 주간논단(2001.10.20)/2003-A-002/김보현, <한국기독교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03.8.16)

- ② 이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자로서 관리와 보존의 책임을 진 100주년협의회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책임지고 관리할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은 수차례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의 합법적 소유권에 따른 정당한 관리권 행사를 거부함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를 푸는 핵심고리이다.
- ③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8년 12월,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1년 반 동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⁷⁰⁾ 처음에는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의 절반에 대한 소유를 주장했으나, 내용을 변경하여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와 선교기념관 소유의 절반으로 주장 내용을 확대했으며, 2010년에 들어와서는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와 선교기념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대비, 이 땅이 국유지이므로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까지 제기한 상태다. 사실이 이렇음에도 강북노협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유니온교회가 법원에 제소한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다.

(4) 23쪽 28줄~24쪽 9줄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행태로 지적 받는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교인호칭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여 교인들을 불러 모아야 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 ...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교회에는 성직을 봉사나 사역을 위한 직임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자기 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 ...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호칭을 부여한다면 허영을 쫓는 교인들의 수평이동은 너무나 자명한 일 ... 우리 교단의 치리의 근간인 이 장로제도를 그렇게 폄훼해도 되시는지, ... 우리 교단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치리회인 당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①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5주년인 2010년 7월 11일 주일예배에는 성인 4,985명이 참석했다.⁷¹⁾ 이 중에는 물론 타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상적인 수평이동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성도들

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 ②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의 증가 상황을 보면 매년 700여명 정도 증가했는데, 유니온교회와의 갈등이 본격화 된 2007년에는 1000여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증가했다. 언론을 통해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식의 음해성 보도가 많았음에도 그해에 가장 많은 교인이 늘어났다.
- ③ 100주년기념교회가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을 당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4월까지 마포구에 소속된 교회를 떠나 100주년기념교회로 옮긴 교인은 모두 118명으로 이는 전체 등록교인 5039명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⁷²⁾ 이는 일부 교계의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인근 지역 교회에서 수평이동했을 것이라는 주장과는 상치되는 통계다. 특히, 많은 교인들이 장로와 권사 호칭을 받기 위해 이동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100주년기념교회 출석교인의 50%가 2-30대이고 80%가 40대 이하라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알 수 있다.
- ④ 2009년 1월 교회성장연구소가 창립 11주년 연례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직장과 이사 문제로서 49.8%였고, 다음으로 '목회자 문제'가 22.8%였으며, 그 밖에도 자잘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으나 별로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아울러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게 된 요인 역시 '목회자 설교', '목회자 인

69) 100주년기념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모적부에 의하면,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총 417명이 안식하고 있는데, 이중 양화진이 공원으로 지정된 1965년부터 선교기념관이 건립된 1986년 10월까지 66기, 이후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가 설립된 2005년 7월까지 42기의 묘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묘지들은 기본적으로 불법묘지이다. 또 유니온교회는 지금까지도 37기의 묘지를 예약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자료 2010-C-012 양화진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2010.7.1)/자료 2005-D-024 양화진묘지 사전 매매 리스트 및 영수증(2005.12))

70)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자료 2009-D-001 원한석 등(법률사무소 다솔), 민사조정 신청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2009.1.8)

자료 2010-D-010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0.4)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2010.6)

71) 100주년기념교회 후보(2007년 8월 7일~2010년 7월 11일) '전주일 통계' 참조

72) 자료 2009-C-022 지강유철, 100주년교회가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하여(2009.7.22)

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⁷³⁾ 이러한 한국교회에 내재한 문제에 대한 천착 없이 단순히 교인증가 이유를 '수평이동'의 병폐로 몰고 가는 처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 ⑤ 100주년기념교회는 예정통합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100주년협의회가 인준한 정관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5) 24쪽 15~20줄

또한 우리는 묘지관리나 홍보를 위해 세운 건물에서는 용도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유니온교회를 내보내고서도 귀 교회에서는 수천명이 모이는 주일예배 처소로 사용하면서...

- ①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쫓겨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⁷⁴⁾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유 또한 마포구청의 행정지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26쪽 (7) 항목, 36쪽 (2) 항목 참조)
- ②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 현행법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 이유 또한 마포구청의 행정지도 때문에 유니온교회는 물론 100주년기념교회까지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100주년협의회는 선교기념관을 설립 당시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다. 즉, 선교기념관 1층은 100주년협의회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 예배실은 모원 유가족 관련 행사와 예배, 양화진목요강좌 등 공공목적 행사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일에는 100주년기념교회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일 예배 처소는 양화진선교사모원 밖(합정동 142)에 있는 양화진홍보관과 교육관이지 선교기념관이 아니다.(12쪽 지도 참조)

73) 2009년 1월 교회성장연구소는 9개의 대도시에서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88명을 대상으로 '교회를 옮기는 일'을 주제로 가구방문 방식으로 일 대 일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74) 업무방해 소송의 경우에는 재정신청까지 요구했으나 각하되었다.(2009-A-009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판결문(2009초재155/2009. 4. 13))

(6) 24쪽 21~28줄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묘지는 한국교회에 돌려주시고 새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목회로 목사님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세우고 ... 양화진묘지 관리가 그렇게 염려된다면 유니온교회에 맡기면 아마 더 잘 돌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포구교회협의회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이름 하나를 믿고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100주년협의회도 양화진묘지를 겸손히 한국교회에 다시 내어놓게 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 ①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교회 사역과 제네바 한인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시는 일반 행정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기로 결정하고 이재철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의 수락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이재철 목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고 순종하였다.⁷⁵⁾ 당시 이재철 목사는 정형화된 목회를 떠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안식하고 있는 양화진 성지의 묘지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100주년기념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수락했다. 창립 정신에 따라 양화진 선교사묘원을 성지로 가꾸어 보존하고 있는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 목사에게 예장통합의 이만규 목사는 그 어떤 합리적, 신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소명지(召命地)를 떠나 옮기라는 것이다.
- ②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는 1890년 처음 설치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구한말에도 황량한 폐허 같아서 서구인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염려되니 서울에 있는 거류민회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한 독립신문의 사설⁷⁶⁾이 있었고, 1964년 원일한 경

75) 자료 2005-C-010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취임사(2005.7.10)

76) 자료 1896-A-008 <The Independent> 사설(Editorial) (1896.10.31) 참조. : “... It(yangwhachin) looks sorrowful not only because it is a place where the dear ones are laid to rest, but because the way in which it has been neglected is truly mournful. ... We suggested that the committee on cemetery will call a mass meeting of foreign residents at an early date, and make a some arrangements by which the cemetery in yangwhachin can be made respectable.” 이 기사는 당시 양화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서구인들이 선진국 사람이라는 존경심마저 잃고 있으므로 거류민들의 중지를 모아 이곳을 재정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당시 외국인 묘지회가 양화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구미인묘지회 회장이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⁷⁷⁾를 보더라도 ‘매장자 후손들의 느슨한 조직(a loose organization)’이었던 서울외국인묘지회가 한국전쟁 이후에는 후손마저 거의 없어서 ‘유니온교회에 관리를 위임’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때까지도 양화진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다.

- ③ 원일한 장로가 서울시장에 보낸 진정서에 의하면, 유니온교회는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대신하여 1956년부터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양화진선교사묘원은 한국교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공간이었고, 단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공동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35쪽 (1)–③과 52쪽 (4)–② 참조)
- ④ 유니온교회는 1986년 10월, 100주년협회의 배려로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은 한국교회와 성도들로부터는 더욱 멀어졌고, 한국의 현행법으로 매장이 불가능했으나 묘지조성이 수시로 거행되고, 심지어 매장 예약까지 벌어지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⁷⁸⁾ 유니온교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신교 전통에 따른 예배를 드린 교회이다.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교파를 초월해 알렌 선교사 집 등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오늘의 유니온교회는 평범한 외국인교회 중의 하나일 뿐이다.⁷⁹⁾
- ⑤ 유니온교회는 지난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자였으나 이곳을 한국기독교의 대표적 성지가 아니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사적인 묘지로 축소하여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도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이곳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중인데, 이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묘지를 예약한 외국인(피터 언더우드 등 37명)들을 매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미 명확한 답을 밝힌 바 있다.⁸⁰⁾ 이처럼 분명하게 불법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 개인에게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다시 맡기자는 주장은 결국 불법행위를 비호하려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 ⑥ 100주년협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금을 요청했을 때, 마포구 관내에서는 오직 감리교 소속의 두 교회가 4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했을 뿐이다.⁸¹⁾ 그랬던 마포구교회협의회가 이제 와서 양화진선교사묘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 77) 원일한 경성구미인회장은 서울시에 낸 진정서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느슨한 조직’이고 심지어 한국 전쟁 후에는 한국에 유족이 없어 묘지관리를 유니온교회에 위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ntil a few years ago the management of the cemetery and title to the land was under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a loose organization of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other friends in the community.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relatives remaining in Korea was very small, so in 1956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formally turned over responsibility to the Seoul Union Church.”(자료1964-D-002 원일한,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양화진 묘지 보호 진정서 사본-영문(1964. 12. 31))
- 78) 100주년기념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묘적부에 의하면,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총 417명이 안식하고 있는데, 이 중 양화진이 공원으로 지정된 1965년부터 선교기념관이 건립된 1986년 10월까지 66기, 이후부터 100주년기념교회가 설립된 2005년 7월까지 42기의 묘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묘지들은 기본적으로 불법묘지이다. 또 유니온교회는 지금까지도 37기의 묘지를 예약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자료 2010-C-012 양화진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2010.7)/자료 2005-D-024 양화진묘지 사전 매매 리스트 및 영수증(2005.12))
- 79)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유니온교회 현황(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 자료 분석)을 살펴보면, 1992년 이후 유니온교회의 교인 수는 150명 내외였으며, 제직은 매년 7명~18명이었다. 2003년 이후에 제직 중 선교사 후손은 없었으며, 경성구미인묘지회 현(2007년 이후) 임원인 피터 언더우드, 존 린튼, 도날드 클라크 등은 모두 유니온교회의 제직이 아니었으며, 2006년 유니온교회 요람에 도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자료 2005-E-025 유니온교회의 출범과 교역자, 제직 명단 자료(1886~2005)/자료 2006-E-010 유니온교회, 2006년 교회요람(Seoul Union Church Directory 2006))
- 80) 2007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국무총리실과 마포구청을 통해 이른바 ‘양화진 문제’의 해결을 진정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9월3일 100주년협의회와 마포구청을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했다.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진정 내용은 ①양화진선교사묘원은 국유지이며, ②양화진선교사묘원의 사용권은 유니온교회에 있으므로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며, ③100주년협의회 양화진 개발계획은 중단되어야 하고, ④양화진에는 외국인인 계속 문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는 ①양화진선교사묘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합법적인 100주년협의회 소유로서 국유지로 볼 수 없으며, ②선교기념관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법 상 불가하며, ③양화진 개발 문제는 관련법상 공원시설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개발 추진사항이 없으며, ④양화진에 매장하는 문제는 관련법 상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매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양화진선교사묘원은 공원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상 묘지설치 제한지역인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묘지 설치가 불가할 뿐 아니라,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동법 시행령 11조 별표2 제4호 사목)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자료 2007-A-036 국무총리실,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검토(2007.9))
- 81) 100주년협의회 제26회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중 ‘4. 100주년사업 협찬교회 현금내역’ 자료를 보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마포구 관내 교회에서 현금한 것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아현중앙감리교회(3,400,000원)와 서강감리교회(600,000원)뿐이었다.(100주년협의회 제26회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p.22)

8) <정연희 - 한국교회 정말 어른이 안 계십니까?(pp.25~27)>에 대하여

(1) 26쪽 27~31줄

... 양화진 묘역의 법적 소유권은 1985년 한경직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기쁘고 선한 뜻으로 100주년협의회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 ...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몇몇 기업체에서 현금한 돈과 당시 지하철 2호선 건설 때문에 양화진 묘역 일부의 땅을 서울시가 구입하면서 지불한 적지 않은 돈으로 선교기념관이 건립되었다.

-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 이전은 당시 한경직 목사와 원일한 장로의 아름다운 뜻과 한국교회의 기도에 힘입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실이다.
- ② 선교기념관 건물은 당시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성금으로 지어졌으며,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함으로써 받게 된 불하대금은 전액 용인 순교자기념관 건립에 사용되었다.⁸³⁾

(2) 27쪽 10~17줄

협의회 측에서는 그들에게 '나그네!'라고 소리치며 주인이 하지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고 있다. '현재 유니온교회 신자들은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의 후손도 아니다'라고 으박지르고 있다. ... 그런 나그네들이 예배를 드릴 처소만 허락해 달라는 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처소만 허락해 달라는 데 어머어마하게도 '국권'과 '주권'과 '불평등조약 95년'을 쳐들어가며 싸우자고 하는가?

82) 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83) 100주년협의회는 지하철 공사 및 도로확장으로 점유된 토지 보상금 331,120,500원을 1988년6월15일 수령하였으며, 이 돈은 용인 순교자기념관 건축에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성구미인모지회는 '100주년협의회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데 이의없음을 각서하였다.(자료 1988-D-001 구미인모지회 각서(1986.4.21)/자료 1988-B-002 100주년협의회 이사회 회의록-보상금 수령 확인(1988.6.15)

- ①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가 존경하던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원로들이 이룩한 아름다운 업적이 훼손당하고 있다.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로 만든 한국교회의 원로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형사고소를 통해 범법자로 만들려는 행위⁸⁴⁾를 거듭했으나 한국교회는 이런 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②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1985년 이루어진 양화진선교사묘원 소유권 이전 및 등기이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양화진 소유권의 절반을 요구하였으나 이제는 양화진 토지와 선교기념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예배처소를 허락해 달라던 때의 태도를 버리고 주인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 땅은 정부 소유의 국유지이므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곁들이고 있다.⁸⁵⁾ 이처럼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나그네가 아니라 스스로를 주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한국교회의 성지요, 역사와 신앙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한국교회의 염원은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 ③ 양화진에 외국인묘지가 설치된 것은 1883년 11월 조선과 영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영수호조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 조약은 영사재판권은 물론 최혜국 대우, 군함의 자유항행권, 연해측량권 등 그 이전에 체결되었던 조일수호조규, 조청상민수륙무역

84)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 관련 인사들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으며, 일부는 불기소되었다. 업무방해 소송의 경우에는 재정신청까지 요구했으나 각하되었다.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경성구미인묘지회 측에서는 검찰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대하여 ‘100만원 벌금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의 구형(求刑)에 불과한 것이며, 이마저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소송을 철회함으로써 모든 법적 소송은 종료되었다.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기한 ‘이전등기 말소 소송(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자료 2007-A-025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공소장(2007.10.18)/2008-A-001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08.1.16)/2009-A-009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판결문(2009초재155/ 2009.4.13)

85)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자료 2009-D-001 원한석 등(법률사무소 다솔), 민사조정 신청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2009.1.8)
 자료 2010-D-010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0.4)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2010.6)

장정 등에 포함된 불평등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외국의 자본주의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용이하게 조선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⁸⁶⁾ 이처럼 양화진은 구한말 암울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슬픈 역사를 배경으로 지니고 있다. 이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왔던 선교사들이 문힘으로써 한국기독교의 성지가 되었지만, 슬픈 역사를 감출 수는 없다.

- ④ 그동안 100주년협의회를 이끌어오면서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한 강원룡 목사, 정진경 목사, 강병훈 목사, 최창근 장로, 김경래 장로, 정이숙 권사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어른이신데 또 달리 어떤 어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가.

86) 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시대사> 제2권, 고종20년 10월27일자

9) <이재철 목사와 그 주변인사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하여(pp.28~35)>에 대하여

(1) 28쪽 1~2줄

이재철 목사는 본교단에서 헌법과 신조를 지키기로 서약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이며 현재 서울서노회 전도목사입니다.

- ① 강북노협이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은 지난 2009년 9월 중순이었다. 이재철 목사는 2009년 6월 26일 서노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는 본교단에서 헌법과 신조를 지키기로 서약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이며 현재 서울서노회 전도목사”라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재철 목사가 통합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통합 헌법과 신조를 지키기로 서약한 것은 그 헌법과 신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함이지 그 헌법과 신조의 문자를 우상으로 섬기기 위함이 아니다.

(2) 28쪽 15~29쪽 6줄

2007년 8월 5일, 서울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내몰려 마당에서 예배했고 그 사실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2005년 4월 29일 김경래 장로가 보낸 편지나, 2005년 11월15일 이재철 목사가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선교기념관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서울유니온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100주년교회가 부당하게 관리권과 사용권을 행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한마디로 이재철 목사의 100주년기념교회는 겸손히 굽히고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교세가 2000명이 넘자 100주년협의회 소유권을 주장하며 서울 유니온교회를 압박하여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 ① 유니온교회 측은 100주년협의회와 2005년에 주고받은 서신을 ‘자신들에게 선교기념관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서신은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전까지 당시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선교기념관의 관리가 유니온교회에 위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선교기념관의 영구적인 관리권자임을 확인해주는 증명서가 아니다.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

묘원의 관리를 담당할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면서 이미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유니온교회와의 공존과 상생, 나아가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성지를 꿈꾸었다. 이는 2005년 4월의 김경래 100주년협의회 상임이사와 11월 이재철 목사의 편지 속에 잘 드러나 있다.⁸⁷⁾ 김경래 상임이사의 편지는 동양적 겸양과 성경적 겸손의 실천으로, 이 나라에 손님으로 들어오되 생명과 전 생애를 바친 선교사들에 대한 존경과 보은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었다. 그런 동양의 미덕과 문화를 모르는 서양인들이 김경래 장로의 서신을 근거로 유니온교회가 자신들의 영구적인 예배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이다. 왜냐하면 김경래 장로의 공문 그 어디에도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소유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기 때문이다.

- ② 이재철 목사의 편지는 그 편지의 내용 그대로 선교기념관과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권이 100주년기념교회에 있음을 밝히기 위한 편지다. 유니온교회가 지하 부속문을 잠그고 100주년기념교회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계속 100주년기념교회의 실체를 부정하였기에 이재철 목사는 모든 관리권이 100주년기념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의 주일 오전예배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유니온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의 관리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한 말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내용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 ③ 유니온교회는 애초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을 적극 환영했고, 그동안 100주년협의회 배려 아래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교기념관의 주인인 양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⁸⁸⁾ 그러던 중 2005년 9월11일 주일, 유니온교회 측이 100주년기념교회와 아무 상의도 없이 주일 오후 시간을 외부 공연단체에 대관을 했기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의 2부 예배를 30분 정도 앞당겨 끝내야 했다.⁸⁹⁾ 100주년

87) 자료 2005-B-008 100주년협의회, 유니온교회 발송 공문(2005-002/2005.4.29)

88) 자료 2005-E-007 유니온교회,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공문(2005.4.26)

자료 2005-E-017 유니온교회(리처드 브릭스),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서신(2005.9.20)

자료 2005-E-018 유니온교회(리처드 브릭스), 100주년협의회 이사들에게 보낸 서신(2005.10.21)

자료 2005-E-019 유니온교회(리처드 브릭스), 100주년협의회 강원룡 이사장에 보낸 서신(2005.11.15)

기념교회와의 협력이 최우선 되어야 함에도 공존하고 협력해야 할 상대를 인정치 않는 유니온교회의 독선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 ④ 100주년기념교회는 보고서 표현처럼 “겸손히 굽히고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교세가 2000명이 넘자 100주년협의회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서울 유니온교회를 압박하여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법적 소유자로서 관계를 분명히 했고, 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로서 공존과 상생을 추구했다.⁹⁰⁾ 오래전부터 선교기념관에서 예배하던 유니온교회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배시간은 물론 여타의 교회활동까지 보장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는 지난날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 벌여졌던 불법적 행위와 결과들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행위를 묵살하며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를 압박했다는 식으로 소위 양화진 문제를 촉발시켰다.

(3) 29쪽 11~15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가족별로 묘지를 예약을 받았을 뿐이지 금품을 받고 매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Reserved Site 명단을 제시합니다. 초기부터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리 주체였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묘지의 관리비를 징수한 것입니다.

- ① 양화진은 1965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규매장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2000년 1월 발효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규매장 금지는 보다 강력하게 금지되었다.⁹¹⁾ 따라서 매매든 관리비를 받은 것이든 이곳에 시신을 묻는 것을 전제로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은 유니온교회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임을 의미한

89) 2005년 9월11일 주일에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2부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한국 코스타 관련 단체에 선교기념관 찬양 집회를 허락해주고 이 사실을 주일 전날에 알려주어 100주년교회는 2부예배를 예정보다 30분 정도 일찍 끝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90) 자료 2005-B-015 100주년협의회, 양화진 선교사 공원묘지 운영관리의 건(2005.10.12)

자료 2005-B-016 100주년협의회, 협의내용 회신(2005.11.9)

자료 2005-C-020 이재철 목사가 유니온교회에 보낸 서신(2005.11.9)

다. 100주년기념교회가 관리를 시작한 2005년 이후 묘지예약 영수증을 들고와 매장을 요구한 사례도 4건이나 발생했다. 따라서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를 맡게 되면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 ② 특히 1986년 이후 2005년 사이에도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42기의 새 무덤이 조성되었다.⁹²⁾ 이때 조성된 무덤 중에는 단지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이거나, 혹은 내국인일지라도 외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는 21세기 초까지 불법적인 매장이 자행되었다. 100주년협의회는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권을 유니온교회로부터 회수한 것이다.

(4) 29쪽 23~33줄

... 양화진공원을 조성한 주체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아니라 서울시와 마포구청입니다. 2003년, 2004년 마포구는 130억 원 이상을 들여서 1600평의 사유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 그때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조경도 함께 하였습니다. 현재 잘 정리된 묘원의 길의 블록, 경계석, 축대조성은 모두 마포구청이 한 것이지 100주년기념교회가 한 것이 아닙니다. ... (100주년기념교회가) 낮은 울타리를 만들고 꽃을 심고 축대를 보완한 것도 있지만 꼭 보존해야 할 나무와 역사적인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장을 훼손한 부분도 있습니다.

- ① 강북노협의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와 유니온교회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강

91) 마포구청은 '도시공원인 양화진외국인묘지 공원 내 신규매장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규정의 "묘지설치 제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서 신규매장이 불가함을 통보했다. (자료 2007-A-038 마포구청,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에 관한 회신(사회복지과-25019/2007.12.6).

92) 100주년기념교회가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65년, 양화진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선교기념관이 건립된 1986년 10월까지 조성된 무덤은 66기였으며, 이중 선교사 관련 무덤은 13기, 나머지 53기는 일반인 무덤이었다. 또 1986년 이후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될 때까지 조성된 무덤은 모두 42기로서 이중 선교사 관련 무덤은 15기, 일반인 무덤은 27기였다. 이 무덤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불법조성된 것이다.

북노협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공동작업으로 조성한 양화진성지공원조차 구분을 못한다. 마포구청 주관으로 절두산성지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연결하여 조성한 공원은 양화진성지공원이다. 이 양화진성지공원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별개다. 강북노협은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조성한 양화진성지공원에 투입된 경비⁹³⁾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내의 조경과 묘역단장 등에 사용한 경비를 혼동하고 있다.

- ② 마포구청이 주관이 되어 양화진성지공원을 준공한 것은 2005년 5월이다. 마포구청이 양화진과 절두산 천주교 성지를 기독교 성지로 가꾸려고 할 당시 천주교 측은 어떻게 양화진이 성지가 될 수 있는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천주교 측의 이런 생각을 바꾸는데 100주년협의회가 노력이 적지 않았다.⁹⁴⁾
- ③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이후 현금 중 50%는 반드시 교회 밖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정관⁹⁵⁾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면서, 그 최우선 대상지를 양화진선교사묘원으로 삼아 아름답게 가꾸고, 세계적 표준에 입각하여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묘지 예약, 돈을 받는 참배안내, 생존한 개인이나 교회를 드러내려는 기념물을 정리했고, 묘역을 아름답게 단장했다. 양화진연구원(현 양화진문화원)을 창립하여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역사와 선교사 연구를 본격화했다. 이처럼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홍보

93) 마포구청은 2001년 5월부터 절두산 성지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연결하는 양화진 성지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2005년 5월까지 양화진 지하차도(32억원), 양화진 성지주차장(47억원), 양화진 성지공원(39억원)을 건설했다. 이후 2005년 11월에는 양화진 일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1.3억원)과 2008년 9월 절두산 성지 주변 보행로 환경개선 사업(10.8억)을 시행하여 양화진 주변 성지화 작업에 모두 128억 원(시비 포함)을 집행했다.(이준범, <행정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희망제작소, 2009, p.103)

94) 이준범, <행정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p.103, 2009, 희망제작소
100주년협의회는 1997년 2월, 한경직 이사장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양화진 성지공원 조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1999년 6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2년 5월에는 강원룡 이사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양화진 성지공원 조성을 건의했다. 또 2001년 5월에는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에게 '양화진공원 주변 환경미화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그해 8월 서울시로부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토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시달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자료 2001-B-003/004 협의회, 외국인묘지공원 주변 환경미화에 대한 청원(서울시장/마포구청장/2001.5.31)/자료 2001-A-005 서울시, 양화진 환경미화 청원에 대한 회신(공녹 58215-2269/2001.8.10)

95)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7조 재정 31. 현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하여 사용한다. 32. 매월 첫째 주일에 그 전월의 재정 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 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면으로 보고한다.(자료 2006-C-009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관을 건립하고,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관리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75억을 지원했다.

- ④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성지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업적은 양화진 홍보관의 준공, 양화진 흙의 개관,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무료 안내활동이다. 양화진 홍보관은 양화진을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만들려는 마포구청의 의지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한국 최고의 기독교 성지로 가꾸려는 100주년협의회 소망이 만나 이룬 결과이다.⁹⁶⁾ 또 양화진 흙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찾는 성도 및 시민들에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의 사랑을 몸으로 체함케 하는 한국교회의 역사와 신앙교육의 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30쪽 3~8줄

...이재철 목사는 2007년 10월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재판에서 당시 예장(통합) 총회장 김영태 목사의 권유로 경성구미인모지회가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고소, 고발, 재정신청 등이 모두 무혐의와 증거없음으로 기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①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모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형사소송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재철 목사 사자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업무방해 소송을 냈고, 민사소송으로는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신호철 장로는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 ‘묘비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마포구청을 상대로는 ‘은닉국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청구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으며, 일부는 불기소되었다.⁹⁷⁾ 업무방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냈으나 이 또한 각

96) 이준범, <행정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2009, 희망제작소, pp.103~140. 이 책에서 저자는 양화진묘원의 성지화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공무원(팀장)으로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되었다.

- ② 강북노협은 피터 언더우드가 이재철 목사를 고소했던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건이 검찰로부터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의할 때 100만 원 벌금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검찰이 법원에 구약식으로 ‘100만원 벌금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한 것이다.⁹⁸⁾ 100만 원 벌금형은 검찰의 구형(求刑)에 불과할 뿐 판결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은 검찰의 구약식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법원은 검찰의 구약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공판으로 전환하였으나 피터 언더우드가 소를 자진 취하함으로써 기각되었다.
- ③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 8월 현재, 피터 언더우드가 경성구미인모지회의 이름으로 제기한 ‘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경성구미인모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2008년 12월 양화진선교사묘원 절반의 소유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세 차례의 소장 변경을 통해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이 국유지라는 주장은 이미 법제처⁹⁹⁾와 국무총리실의 유권해석(63쪽 ‘7. <이만규 목사,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에 대하여’ (6)~⑤와 각주 80번 참조)을 통해 국유지가 아니라 100주년협회의 합법적 소유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성구미인모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와 유니온교회는 예배처소를 잃은 불쌍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위장한 채 한국 기독교의 성지를 소수 외국인의 사유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97) 신호철의 은닉국유재산 주장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2008년4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자료 2008-A-002 서울행정법원, 은닉국유재산 소송 판결문(2008.4.29))

98) 자료 2007-A-025 서울지검, 사자명예훼손 공소장(2007.10.18)

자료 2008-A-001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08.1.16)

99) 양화진이 명의신탁이라는 탈법적 방법으로 은닉된 국유지라는 주장은 이미 여러 건 소송의 판결과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해 가려진 사항이다. 특히, 1986년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공문(1986.5.10-외국인 묘지용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질의)에 의하면, 법제처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는 경성구미인모지회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인묘지용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임’이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자료 1986-A-002-X 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1986. 5))

(6) 30쪽 9~12줄

이재철 목사는 협의회 이사들의 간청으로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목사는 1988년부터 양화진 선교기념관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양화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100주년협의회 이사들이 2005년 청빙한 때보다 훨씬 오래전 일입니다. 그 편지가 증언합니다.

- ① 1988년 9월 20일, 선교기념관 건물 임대 사용을 유니온교회에 요청한 편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재철 목사는, 1988년 6월 용산구 한남동 여성청년교육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주님의교회를 창립했다. 이재철 목사는 창립 때부터 예배만을 위한 자체 건물을 갖지 않을 것과 현금의 50퍼센트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50여 명의 성도로 시작한 주님의교회는 수개월 만에 성도의 증가로 예배처소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재철 목사는 1988년 9월, 여러 곳을 주님의교회 처소로 타진하던 중에 선교기념관을 빌려 주님의교회 예배처소로 사용하기 위해 유니온교회에도 건물사용을 요청했던 것이다. 당시 이재철 목사는 1986년부터 양화진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주일 오전 이외에는 일주일 내내 선교기념관의 셔터가 내려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요청은 한국인들에게 선교기념관을 빌려줄 수 없다는 유니온교회에 의해 거절되었다.¹⁰⁰⁾
- ② 그 이후 주님의교회는 1988년 11월 1일, 논현동 YMCA 2층 소망실로 예배처소를 옮겼고, 1996년 3월 3일 주일부터는 정신여자고교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1997년 8월, 주님의 교회는 정신여고에 대강당을 지어 기증하기 위해 기공예배를 드렸으며, 이재철 목사는 1998년 6월, 처음 개척 당시의 약속대로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의 교회를 퇴임했다. 그해 11월1일 정신여고 대강당은 준공되어 약속대로 정신여고에 기증되었다.¹⁰¹⁾
- ③ 이재철 목사가 양화진선교사모원 선교기념관을 빌려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와 그 이후의

100) 자료 1988-C-003 이재철 목사가 유니온교회에 선교기념관 건물 임대 사용을 요청한 편지 (1988.9.20)

101) 주님의교회 홈페이지(www.pcltv.orf), '교회발자취' 참조

행보는 이처럼 투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철 목사가 20년 전부터 속내를 감추고 양화진선교사모원 ‘진입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자 음해이다.

(7) 30쪽 20~26줄

장로교뿐만 아니라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등의 헌법과 규칙에도 항존직(장로, 권사, 안수집사)은 선거와 임직의 절차를 거쳐서 세우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는 장로를 직분으로 보지 않고 호칭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존중하는 장로라는 귀한 직책을 평가절하하려고 합니까? ... 개혁교회의 대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호칭장로제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발입니다. 또한 교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질서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 ① 성경에 나오는 “장로”(프레스비테로스)는 본래 나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었다. 더욱이 “권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책이다.
- ②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주체인 100주년협의회의 지도와 후원 아래 모든 교회활동을 하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교회 창립 추진 당시 100주년협의회가 결정한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모원에 잠든 은인을 기리며 전도하는 연합교회,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고 개혁의 비전을 가꾸는 깨어 있는 교회’를 지향하며 정관을 작성했다.
- ③ 100주년기념교회의 ‘장로, 권사 호칭제’는 모든 교단을 아우를 수 있는 연합교회를 지향하며 충분한 내부 토론을 통해 확정된 제도이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장로 권사제도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제정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100주년기념교회는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2009년 6월, 정관을 개정하여 장로와 권사 호칭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38쪽 ‘3. <마포구교회협의회 성명서>에 대하여’ (3)-②와 주) 37번 참조) 한편 2009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도 호칭장로제 시행을 결정했다.

(8) 30쪽 28~31쪽 1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병폐는 교인의 수평이동입니다. 3년만에 4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교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300여명 세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교인들은 수평이동한 것 아닙니까? 혹시 쉽게 장로 권사 소리 들으려고 전입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 ①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앞글에서 이미 제기하였다.(58~59쪽 '7. 이만규 목사의 주장에 대하여' 중 (4) 항목 참조)

(9) 31쪽 13~15줄

'서울외국인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기념교회인 영구적인 시설로 처음 이사한 것은 1986년이었다'라고 명시한 설명판을 철거하여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 사용 및 관리권의 정당성과 근거를 훼손하였습니다.

- ① 유니온교회와 예장통합 측은 설명판 철거가 마치 대단한 역사왜곡이라도 되는 양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47쪽 '5. <양화진외국인묘지에 1896년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설명판>에 대하여' 참조)
- ② 유니온교회는 설명판에 있었던 '서울유니온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 기념교회인 영구적인 시설로 처음 이사한 것은 1986년이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영구적인 예배처소로 사용하기로 애초부터 약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명판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선교기념관이 영구적인 시설이라는 의미이지,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에 영구적인 예배처소로 주었다는 뜻이 아니다. 애초부터 100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에게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을 성지로서 제대로 관리한다는 조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1986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유니온교회와 100주년협의회 사이에서 오간 문서들에 의해 증명된다.
- ③ 유니온교회가 1986년 6월 작성하여 100주년협의회에 제시한 '협약제안서(Suggested Agreement)' 제5조는, '선교기념관 사용에 관해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60일전 어느 일방의 요구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고 되어 있다.¹⁰²⁾ 이 문서에 의하면, 선

교기념관 건립 당시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을 100주년협의회로부터 1년 단위로 빌어 사용할 계획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 ④ 100주년협의회는 본래 선교기념관을 건립하면 1층을 자체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동년 7월 유니온교회가 작성하고 언더우드, 게디스, 사우어 등 유니온교회 교인대표 3인이 서명하여 100주년협의회에 제안한 ‘선교기념관 관리규정 초안’은 선교기념관과 묘지 관리는 100주년협의회가 담당하며, 100주년협의회가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유니온교회가 예배, 선교, 교육의 용도로 사용하고, 건물의 마스터 키는 100주년협의회가 보관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자가 협의하되 100주년협의회가 최종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¹⁰³⁾ 이를 보더라도 선교기념관 건립 당시 100주년협의회와 유니온교회 사이에는 엄연히 소유자와 임대사용자라는 인식이 명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교기념관과 양화진선교사묘원 전체에 대한 사용권과 관리권이 애초부터 유니온교회에 영구적으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1986년 당시 유니온교회를 대표했던 언더우드 3세(원일한), 게디스, 사우어에 의해서도 부정된다.
- ⑤ 이렇게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의 사용권과 관리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20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한경직 목사와 강원룡 목사 등 당시 100주년협의회 임원들의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존경과 보은의 마음 때문이었다. 이는 정진경 목사 등 당시 한경직 목사와 함께 100주년협의회를 이끌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다.¹⁰⁴⁾ 그러나 100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에게 선교기념관의 사용을 허락하면서도 완전히 배타적인 사용권이나 관리권 요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

102) 자료 1986-D-003 ‘Suggested Agreement’(1986.6)/자료 1986-D-004 계약서 제안/국문 번역(1986.6)

103) 자료 1986-D-005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and Foreigners’ Cemetery Park(draft)’(1986.7.23)

자료 1986-D-006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및 외국인 공원묘지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초안-국문/1986.7.23)

104) 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10) 31쪽 17~23줄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교회를 10년 목회하고 사임함으로 약속을 잘 지킨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재철 목사는 미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있고 행정이 있는 목회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저의 목회 13년을 돌아보면 '예배당 없는 목회'였는데 앞으로는 '교회 없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목회이니까 개인 복음전도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100주년기념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 건물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그가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이재철 목사가 주님의교회 10년 목회와 제네바한인교회 3년 목회를 마치고 일반 교회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그가 100주년협회의 간곡한 요청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100주년기념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수용한 이유는 2005년 7월 10일의 창립예배 취임사에 잘 나타나 있다.¹⁰⁵⁾

“평생 주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쳐 오신 두 어르신의 얼굴을 다시 마주 대하고 그 분들의 심정을 대하는 순간,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제 뇌리 속에 탄 생각이나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틈을 주지 아니하시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노종들을 다시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신비스런 권위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권위 앞에서 제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제 신념, 이를테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길이라 여겨왔던 제 신념은 애벌레가 나비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고치와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이재철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한 100주년기념교회 사역을 인간간의 약속 위반으로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대한 몰이해의 반증이다.

105) 자료 2005-C-010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취임사(2005.7.10)

- ② 100주년기념교회가 교회 건물을 가지려고 애썼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홍보관도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하여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다.

(11) 32쪽 4~14줄

이재철 목사는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를 세우고, 2006년 6월23일 양화진묘지운영규정을 만들어 그 규정을 소급적용하였습니다. 묘비석이나 중요한 시설물들을 철거하였습니다. 심지어 1985년 이전에 행해진 일들도 비판,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주년기념교회는 정관을 수정하면서 구 정관에 따라 장로로 호칭된 자들에게 대해서는 개정 정관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985년 이전의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전적으로 외국인들 관리 하에 있어 ... 자신들의 관리 시점 이전의 묘지관리 사항에 대해 월가알부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당시 양화진 관리자들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이재철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다.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협회의 기념교회 창립추진 5인위원회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양화진묘지기를 마지막 소명으로 받으라는 명령으로 알고 순종한 것이다.
- ② 양화진선교사모원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했다. 이를 위해 100주년협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오류가 발견된 설치물이나 묘원의 경건성을 해치는 기념비, 공원으로서의 아름다움과 경관을 해치는 설치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고쳐나가고 있는 바 이는 관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그럼에도 강북노협이 이전의 묘지관리의 불법성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월권행위이고 당시 양화진 관리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비판하는 것은 강북노협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강북노협은 국가나 교회가 역사적 과오나 오류를 전임자의 일이었다는 이유로 그 어떤 일도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는 행위에 대해 월권이며 소급적용이라 주장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를 장로 권사 호칭제의 소급적용에 결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 ③ 장로 권사 호칭제와 기념비 철거 등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록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지만 장로 권사 호칭제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한 것

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처럼 공소시효에 제한을 두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불법을 바로잡는 것과 교회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소급적용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12) 32쪽 16~23줄

이재철 목사의 저서 <성숙자반> 292~294에서 ‘그런데 목회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그들을 위해 기도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본 교단의 헌법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6조와 제10장 4조에 의거 교리를 크게 위배하며, 구원론과 기독교론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해석이 다양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 절을 기초하여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① 이재철 목사의 저서 『성숙자반』에 대한 이단성 시비는 이미 서울서노회 측의 재판에서도 스스로 배제하였던 사안이다. 목회자를 ‘이단성’ 문제로 정죄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노협은 이재철 목사가 『성숙자반』에서 한국교회가 사도신경 중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는 “지옥에 내려가시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한 단 한 줄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단 혐의를 붙이려 했고, 심지어 이단 재판이 규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13) 33쪽 17~29줄

14. 교단의 어떠한 분도 저를 불러서 진상을 알려고 한 분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서노회의 노회장 차광호 목사와 부노회장 이건호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대책위원회 서기 김승남 장로 3인이 2009년 4월 15일 서교호텔에서 장시간 동안 이재철 목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곡히 조언한 바 있고, 2009년 5월 27일 예장 통합 총회 역사위원회 양화진분과위원장 이만규 목사가 양화진을 방문하고 이재철 목사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 ① 이재철 목사는 2009년 4월 15일 차광호 목사로부터 차 한 잔 마시자는 요청에 응해 나갔고, 그 현장에서도 장시간에 걸친 ‘간곡한 조언’은 없었다. 그리고 2009년 5월 27일의 예장 통합 총회 역사위원회 양화진분과위원장 이만규 목사의 양화진선교사묘원 방문은 이재철 목사를 만나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다. 이만규 목사의 2009년 5월 5일자 <기독공보> 기고문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한 데 대해 100주년협의회 감사 정광택 장로가 이만규 목사를 방문하여 “양화진을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글을 기고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마지못해 양화진선교사묘원과 100주년협의회를 방문했다가 이재철 목사를 만난 것이다.

(14) 33쪽 31~34쪽 4줄

연합기관인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는 당연히 연합교회입니다. 최근 100주년협의회는 이사회를 열고 7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위원회에서 100주년기념교회는 연합교회라고 다시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주년기념교회를 독립교회라고 강변하는 것은 혹시 기준 없는 항존직 임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창립한 연합교회이다. 그러나 연합교회는 제도적으로 독립교회이어야만 한다. 독립교회가 아닌 경우 특정교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성격상으로는 연합교회, 제도적으로는 독립교회로 세운 이유이다.

(15) 34쪽 20~22줄

양화진외국인묘원은 총회장의 성명과 총회의 공문에서 제안한 대로 양화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100주년협의회 7인조정위원회의 제안대로 양화진묘지의 관리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아니라 100주년협의회가 관리해야 합니다.

- ① 위 주장은 참으로 엄청난 잘못을 담고 있다. 양화진외국인묘원을 양화진에서 옮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강북노협의 ‘한국기독교 공동의 유산이요 성지’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100주년기념교회’에게 양화진을 떠나라는 주장일 것인 바, 강북노협의 주장이 얼마나 경솔한지를 보여주는 실수라 할 것이다. 또 소위 ‘7인조정위원회’는 ‘양화진조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위원회는 양화진의 관리 등에 대하여 한 차례 논의했을 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2010년 4월 열린 26회 정기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식 해체되었다.

- ② 이재철 목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안식하고 있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묘지기로 살기 위해 100주년협회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100주년기념교회로 하여금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떠나 이전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근거를 강북노협은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양화진홍보관과 교육관은 양화진선교사묘원 밖에 위치하고 있다.(12쪽 양화진 지도 참조)
- ③ 100주년협의회가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교관이 연합하여 설립한 초교파 연합기구이므로 100주년협의회가 관리하는 한국교회의 공동 유산은 한국교회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100주년협의회가 창립한 100주년기념교회가 100주년협의회 위임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100주년협의회가 관리하는 것이요, 이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가 공동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할 당시 제정한 ‘100주년기념교회 운영계획안’과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체결한 ‘협약서’에 잘 나타나 있다.

(16) 35쪽 5~9줄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경직 목사님과 현 총회장 김삼환 목사님을 걸어서 자기주장을 펼침으로써 한국교회 전체의 권위와 선교에 막중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이재철 목사가 평소에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 ① 이재철 목사는, 한경직 목사가 1974년의 육영수 영부인의 장례식 때, 강신명 목사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권오성 목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때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한 역사적 사실과, 김삼환 당시 예장통합 총회장이 담임하는 명성교회 성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에서 조가

를 부른 사실을 적시하며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받을 만한 일이냐고 물었다. 이단 혐의를 받은 당사자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들어 질문을 한 것이다.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몰려했던 강북노협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 ②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취소 소송에서 '1985년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계의 지도자들과 자신들의 선조인 원일한 장로 등이 공모하여 명의신탁이라는 편법적 행위로 양화진을 증여하고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⁰⁶⁾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교계 원로들을 욕보이고 한국교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17) 35쪽 16~19줄

이재철 목사는 자신에 관한 혐의안이 총회에 상정되어 있고, 서울서노회에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는 가운데 2009년 9월4일자 국민일보에 <성숙자반>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노회와 총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보입니다.

- ① 『성숙자반』은 홍성사가 발행한 책이다. 도서의 광고는 출판사가 판단할 몫이다. 출판사가 시행한 『성숙자반』 광고까지 이재철 목사가 노회와 총회에 정면도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다.

106)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 신청서(2010.6.3). 이 소장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 피터 언더우드)는 “원고(경성구미인묘지회 측, 당시 대표 원일한)와 피고(100주년협의회, 당시 대표 한경직)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권원 없는 자들(원일한, 한경직)’에 의하여 마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1985년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의 주역이었던 원일한 장로와 한경직 목사를 ‘공모에 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표현함으로써 두 분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부록 1>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양화진외국인묘지 설정 초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설치는 1890년 헤론 선교사 사망을 계기로 미국 공사관이 조영수호조약의 조항을 근거로 묘지를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 초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외교관들과 거류민 기구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1913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소유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설정 초기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가 그리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자료 1883.A.002 조영수호조약(1883.11.26)
 <조영수호조약>은 1883년 11월 26일 조선정부와 영국정부가 맺은 조약으로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군함의 자유항행권, 연해측량권 등 그 이전에 체결되었던 조일수호조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등에 포함된 불평등요소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구미열강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용이하게 조선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출처: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시대사> 제2권, 고종20년 10월 27일자)

관련조항 : 4관5항

The Korean Authorities will set apart, free of cost, at each of the places open to trade, a suitable piece of ground as a foreign cemetery, upon which no rent, land tax, or other charges shall be payable, and the management of which shall be left to the Municipal Council above mentioned.

朝鮮官員應在各通商處所讓出妥善之地作為外國營葬地區其地價及一應年租課稅等項一律蠲免所有管理葬地章程統由以上紳董公司自行定奪舉辦

조선의 정부는 각 통상 지역에서 외국인묘지로 적당한 땅을 무료로 설정하며, 그 지역은 임대료와 세금 및 기타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경영은 위의 신동공사(Municipal Council)에 위임한다.

947. 楊花津外人葬地の塙垣建造議定事 (謄 11 冊)

[發] 英總領事署理 務護照等
[受] 督辦交涉通商事務 南延哲

高宗 30年 9月15日
西紀1893年10月24日

大英欽命駐劄朝鮮統理各口交涉通商事務署總領事官務,
大俄欽命署理公使大臣德,
大美欽命駐劄朝鮮署理便宜行事大臣兼總領事官安〔連〕,
大法欽命駐劄朝鮮辦事大臣法,

大德欽命駐劄朝鮮領事官口,爲照會事,照得,泰西各國與貴國所立條約,載明朝鮮官員在各通商處所讓出妥善之地,作爲外國營葬之區等語在案,查前美欽使因有美國醫生一名在此病故,經與貴前督辦商定,將近楊花津地一段作爲西國營葬之所,茲會商議定,將該地界限周圍建造圍墻,稍壯觀瞻,兼免牲口踐踏,實爲妥協,相應備文照會貴督辦,請煩查照可也,須至照會者,

右照會.

大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 南

癸巳九月十五日

●●

자료 1893.A.007 5국 영사, '양화진의인장지장원건조의정사', <구한국외교문서> 제13권(영안 No. 947/ (1893.10.24))

“... 양화진 부근 한 곳을 서국인 묘지로 삼았습니다. ... 그 땅 주위 경계에 담장을 건조하면 다소 불 만할 것이고 또한 짐승과 사람들이 밟아 훼손되는 것을 면할 것(免牲口踐踏)”

- 이 기록은 당시 양화진외인묘지를 5국 영사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관리가 부실하여 짐승들과 부랑 인들에 의해 많이 훼손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 이후 양화진과 경성구미인묘지회 관련 자료>

이 편지는 언더우드3세가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양화진 관리에 대한 진정서로서 1960년대 당시 양화진묘지의 관리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이 편지에서 언더우드 3세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안장자들의 친척들로 구성된 느슨한 조직이었으며, 이마저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후손들이 너무 적어서 1956년에 유니온교회에 관리를 위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정서의 한글번역 자료에는 밑줄 부분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다.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ecember 30, 1964

His Honor, the Mayor
Special City of Seoul
Republic of Korea

Dear Mr. Yun,

In the year 1890 Dr. John Morrison, one of the early missionaries to Korea, died in Seoul and after considerable negoti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of that day the foreign community of Seoul was given the title of Mapo-shong-dong, Mapo-ku for a cemetery. In the 75 years since that time many hundreds of people who have given their lives in the service of Korea have been buried in that cemetery. Among these are the better-known people Mrs. Dr. Alice Kim, Dr. Richard Appenseller, children of the first Methodist missionary to Korea; Dr. Lillias H. Underwood, the widow, and Dr. and Mrs. Horace H. Underwood, the son and daughter-in-law of the pioneer Presbyterian missionary; Mr. Estal who was famous for his work for Korean independence; Dr. Homer Hulbert and many others. Even today this cemetery is being used by the foreign community, and because of the historical and sentimental associations, and the beautiful location overlooking the Han River, we wish to continue to use it.

Until a few years ago the management of the cemetery and title to the land was under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a loose organization of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other friends in the community.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relatives remaining in Korea was very small, so in 1956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formally turned over responsibility to the Seoul Union Church. I am writing this letter on behalf of the Seoul Union Church, but my own parents and my grandmother are buried in the cemetery and I was a member and former Chairman of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With the growth of the Special City of Seoul, and especially with the building of the #2 Han River Bridge right next to this cemetery, we have become concerned lest something happen to this historic spot. We therefore request that the Special City of Seoul help us to protect this spot by specially designating it on the city plans, and by enforcing appropriate regulations to prevent undesirable buildings and businesses in the immediate vicinity.

We are confident that Your Honor is interested and concerned in preserving such an important cultural monument, and will initiate the necessary steps to effect this.

Respectfully submitted,

The Cemetery is located at the following address:

Special City of Seoul, Mapo-ku, Map-shong-dong,
No. 136, No. 140, No. 141, No. 144, No. 145 - 1, 2, 3
No. 146, No. 147, No. 148

All of these plots are registered in the name of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except plot No. 147.

No. 147 is registered in the name of a man now dead who was the original caretaker of the property many years ago and whose family grave was on the plot. The family grave was removed many years ago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88에서 재인용)

● 자료 1964.D.002 원일한,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양화진 묘지 보호 진정서 사본. 영문(1964.12.30)

... Until a few years ago the management of the cemetery and title to the land was under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a loose organization of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other friends in the community.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relatives remaining in Korea was very small, so in 1956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formally turned over responsibility to the Seoul Union Church.

= 묘지는 수년 전까지 이 묘지에 매장된 분들의 친척들로 구성된 느슨한 조직인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에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남은 사람들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는 그 묘지에 관한 책임을 서울연합교회(Seoul Union Church)에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성구미인묘지회의 명칭 혼용 사례(1978~1980)〉

1978년 양화대교 확장 및 인터체인지공사, 제2호선 지하철공사로 인해 양화진의국인묘지의 소유권과 보상금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을 새로 만들고, 진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단체의 명칭으로 '서울외국인묘지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혼용하고 있다. 이는 이 단체가 옛날부터 제 모양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존속했던 조직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이고 임의적인 형태로 존속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										
접수	연월일	면적	집수	조사	인감	기입	작성	교합	등기필요	과징금
수	계	호인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등기목적					소유권의 보존				
신청사항					부동산등기법제25조제1호					
신청인 京城區米人墓地會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5-10번지 대동자 원 일 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10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8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10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10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10번지								부속서류 위임장 1부 대동자명부 1부 정관 1부 결의서 1부 보류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등기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등본 1부		
서기 1979. 09. 0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10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10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10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10번지		

(신호철, 『양화진의국인묘지-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125에서 재인용)

자료 1979.D.001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등기신청서 사본(1979.11)
 - 이 문서에는 '경성구미인묘지회'로 기록되어 있다.

(신) 1979.12.12

토지거래 관한 권익회동석가신청

1979년 12월 12일

신청인 서울외국인모지회 대표 모래이스지.인
(원 일 인)

(전화 763,7997)

수신 내 두부 장관
경유 서울특별시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

2. 국 적 미 국

3. 명 상 서울 외국인 모지회

4. 설립년월일 1890년 7월 1일

5. 권리 종류 소유권

6. 취득 목적 외국인 토지공원

7. 비고

토지소재지 (지번별)	지목	지적	
		량	m ²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36	전	95	314
동 소 140	전	97	321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모자-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131에서 재인용)

자료 1979.D.002 서울외국인모지회, 토지권리취득 허가신청허가신청서 사본(1979.12)
- 이 문서에는 '서울외국인모지회'로 기록되어 있다.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 허가 신청서

1980년 3월

신청인 경성구미인 묘지회
대표 호메이스 지. 인더우
(원 일 안)
(전화 : 763-7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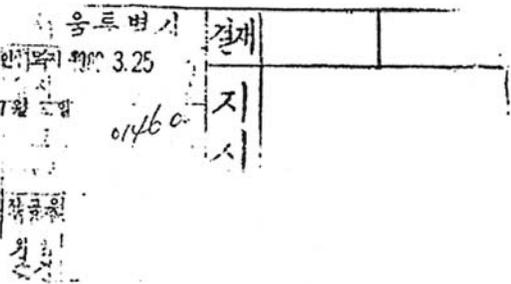


수신 : 내무부장관
경유 : 서울특별시장

1980. 3. 25
경성구미인 01460
75-7927
75-4904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
2. 국 적 :
3. 명 칭 : 경성구미인 묘지회 3.25
4. 설립년월일 : 1890년 7월
5. 권리종류 : 소유권
6. 취득목적 : 외국인 묘지회
- 7.



토지소재지 (지번별)	지 목	지 적	
		지 면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36	전	95	314
동 소 140	전	97	321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132에서 재인용)

자료 1980.D.003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 허가 신청서(1980.3.25)
- 다시 '경성구미인묘지회'로 바뀌었다.

〈양화진 보존의 계기를 만든 전택부 장로〉

양화대교 확장으로 인해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이전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양화진 보존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양화진외국인묘지의 보존운동에 불을 붙인 이는 전택부장로였다. 그는 양화진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고, 〈양화진선교사열전〉을 한국기독교공보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첫 회 기사를 보면, 당시의 양화진외국인묘지가 얼마나 엉망으로 방치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또는 서울유니온교회)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는 허언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자료 1979.A.004 전택부, '양화진외인열전(1)', 〈한국기독교공보〉, 4면(1979.9.29)
 - 전택부 선생은 양화진을 찾은 후 신문기고를 통해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수많은 외국인에 묻혀 있는 이곳이 마구 짓밟히고 버려지고... 인근 파출소의 순경도 모르고 있었다고 탄식했다.'

개정판을 내며

홍성사가 나의 책 《이 땅에 묻히리라 양화진 외인열전》을 조금 수정하고 다듬어서 다시 출간한다고 하기에 나는 무조건 좋다고 동의했다.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 책을 쓸 1979년 당시의 양화진 외인묘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폐허였고, 흉터처럼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곳이었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땅이었다. 더욱이 서울시 당국은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서 이 묘지를 다른 데로 옮기려 했다.

그러했던 땅이 오늘에 와서는 천주교의 절두산 성지와 양화진 묘역 사이를 오갈 수 있게 이으면서 그 일대가 공원화되고 모두 성지 순례지로 변했다. 양화진 외인묘지가 이처럼 변할 줄이야 꿈엔들 예측이나 했겠는가! 참으로 하느님의 섭리는 놀랍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자료 2005.A.014 전택부, '개정판을 내며', 《양화진 선교사 열전》, p.5, (2005.9)

- 전택부 선생은 "이 책을 쓸 당시의 양화진외인묘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폐허였고, 흉터처럼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곳이었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홍성사가 이 책의 개정판을 낸다고 하기에 나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진작부터 개정판이 나왔으면 했던 것이 사실이다. 초판이 나온 지 어느덧 20여 성상이 흘렀다. 본디 이 책은 주간신문에 내었던 연재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므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데도 있고, 더욱이 정부 당국이 이 묘지를 파헤쳐 다른 데로 옮긴다는 바람에 화가 나서 갑자기 쓴 것인 만큼 미흡한 점도 많다고 느껴 왔기 때문이다.

초판이 나온 뒤 민족의 은인 두 분이 이 묘지에 더 묻히게 되었다. 한 분은 언더우드 1세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언더우드 3세 장로님이다. 제1세는 미국 고향에 묻혔다가 1999년 5월 20일에 양화진으로 이장되었고, 제3세는 2004년 1월 15일에 작고하여 여기에 묻히게 되었다.

그리고 초판이 나올 때에는 세 분 어른들이 추천사를 써 주셨다. 한경직 목사님과 김재준 목사님과 언더우드 3세 장로님이 쓰셨는데, 그분들이 다 작고하셨으므로 새로 추천사를 써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하고 싶다. 이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외인묘지 경내에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을 세우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제한 외국인 성도들은 이곳저곳으로 떠돌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니, 민족의 은인들의 은혜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우리 대신 어느 정도 보답을 했는가 싶어 감사하는 바이다.

또한 100주년기념사업협회의회는 인천 부등가에 '선교100주년기념
탑'을 세우기도 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목사와 아
펜젤러 목사가 함께 상륙한 그 자리에 기념탑을 세웠는데, 그 역시 성역
화가 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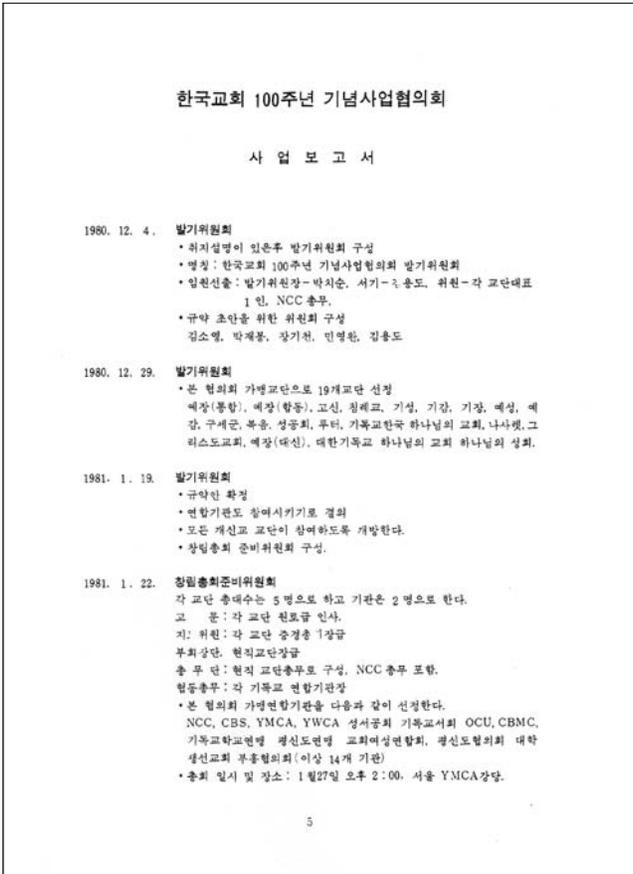
끝으로 이 책을 개정판으로 내어 주신 홍성사 정애주 사장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 믿음의 글들은 돈만 있으면 출판되는 것이 아니다.
투철한 소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나는
홍성사의 무궁한 발전을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을 위해
수고하신 편집부의 옥명호 님, 한수경 님, 그 밖의 여러 직원들에게 감
사를 드린다.

2005년 9월

권행우

〈100주년협의회 출범 관련 자료〉

100주년협의회 발족을 위한 최초 모임은 1980년 12월4일, YMCA자원방 에서 11개 교단 지도급 인사와 NCC 총무가 회합하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 사업협의회 발기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치순 목사, 서기에 김용도 목사, 규약초안위원에 민영완, 박재봉, 장기천, 김용도, 김소영 목사를 선임했다. 협의회 제2회 총회(1982.01.26)에서 20개 교단, 20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재에 한경직 목사를 선임하고, 강원용 목사 등 6명을 회장단, 강원희 목사 등 18명을 부회장단으로 선출하고 김소영 목사를 총무로 선출했으며, 1982년 3월 20일, 3차 실행위원회에서 20개 교단 26개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범교단적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이후 100주년협의회는 한경직 목사님의 지도와 각 교단을 대표한 6명의 회장단의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 자료 1982.B.001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2차총회 회의자료(1982.1.26) (사업보고서/창립총회록)

창립총회

1981. 1. 27. 서울 YMCA 강당

사회: 박치순 발기위원장.

부예배

말씀-김지길 감독 기도-김주오 목사

축도-강신정 목사 찬송-217장

부총회(결의사항)

1. 예장 호헌측을 추가하여 20개교단이 되다.
2. 규약안 축소 심의후 원안대로 받기로 함.
3. 임원선거는 7명의 전횡위원을 선정하여 위임하다.

(전횡위원: 김지길, 신신목, 박재봉, 김용도, 김진환, 김소영, 민영환)

임원명단

회장: 박치순

부회장: 이영수, 강신정, 오경린, 김주오, 정태진, 조명록, 이장우, 신신목, 김용도,
유홍목, 한영철, 김순배, 이천환, 조용술, 최윤진, 김희택, 박기서, 지원상,
안태민, 강원용.

총무단: 김소영, 이익호, 정봉조, 민영환, 김준영, 이봉성, 박재봉, 김진환

서기: 김용도 부서기: 함명덕

회계: 오건 부회계: 유상열

감사: 장석인, 이창로

사업계획 및 기타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1981. 2. 20. 임원회

1. 실행위원회 구성(임원과 기관대표들로 위원 선정)

1. 뉴욕 전도대회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3. 100주년 대성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안을 토의하고 대성회
측 대표(신현균 목사)와 협상하여 결정키로 하다.

(협상위원: 오경린, 강신정, 김희택, 조명록, 민영환 이상 5명)

4. 통일교의 개신교 침투에 대한 대책을 총무단에게 맡겨 개신교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하다.

5. 본 회 업무에 필요한 사무비는 우선 각 교단 10만원씩 부담금을
걸기로 하다.

1981. 2. 21. 총무단 회의

1. 사무 총무에 김소영목사 선정

2. 뉴욕 전도집회에 각교단 총무들이 대표를 선정키로 하다.

3. 분과위원 조직문제를 김소영, 박재봉, 김진환 이상 3인에게 위
임키로 하다.

〈100주년협의회의 재단법인 발족 관련 자료〉

협의회 제3차 총회(1983.01.31)에서 17개 교단, 17개 기관의 총대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설립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 예정통합교단에서는 전체 101명 총대 중 8명이 참석했으며, 당일 결의는 참석 총대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후 협의회는 13차, 14차 실행위원회에서 정관 및 초대 임원진 구성을 결의했으며, 1984년 11월23일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초대 임원은 이사에 한경직, 강원용, 박치순, 서병주, 이영수, 정진경, 지원상, 강병훈, 김용도, 신신목, 강영백, 정이숙, 박순양, 최창근, 배태준, 감사에 양광석, 김경래, 김석태 등이 선임됐고, 이어 열린 협의회 1차 이사회에서 한경직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제3차총회 기독교참석자명단

(교 단)

구석군 대한본영					
광광용					
기독교 대한감리회					
오경민 나사렛 김용복 나원용 이종수 김지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진경 김희백 이동성 안장현					
기독교 대한하나님교회					
박광수 문경영 김진환 박정근 최유림 강순필					
기독교 한국루터교회					
지원상 김희철					
기독교 한국침례회					
공원피 이상보 김용도 지 두 김광수					
기독교 한국하나님교회					
오 세 은 광광산 한영길 김희창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교회					
김영백 백완보 우동진 이오경 정일영					
대한기독교 하나님교회					
윤홍목 오 태 용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서완선 민영환					
대한예수교장로회(덕신)					
김세창 광만재 이병철 이장우 이무용 전상용 이근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박치순 이희호 림인식 이창로 임 욱 김 희 규 전제성 최창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건중 이영수 장성길 한성지 박승만 오석용 박태준 정병환					
최 준					

● 자료 1983.B.002 협의회, 3차총회 회의자료(1983.1.31), 교단별 총대 참석자 명단
- 재단법인 발족을 결의한 3차 총회에는 17개 교단, 17개 기관에서 모두 101명의 총대가 참석했는데 예정통합교단에서는 박치순, 이희호, 림인식, 이창로, 임욱, 공덕규, 전제성, 최창근 등 8명이 총대로 참석해 100주년협의회의 재단법인 출범에 동의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포럼)

장석인 이광일 고희이

예수교 대한감리회

신신목

한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

함명덕 김국상 이부의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봉양 송상규 주재숙 고민영 정규택 조규향 김상근

오건 오병직 (기 관)

교회음악협회

구두희 김홍경

교회여성연합회

이문우

국동방송·아세아방송

양영민

기독교연인연합회

손영수

기독교중앙방송

유우준

기독교화교연맹

이상모 이동욱

대한기독교고용협회

홍철화

대한기독교서회

유심만

신학대학협의회

박봉배

대한 YWCA 연합회

황해숙

크리스찬문학가협회

박영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소영

한국매스컴선교회

김경택 박영덕

한국부흥협의회

권동현 이호문

한국외향선교회

최기만 이동일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강원용 조양록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이익모 윤영희

17 고단 77명

17 기관 24명

계 101명



제3차 정기총회 증보록

의 비 1983년 1월 31일 제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 제3차 정기
총회가 경동그라운드에서 지진건축사회의 사회부 다음과 같이 행사 드니
다.

- | | | |
|---------|-----------------------|--------|
| 1. 목 도 | ----- | 다 광 이 |
| 2. 찬 송 | --- "시온 성곽 같은 교회" --- | " |
| 3. 경 도 | ----- | 윤모준 목사 |
| 4. 성경봉독 | ----- 영 6:18 ----- | 사 회 장 |
| 5. 목 송 | ----- | 박경순 선생 |
| 6. 말 씀 | ----- | 오경진 회장 |
| 7. 찬 송 | --- "성구 성자와 성령" --- | 다 광 이 |
| 8. 축 도 | ----- | 한경진 총제 |

회의 진행 동일 14시 30분 동 장소에서 임수회장의 사회로 다음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원정리 서기 김용도 총무가 동록민 회원을 보고 하니, 17교 단과 17개 관역서 총 167명 참석 하였다.

주회선언 회장이 주회 선언하였다

사업보고 최근 식부총금의 10%년도 사업보고를 본지와 같이 받기로 결정하였다.

감사보고 감사 이광보 회장의 1982년도 재정감사 결과를 본지와 같이 받기로 결정
하였다.

결산보고 1. 세무감사보고 1982년도 결산보고 총액 57,584,497원 본지와 같이 받
기로 결정하였다.

결의건 선정위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를 설립키로 하고 실행위원
회에 전권위임하여 처리키로 결정하였다.
이 결의

예산심의 1983년도 예산(총액 432,000,000)은 임수회장이서 통과되었으므로 별
각양 같이 식민으로 받기로 결정하였다.

주회선언 동일 14시 30분 "회차"로 각교하고 조형록 목사학 기도후 회장이 결
지를 선언하였다.

1983년 1월 31일

회 장 이 임 수
서 기 김 용 도



●●
자료 1983.B.003 협의회, 제3회 정기총회 회의록(1983.1.31)
-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회를 설립키로 하고 실행위원회에 전권위임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제 13 차 실행위원회 회록

일	1984년 6월 5일 15시 학교 기부금 100주년 기념 사업회의회 제 13차 실행	
장	위원회가 영남대학교에서 신민주회장의 사회본 다목적관이 이복도리다.	
1. 부	도	다
2. 차	장	"부
3. 기	도	신
4. 상	경	민
5. 말	씀	"
6. 기	도	"

- 회의진행: 당일 15시 30분 영장소에서 다목적관이 회의를 진행하다.
- 위원출석: 서기 김영도 등 부가 회원출석 25명 참석하다.
- 기획산언: 의장이 기획산언하다
- 전회부제결: 서기가 전회부제 안부하니 그 때로 제결기로 가결하다.
- 회계보고: 회계오건 장본회 1984년도 5월말 회계보고를 필자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 건의의결: 1. 제 3차 총회에서 위임한 재단법인 설립건은 정관 기초와 초대 임원 추천을 회장단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이 하 생략
- 폐회산언: 당일 16시 30분 폐회하기로 가결하고 주기도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1984년 6월 5일

의 장 서 명 주
서 기 김 영 도

●●●
 자료 1984.B.005 협의회, 제13차 실행위원회록(1984.6.5)
 - 1. 제3차 총회에서 위임한 재단법인 설립 건은 정관 기초와 초대 임원 추천을 회장단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제 14 차 실행위원회 회의록

예 배 1984년 9월 14일 14시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 협의회 제 14차 실행위원회가 기독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원상회장의 사회로 다음과 같이 에비드했다.

- 1. 산 송 _____ 245장 _____ 다 팔 이
- 2. 기 도 _____ 신신복 할 무
- 3. 삼경품목 _____ 사사기 2:1-5 _____ 이영수 회장
- 4. 말 씀 _____ " _____
- 5. 기 도 _____ " _____

회 의 동임 14시 30분 동강소에서 다음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다.

회원점명 서기가 회원점명하니 27명 참석하다.

격회선언 회장이 지회 선언하다.

전회록제본 서기가 전회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제본하기로 가결하다.

- 보 고 건
- 1. 선교대회 남북보고와 선교대회 회계보고는 다음삼경위원회에 양전보고로 받기로 하다.
 - 2. 회계보고 양도회 협의회 회계보고는 복지과장이 받기로 가결 하다.
 - 3. 기획추진위원장 강원용 부사의 기획추진위원회 구두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결 의 건 1. 제 13차 실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재단법인 정관 초안을 회장단에서 복지과장이 제출하니 심의한 결과 기수표 결하니 그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2. 제 13차 실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재단법인 초대 임원을 회장단에서 다음과 같이 추천하니 그대로 승인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이 사 4년조 한경직 강원용 박지훈 서병주 이영수
전진경 지원삼 강병훈
- 이 사 2년조 김용도 신신복 김영배 장이숙 박순양
최장근 박혁은
- 관 사 2년조 양광석 김영리 김성택
- 의 학 생 방

제회선언 동임 16시 5분 제회하기로 가결하고 집권경로사와 기도부 육장이 제회를 선언하다.

1984년 9월 14일

의 장 지 원 상

서 기 김 용 도

●●●●

자료 1984.B.006 협의회, 제14차 실행위원회록(1984.9.14)

- 1. 제13차 실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재단법인 정관 초안을 회장단에서 제출하니 심의한 결과 그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2. 제13차 실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재단법인 초대 임원을 회장단에서 다음과 같이 추천하니 그대로 승인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대한민민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협회 제1차 이사회의

일시: 1984. 9. 14 16:10-16:40

장소: 기독교회관 소회의실

사회: 김원용 회장

회의일 - 1984년 9월 14일 16시 10분 대한민민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협회 제1차 이사회가 기독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원용 회장의 사회로 개최함.

의사록, 임시서기 산출 - 임시회장의 결정을 회의를 임시서기역 산출로 등록을 산출함.

회원참관 - 서기가 회원 참관함.

출석이사: 김원용 회장, 이영수 임신준 김병문 김용도
신선복 김광택 임지숙 박순달 최장근 최희만

결사: 김광성 김광복 김성익

회원이사: 한경락

비석: 김계실

이상 16명 참석함.

회의순서 - 회장이 개최함.

경과보고 - 김병문 사무총장의 구두로 발전상황이 담긴 경과보고는 원기로 가결함.

결의건

1. 이사장,이사회 서기 산출
현결심 통사를 이사장으로 임명수 목사를 이사회 서기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 가결함.
2. 제1차사무국장 선임
현결심 김병문을 제1차사무국장으로 선임하기로 가결함.
3. 기본재산수용
절차유관사항을 포함한 각종 직산을 본지민민인 기본재산으로 받기로 가결함.
재산의 표시
경기도 용인군 처인시 주저리 산 79번지 1호 면적 330445㎡
등 소 산 64번지 1호 면적 200136㎡
4. 이회신안 - 동월 16시 40분 채택하기로 가결하고 주경도로 회장이 채택을 선언함.

1984년 9월 14일

참석	이사장	간	결	결
	김 원 용			
	" 박 순 달			
	" 이 영 수			
	" 김 신 준			
	" 김 병 문			
	" 김 용 도			
	" 신 선 복			
	" 김 광 택			
	" 임 지 숙			
	" 박 순 달			
	" 최 장 근			
	" 최 희 만			

●●●●●
 자료 1984.B.007 (제) 한국기독교 100주년협의회 제1차 이사회의
 록(1984.9.14)
 - 한경직 목사를 이사장으로, 이영수 목사를 이사회 서기로 선출하
 기로 전원 일치 가결하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증여 과정 관련 자료)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선교사들이 묻힌 양화진외국인묘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하기로 결의하고 증여증서를 작성했다. 이어 경성구미인묘지회와 100주년협의회는 재판절차를 거쳐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의 소유권을 100주년협의회 소유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예정통합교단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회의록에 있는 3항의 조건을 근거로 조건부 증여, 혹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양측이 이에 대해 합의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1986년 서울시가 양화진선교사묘원 부지 중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 시 대응하기 위해 100주년협의회가 실질적 토지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유권해석)에 의해 100주년협의회의 소유권은 보다 확고해졌다.

경성구미인묘지회 위원회의록	
1. 일 시 :	1985. 2. 22. 오후 2: 00
2.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404호
3. 참석자 :	위원장 원 일 한 위원 원 동 한 위원 사 보 님
4. 개 의 :	위원장이 기도한 후 임시위원장이 개회평을 선언하다.
5. 보 고 :	위원장이 그동안 본 경성구미인묘지회에서 한정동 소재 본회 소유 묘지의 소유권 취득과 기념관의 건축을 위하여 다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외국인 묘지법의 적용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모든 계획과 사업을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의에 맡겨 진행하여 온 경과를 보고하다.
6. 결 의 사항 :	본회 소유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당 부동산 전부를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회의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증여할 것을 원동한위원 등회와 사보님위원의 제청으로 가결하다.
조 건	
1.	별지 목록 부동산 전부를 외국인묘지공원으로 지정할아. 외국인묘지회 영구히 관리보존한다.

● 자료 1985.D.002 경성구미인묘지회 회의록(양화진묘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 결의/1985.2.22)

Handwritten signatures and scribbles at the top of the page.

2. 모지공원내에 선교기념관을 건립하여 이 모역
에 참전이들의 공적을 이 땅에 기리게 한다.

3. 공원 모역의 장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의
위원을 자승하여 수증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위 원 원 일 한

위 원 사 모 덕

위 원 겐 디 스

6. 제 목 : 안건이 다하므로 폐회하기로 가결되어 사모덕의원
으로 기도하게 한 후 4:00 에 폐회하다.

위 원 장 원 일 한

위 원 원 두 한

위 원 사 모 덕



증 여 증 서

증여목적물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상기 증여 목적물은 본 회의 소유로서 1890년 7월 부터
 외국인 선교사의 토지로 사용 관리해 온 바 금번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에 이 증여 목적물 전부
 를 증여함.

1985 년 3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
 경성구미인모지회

대표위원장 *John H. Johnson* 일

*Free Donation of Cemetery Park to 100th Anniversary Committee
 1985.4*

●●
 자료 1985.D.003 경성구미인모지회 토지 증여증서(1985.3.4)

1985.5.20

총	제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	사	계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5.8. 판결선고 ^{주사}
1985.5.8. 원본영수 (2)

제 8 부

판 결

사 건 85 가합 153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적단법인 한국기록고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의 46

대표자 이사 안 경 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세 중

피 고 경성구미인 모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4

대표대리인 변호사 서울 광화문 경성

대표자 위원장 원 리철 안



변론종결 1985. 5. 1.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법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3. 4.

●●●

자료 1985.A.005 서울지법, 양화진 토지소유권에 대한 판결문(1985.5.8)

중의권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부사, 피고는 1985. 3. 4. 피고 소유의
법적부속기초 부동산은 원고에게 양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
고, 피고는 영수증상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한 소관을 원고로 이사한 원고의
입에 충실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증거서면도 적은 바에 아니하여 원고의 주
장사실을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이를 채택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법적부속기초 부동산에 관하여 1985. 3. 4.
중의권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
행불구함을 원고의 이사한 청구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소자
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5. 8.

법원장 부 사 이

이영호 (인)

판 사 이

이재환 (인)

판 사 성

성기분 (인)

홈 · 한국어 · 사이트맵 · ENGLISH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 지식창고 > 월간법제

월간법제

! 매일 법제처에서 발행되는 월간법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 2건 1990년 6월 검색 전체 검색

지식창고
INFORMATION MOLES

- 법률교육안내
- 법제지식
- 남북법제 연구자료
- 정책연구 용역자료
- 월간법제
- 도서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50년사

JUNE 1990.06

분류 법령해석질의응답(지자 : 편집실) 첨부 조회수 0

외국인요지용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질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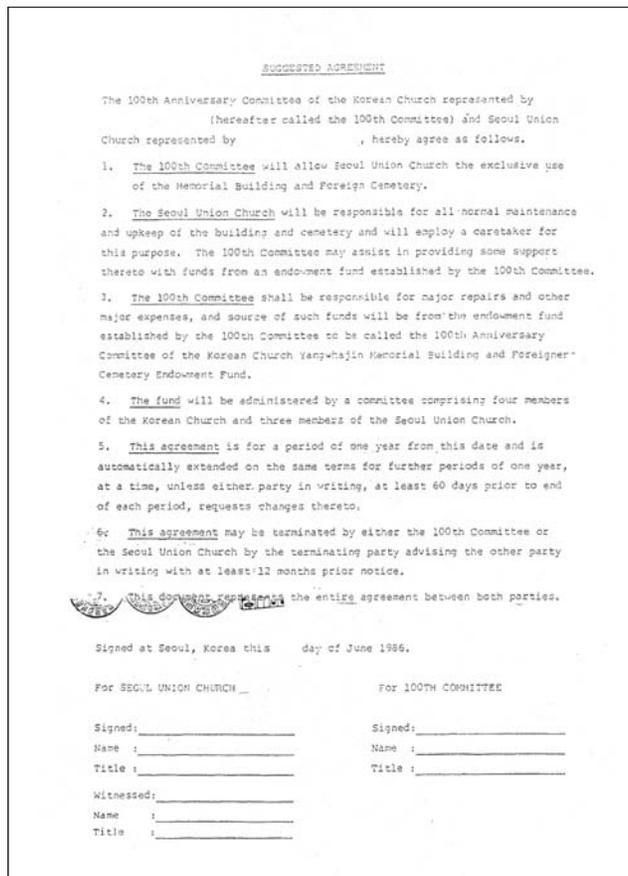
○ 외국인요지용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질의 등
 ○ 외국인요지용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질의
 ㄱ 서울특별시 건설 30241-764(86.5.10)질의 ㄱ
 ㄴ 법 제 71호 02102-30(86.7.14)회신 ㄴ
 [질의요지]
 고통항제가 당시 한국에 파견되어 선교활동을 하던 외국선교사의 요지로 사용하도록 1890. 7 경성구 미인요지회에 하사한 미포구 합경동 소재의 외국인요지용 토지는 1913년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동요지회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외국인토지법(제정 1961.9.16 법률제 718호, 개정 1968.7.3 법률 제 2019호)부칙에 의한 소정의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7년이 경과한 1985.3.4 이 사안의 요지용토지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증여함으로써 1986.6.17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회가 이 사안의 요지용토지중 도로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동 기념사업회를 실체적 관리관계에 부합하는 정당한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견 및 이유]
 가. 의견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회는 경성구미인요지회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인요지용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나. 이유
 외국인토지법 제5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토지에 관한 권리(지당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당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3항은 "점유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는 제5조의2 제2항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결국 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법 제5조의3 참조), 동법 제7조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 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항유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는 "정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그 토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경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토지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원 소유자의 소유권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대판 81.2.10. 80다1517)도 같은 취지이므로 동 요지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성구미인요지회가 그 토지를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회에 증여한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요지용 토지를 증여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회는 증여받은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임.
 외국인토지법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부칙 제2항·제3항

●●●●

자료 1986.A.002 법제처, 양화진요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1986.5)
 - 법제처는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경성구미인요지회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인요지용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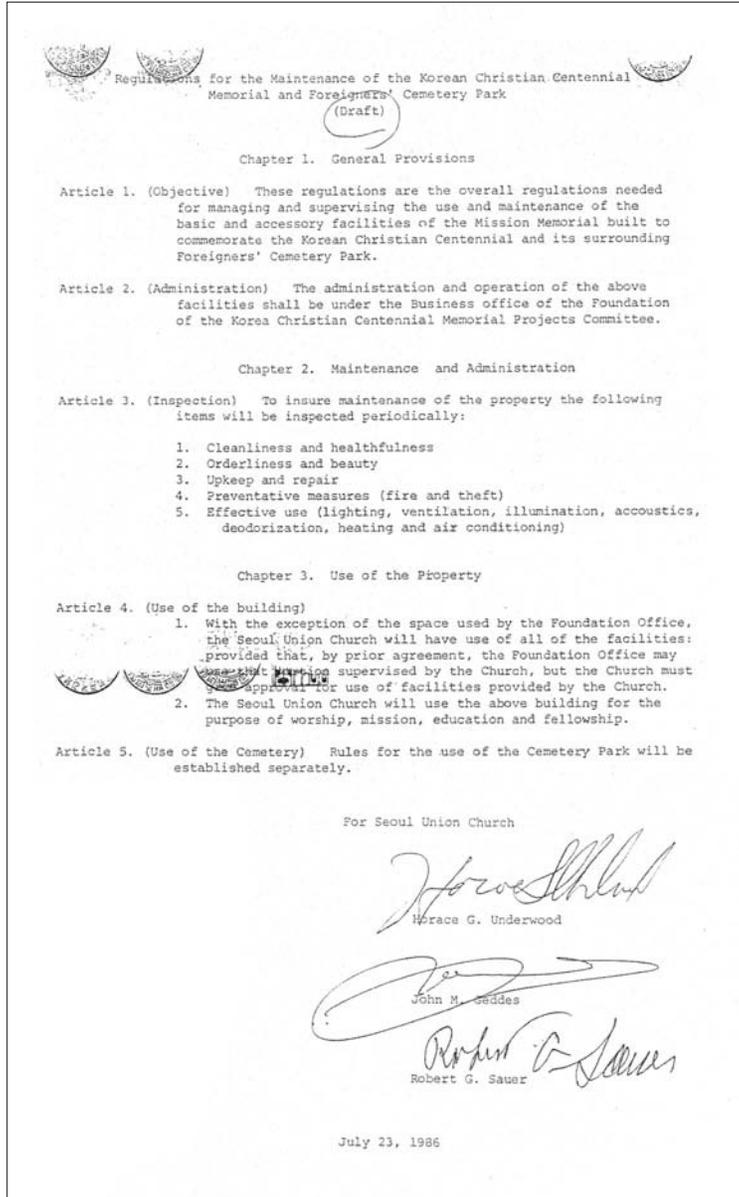
〈선교기념관의 사용권에 관한 자료〉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을 자신들을 위해 지은 건물로 영구적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교기념관 준공을 앞두고 주고받은 문서에 의해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즉, 협약서와 선교기념관 관리규정 초안을 보면 선교기념관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100주년협의회에 있고,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을 예배처소로 사용하되 양화진묘원을 관리하며, 1년마다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전제에서 협약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기념관과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권과 사용권이 유니온교회에 영구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협의회 창립 당시부터 한경직 목사와 협의회를 이끌어온 정진경 목사, 강병훈 목사 등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 자료 1986.D.003 'Suggested Agreement'(1986.6)

– 이 제안서 5조에는 '협약기간이 1년이며, 매년 연장할 수 있으며', 6조에는 '1년 전 서면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자료 1986.D.005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and Foreigners' Cemetery Park(draft)'(1986.7.23)

- 규정 초안 2조에 '선교기념관과 묘지 관리는 협의회가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 확인서

우리들은 1985년 당시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기념사업회) 이사 내지 사무국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이하 선교기념관) 건립 당시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급의 서울유니온교회(이하 유니온교회)가 위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고소사건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당시 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여, 차체에 남아 있는 기록과 당시 기억을 바탕으로 사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양화진의국인선교사묘원(이하 양화진묘원)은 1890년 헤론 선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외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당시 미, 영, 러, 독, 불 5개국 공사를 중심으로 조직한 경성구미인묘지회(이하 구미인회)가 관리하다가, 태평양 전쟁이 발발되면서 외국의 선교사나 공관이 추방됨에 따라 구미인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미국 민간고문단 자격으로 입국한 고 언더우드 2세가 위 외교관 중심의 구미인회와는 무관하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1946년 새로운 구미인회를 조직한 후, 외국인들을 매장하고 묘지를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양화진묘원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2. 1979년에 이르러 양화진묘원은 지하철 공사 및 도로 건설 등에 따라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고 원일한 박사(언더우드 3세)는 그제야 구미인회의 정관을 만드는 등 구미인회를 재정비하고 그의 선대를 이어 구미인회의 대표가 되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양화진묘원을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962년에 제정되고 1967년에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사실상 허가되지 않아 구미인회가 양화진묘원의 토지대장상 명의자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첨 1-소유불가통보 내부부장관 적인)
3. 구미인회는 양화진묘원의 영구보존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 기념사업회의 초대 이사장인 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청원했습니다.
4. 한국기독교는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인 1984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범 교파적인 기념사업회를 결성하여, 당시 한국개신교의 원로 지도자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을 총재로 모시고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한말 근대 조선에 끼친 외국선교사들의 영향과 행적에 대한 보존의 취지에서 기념사업회는 양화진묘원의 가치를 백방으로 알리고 탄원했습니다.

- 1 -

●●●
자료 1986.B.017 사실확인서,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2008.10.10)

그러하여 양화진묘역은 존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별첨 2- <<양화진묘역>> 초판 서문/기념사업회 사료분과 위원장 겸 이사 전택부 저)

5. 기념사업회는 한국 기독교선교 1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선교기념탑 건립(인천), 순교자기념관 건립(용인), 선교기념관 건립(서울, 양화진), 병원설립(실로암안과병원), 100주년 선교대회(여의도) 등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양화진 외국인묘지는 유서 깊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황폐한 쓰레기 더미에 지나지 않아,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고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한 교계 지도자들은 양화진을 한국기독교의 성지로 만들어 이 땅에 묻히신 외국인 선교사들을 후대에 기념해야 한다는 뜻을 세우고 그곳에 "선교기념관"을 짓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별첨 3-1982년 3월 20일 세운 기념사업회 실행위원회 시행계획 제 2항, 별첨 4-1982년 10월에 발행한 기념사업회 부로서, 별첨 5-1984년 1월 27일 제 4차 정기총회 84년도 사업계획안)

그러나 당시 그 토지는 합법적으로 등재된 소유자가 없었으므로 건축에 어려움이 있는 터에, 서울지하철공사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 때문에 백방으로 토지소유를 합법화 하려던 당시 구미인회(대표 고 원일한 박사)가 외국단체로서의 토지 소유권 보전등기가 무산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증여형식으로(별첨 6-1985년 3월 2일 이사회 서면 결의서, 별첨 6-1/1985년 3월 2일 증여형식 토지소유권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므로써 (별첨 7-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 소유권 이전 등기, 1985년 5월 8일)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6. 양화진묘역의 유지 존속과 선교사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선교기념관 건립은 고 한경직 목사님의 간청을 따라 재계 인사 5인(정주영, 김우중, 박용학, 장치혁, 최태섭)등이 찬조한 7억 5천만(85년 당시 금액)원을 기반으로 확공하게 됩니다.
7.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들 중 가장 먼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첫 발을 디딘 1885년을 선교 원년으로 하는 '85년 원년설'과 황해도 소래에 자생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1883년을 기념하는 '83년 원년설'의 중간 해인 1884년을 한국 기독교 선교 원년으로 말합니다. 그 해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 곧 1984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0년에 발족한 기념사업회는 20개 교단(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과 26개 기독교단체(YMCA, YWCA, CBS 등)가 연합한 전무후무한 기독교인들의 협의체입니다. 이 기념사업회의 초대 총재가 한경직 목사님(1992년 템플턴상 수상자)이십니다. 기념사업회가 구상하고 추진한 34개의 사업은 방대하여 동원된 집행부 인원만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8. 그 방대한 사업 중 하나인 양화진묘원의 경화사업 및 선교기념관 건립은 개신교 전 교파는 물론 진보, 보수 계파를 막론하고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결단한 사업이었습니다. 비록 이 사업은 구미인회가 자구책으로 요청한 양화진묘원의 유지와 보존에서 출발하였지만, 기념사업회의 선교기념관 건립계획은 그들이 생각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양화진묘원을 대한민국 기독교의 성지로 인식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소유권 취득을 위해 증여의 형식을 빈 것은 오로지 적법한 방법으로 구미인회에 대한 절차상의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기념사업회가 무슨 재산상의 이득을 보기 위하여 이면으로 대가를 보상하면서까지 그 막중한 부담을 떠맡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양화진묘원의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고 묘원이 이장되거나 철거된다 하더라도 기념사업회는 그 토지를 소유할 이유가 전혀 없는 협의체이지만, 오로지 양화진묘원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소명감으로 이 사업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사랑을 실천한 구한말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에 빛진 자들이라는 인식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9. 당시 양화진묘원은 명목상 증여일 뿐, 실제로는 증여라기보다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교기념관을 건립한 것이 구미인회의 재산상 증여에 보상기 역할이라는 증여는, 유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화진묘원을 동기하기 위해 양화진 차원만 구미인회에 기념사업회가 증여를 대가로 약속한 시설물이라는 일부 외국인들의 해석은 우리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해석입니다. 선교기념관은 양화진묘원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뜻과 행적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일 따름입니다. (별첨 8-양화진사비/경연회 쪽)
- 양화진묘원은 묘지로 사용되는 한 아무 재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묘지를 관리, 유지하는 것이 구미인회에는 큰 부담이었고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구미인회는 서울저하철공사로 인한 토지수용에서 경험했듯이 양화진 외국인묘지를 이전하려는 각계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이 곳 묘지를 영구히 지켜 줄 것을 희망하여 기념사업회에 이 묘지를 재판의 절차를 거쳐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10. 기념사업회는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묘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한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하여 재판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묘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당시 구미인회는 한국교회가 양화진의 짐을 떠맡고, 선교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선교기념관 까지 건축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념사업회에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11. 선교기념관의 설계개요는 1. 선교기념 자료전시, 2. 기념사업회 사무실, 3. 중소회의실, 4. 대강당, 5. 식당, 친교실 등이었는데, 대강당은 선교사추모예배 공간 등을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당시 예배처소가 없어 여러 시설을 빌려 쓰던 주한외국인들의 예배처소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별첨 9-1986년 7월에 작성된 '관리규정' 초안 참조)

선교기념관 건립계획이 실현되어 준공식(86년 10월 10일)을 계획 할 즈음인 86년 8월경 고 원일한 박사가 고 한경직 당시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찾아와 주한 외국인 교회인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 전체를 교회용도로 쓰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집무실과 협의회 사무실을 선교기념관 1층에 두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이사 갈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원일한 박사가 간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부 이사장이셨던 고 강원용 목사님을 위시한 많은 이사님들은 선교기념관을 원래의 건립 계획대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제 3자인 서울유니온교회가 단독으로 사용하면 훗날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며 반대하였으나, 고 한경직 목사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설득으로 기념사업회는 선교기념관으로 자체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유보하고, 잠정적으로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 전체를 예배처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고 원일한 박사님 등 일부 외국인들이 유니온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이었지, 유니온교회에 영구적으로 선교기념관을 활용하게 한다든가 묘지의 관리를 영구적으로 유니온교회에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역사의 가치를 의면하고 한국교회의 뜻과 무관한 사용을 허가함도 아니었습니다.

12. 그러나 그 후, 이에 대한 기념사업회와 구미인회의 입장에 큰 간극이 확인됩니다. 선교기념관 사용을 유니온교회에 허락하자 원일한 박사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그들의 자치적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보내 왔습니다. (별첨 10-1986년 6월 유니온교회가 제안한 합의문) 그런데 그 요청의 수위는, 양화진묘역 존폐의 위기를 염려하여 기념사업회에 탄원하던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지킬 수 없었던 한국 개신교의 성지를 역사적 소명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기념사업회의 순수한 뜻과 노력이, 그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빛진 자를 자처한 기념사업회의 섬김의 태도가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아닐까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는 이 서면요구에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화진묘역에 대한, 또 선교기념관에 대한 두 단체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기념사업회는 그들의 선조들에게 받은 은혜를 후손에게 갚아야 할 도리라 생각한 반면, 구미인회는 그것을 그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3. 기념사업회가 양화진을 성역화한 이후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그들 선조에게 감사하는 대한민국 교회의 뜻을 담아 이제부터는 성역을 성역답게 관리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기념사업회의 대의와는 달리 양화진묘원에는, 시신의 임의 불법 매장, 매장지의 불법매매(피터 언더우드의 예약묘지 포함한 37 건 등), 살아있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석 등 남발되는 기념물 설치, 원사료의 이동(묘비의 이동), 양화진을 영리사업에 이용하는 단체들이 단체관람객들을 대거 몰고 묘역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가폰까지 사용하여 신성한 묘역을 장터로 만들어 놓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구미인화와 유니온교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14. 사실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을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은 지금의 유니온교회는 예전의 유니온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처음 유니온교회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표하는 교회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하여 불과 몇 십 명만이 출석하는, 그것도 외국인의 경우 특정국가에만 편향 된 지금의 유니온교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수십만 외국인의 대표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에만도 수십개의 외국인교회가 있습니다. 20년 전, 기념사업회가 유니온교회로 하여금 선교기념관을, 사후토록 할 때에만 해도,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유손들이 교회를 운영해오던 등, 양화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니온교회의 인적 구성원은, 양화진에 묻힌 분들과 극적은 같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이름만 유니온교회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양화진을 계속 유니온교회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사성을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양화진의 법적 소유자인 한국교회와 한국인이 한국 최고의 성지인 양화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이고도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빛진 대상은 이 땅을 사랑하시다가 양화진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이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한국에 나와 있는 현재의 외국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15. 이후, 기념사업회의 세 가지 큰 사업, 즉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용인순교자기념관 그리고 인천의 선교기념탑만을 남기고 사업의 대부분을 개인과 단체에 이양하였고(인천선교기념탑은 후에 인천시에 기부체납), 2000년 한경직 목사님께서 소천 하시자 당시 부이사장이신 강원용 목사님(경동교회 원로목사)께서 이사장으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정신을 승계하시게 되었습니다.

16. 기념사업회는 유니온교회에 양화진묘원과 선교기념관 관리를 위임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별첨 11-기념사업회 재정 보고서) 유니온교회의 규모나 재정 상태로는 양화진묘원과 선교기념관을 유지, 관리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유니온교회의 관리 부실을 인내심을 갖고 관망해 오다가,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처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의를 책임 있게 실천할 관리 주체를 세우기로 협의, 결정하여(별첨 12-기념사업회 2003 년 임시이사회회의록) 2005 년 7 월 100 주년기념교회(이하 기념교회)를 설립(별첨 13-창립예배 순서지)하고 양화진묘원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 기념교회에 위임하여(별첨 14-기념사업회 서신 05-015, 별첨 14-1/기념사업회 서신 05-017)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된 이재철 목사님이 2005 년 7 월 10 일 창립예배를 드릴 때, 취임사에서 '양화진의 묘지기' 가 되겠다고 밝힌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지인 양화진을 한국인이 관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양화진의 법적 소유자인 기념사업회가 양화진을 책임질 한국인교회를 세우기로 한 동기 또한 이것인 것입니다.

17. 양화진묘원은 한국 교회의 시발점이 되는 명실상부한 '성지' 입니다. 또 구한말 이 땅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양인들의 묘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근대역사의 보고(寶庫)인 이 묘원은, 허당하게 사라질 존재 위기에 자주 직면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한국전쟁 때는 한강변 최대 격전지였으며, 지하철공사로 인한 도로 변경 건설 계획에 포함되는가 하면, 무분별한 매장지 사용에 따라 민원을 유발한 것도 그 예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 가 이 묘원을 지키게 하여 오늘날까지 보존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현재의 법적 소유자인 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실천자로 초지일관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화진묘원을 재산상의 가치로만 판단하거나,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마치 사익을 위한 대상으로 해석하거나, 목적을 알 수 없는 본래의 시발점으로 여기는 항간의 분분한 주장에 대해 일일이 응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간섭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18. 결론적으로, 선교기념관은 양화진묘원을 영구히 보존하고, 양화진에 묻힌 외국선교사님들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교회와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선교국 자손들의 추모 예배 및 그에 따른 활용 공간으로 건립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1986 년 당시 선교기념관 헌당식 때 발표된 "헌전사" 를 인용합니다.

"우리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100 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기념관 건축과 외국인묘지공원 조성의 거룩하고도 거대한 일을 작정하고 건축위원으로 맡겨 주셨으므로 부르심에 감격하여 한국교회와 유자들이 기도와 정성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셨으므로 모든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이 선교기념관은 영원토록 주님의 것입니다. 본 건축위원회는 이 새로 지은 선교기념관 열쇠를 재단법인 책임자이신 이사장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심령을 구원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빕니다. 1986 년 10 월 10 " (별첨 15-헌전사 당시 사본-현재도 그 열쇠는 기념사업회 사무실에 보관중임)

이제 1980 년 초부터 위 기념사업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진행한 우리들이 80, 90 세를 넘어 100 세를 바라보면서, 당시 20 대 청년이었거나 더 어렸고 또 이곳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소수 외국인들이 왜곡된 시각과 무리한 해석으로 한국기독교, 100. 주년기념사업협의회의 사업을 마치 사사로운 이권이 있었던 사업으로 평가하며, 종착점에 기어오른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함을 보고 일일이 응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다가 진실이 호도됨을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사실 확인서를 역사 앞에 남기는 바입니다.

2008 년 10 월 10 일

정진경(목사, 한국기독교 100 주년기념사업회 이사장, 당시 이사)

강병훈(목사, 한국기독교 100 주년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당시 이사)

최창근(장로, 한국기독교 100 주년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당시 이사)

김경래(장로, 한국기독교 100 주년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당시 사무국장)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열악한 실상을 고발한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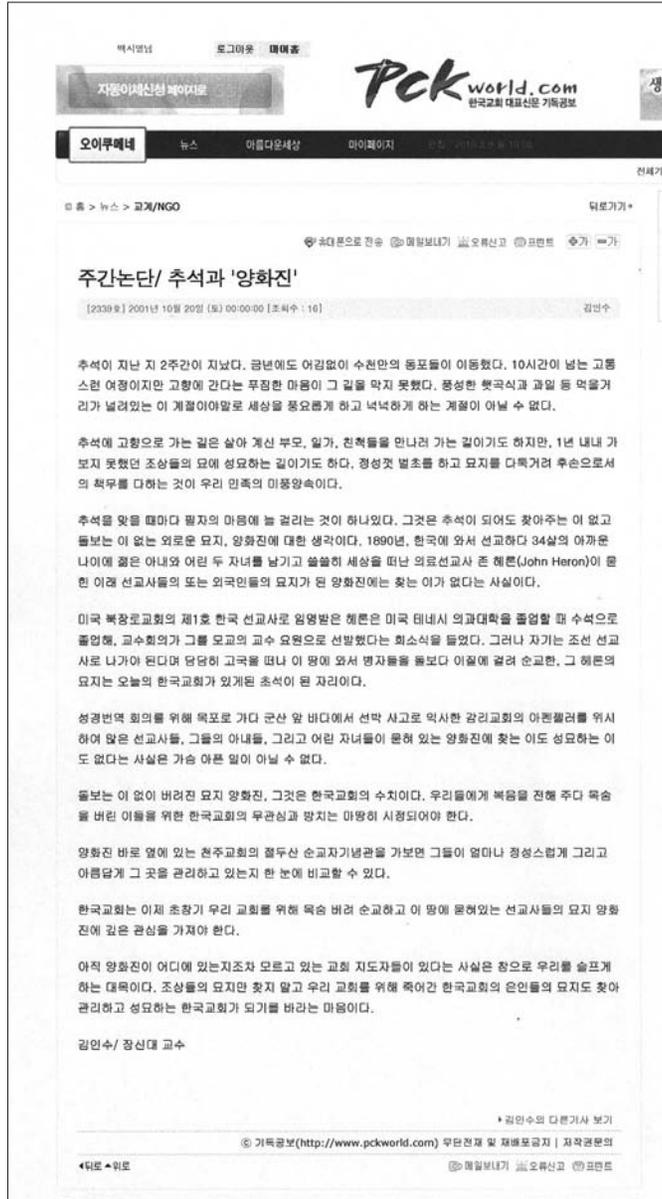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한 지 10여년이 흐른 이후 언론에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실태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 기독교 100년을 맞아 성지화를 추진했으나 유니온교회가 관리한 지 10년만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은 다시 잊힌 곳이 되고 말았다. 장신대 김인수 교수는 “돌보는 이 없이 버려진 묘지 양화진, 그것은 한국교회의 수치”라고 탄식하며,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다 목숨을 버린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관심과 방치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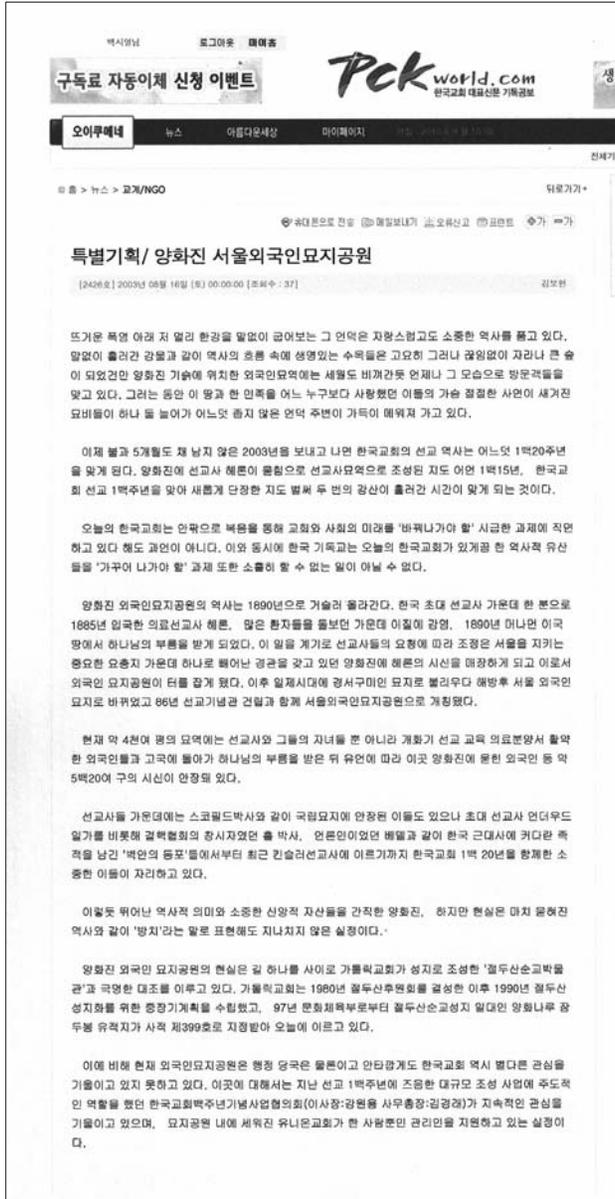
자료 1994.A.001 '선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 신문기사(1994.7.8)



●●
 자료 2001.A.001 김성순, <한국기독교보> '독자투고, 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2001.1.6)



● ● ●
 자료 2001.A.002 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독교보〉 주간논단(2001.10.20)



●●●●●
 2003.A.001.X 김보현, '특별기획.양화진 서울외국인요지공원', <한국기독교공보>
 (2003.8.16)

[백서열님](#) [로그아웃](#) [내어중](#)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이벤트 **PCKworld.com** 한국교회 대표신문 기독교보

[오이쿠메네](#) [뉴스](#) [이슈다움세상](#)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탈퇴](#)

[홈](#) > [뉴스](#) > [교계/NGO](#) [뒤로가기](#)

[☰](#) [☰](#) [☰](#) [☰](#) [☰](#) [☰](#) [☰](#) [☰](#) [☰](#) [☰](#)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426호] 2003년 08월 16일 (토) 00:00:00 [조회수 : 30] [김보현](#)

선교 1백20주년을 앞두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현장 가운데 하나인 양화진 선교사묘지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과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관련기사 9면>

한국교회가 선교 1백20주년을 맞이하며 기념관 건축과 선교대회 등을 주도했던 한국기독교1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회장:김삼한 사무총장:김경래)는 최근 선교 1백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망글까지 이 복음을'이라는 주제 아래 금년 말부터 오는 2005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 중에는 국내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념대회와 문화행사 신학공개강연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양화진 묘지부근에 '기독교선교문화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 지하2층지상 7층 연1천4백 평 규모로 약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 사업은 양화진 외국인묘지공원 주변 연장 공사와 문화재 등록 등과 함께 병행 추진됨으로 지난 1백주년 때 새롭게 조성된 양화진 묘역에 대한 후속 사업의 의미를 갖게 될 전망이다.

이 일을 위해 동 협의회는 각 교단과 교회협의회와 한기총 등 대표적인 연합기관들의 협력은 물론 마포구청 문화관광부 등의 협력을 요청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러한 기독교계 안의 노력과 함께 최근 국회 내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국회조찬기도회(회장:박명환) 측에서도 양화진 현지를 방문해 기독교의 소중한 유산인 양화진에 대한 재조명과 개발사업의 추진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장 박명환 의원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개화와 선진화를 위해 초석을 놓았던 이들이 모셔진 양화진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생명을 바쳐 이 땅을 사랑했던 이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물론이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1백16명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양화진 묘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는 물론 기독교인들도 이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여론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는 이미 2천년장로교대회 등을 추진하면서 기독교역사유적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순교유적지 등의 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회 순교자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해 온 바 있는데 실무자들에 따르면 참석자들 대부분도 양화진의 방치 현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9년 서울시가 지하철 건설을 위해 양화진 묘역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전력부장로의 '외인묘진'을 연재하며 양화진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 본보는 선교1백20주년을 앞두고 양화진에 대한 재조명과 성역화 사업등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 대한 보도는 물론 자체 기획을 준비 중에 있다.

김보현bhkim@kidokongbo.com

* 김보현의 다른기사 보기

© 기독교보(http://www.pckworld.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 > <위로 > [☰](#) [☰](#) [☰](#) [☰](#)

●●●●●
 자료 2003.A.002 김보현, <한국기독교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2003.8.16)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과정에 관한 자료〉

양화진선교사묘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관리의 소명을 감당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은 2003년 9월부터 본격화되었다. 폐허화 된 양화진에 대한 성도들의 탄식이 커감에 따라 협의회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을 추진했다.

200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03년 9월 30일(화) 낮 12시
2. 장 소 : 소퍼텔 엠베서더호텔 2층 회의실
3. 사 회 : 상임이사 강병훈 목사
4. 참석이사 : 강원용, 정진경, 강병훈, 이종윤, 김해철, 한명국, 최창근, 정이숙, 정현구, 이성희, 김삼환(대)
 권석이사 : 이철신, 김자연, 조영준
 배 석 : 김경래 사무총장
5. 에 배 : 강병훈 상임이사 사회로 일동 묵도후 관송가 347장을 제창하고 한명국 목사 기도후, 부이사장 정진경 목사가 하2:3절을 봉독한후 설교하고 이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친다.
6. 회 의 : 강병훈 상임이사의 사회로 성원이 됨을 확인후 개회를 선언하다.
 - 1) 보고 및 결의
 - (1) 제단의 당면과제(별칭)에 대하여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① 순교자기념관 진입로 보수
 - ② 전사공간 확장
 - ③ 건물외벽 페인트 개신
 - ④ 양화진 기념공원 조성(40억 보조금으로 마포시가 주관)
 - ⑤ 유니언교회 냉·난방시설 교체 및 외벽수리(88,009,000원)
 - (2) 100주년 기념교회 설립의 건을 가결하다.
 - (3) 영상 "한국기독교 100년사" 제작기로 가결하다.
 - (4) 제단사무실 이전건은 계속 추진기로 하다.
7. 결 회 : 이상 안전심의를 마친 후 최창근 장로의 기도로 폐회하다.

2003. 9. 30

이 사 장	강 원 용
부이사장	정 진 경
상임이사	강 병 훈
실무책임	김 경 래

- 5 -

● 자료 2003.B.003.X 협의회, 임시이사회 회의록(2003.9.30)
 -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관리할 전담교회로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공식 결의한 것은 2003년 9월 30일 열린 2003년 1차 임시이사회였다.

2. 이사회 회의록

2 - 1. 2005년도 제21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05년 4월 18일(월) 오전 11시 30분
2. 장 소 : 소피텔 엠배서더호텔 2층 회의실
3. 사 회 : 상임이사 강병훈 목사
4. 참 석 이 사 : 강원용, 정진경, 강병훈, 한명국, 최창근, 김해철, 이종윤, 이성희, 정이숙, 정현구, 김삼환(대)
참 석 감 사 : 임정산, 주광남
위 임 : 이철신
결 석 : 길자연, 조영준
배 석 : 김경래 사무총장
5. 예 배 : 찬송가 383장을 일동이 제창하고 한명국이사의 기도 후, 이 사장 강원용 목사가 요한1서 4장 8절을 봉독 후 “내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최근 출판물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메시지를 전한 후 정진경 부이사장이 환경죄목사 5주기 추모기도와 함께 축도 후 1부 예배를 마친다.
6. 회 의 : 강병훈 상임이사의 사회로 성원이 필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 재단 사무총장 김경래 장로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1) 보고

- ① 재단의 1년간 업무를 재단 사무총장 김경래 장로가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임정산 감사가 2004년도 감사 결과를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③ 최창근 재정이사가 2004년도 결산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3 -

●●
자료 2005.B.002.X 협의회, 21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5인 추진위원 선임(2005.4.18)

2) 결 의

- ①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③ 온누리교회 담임 하용조 목사를 이사로 영입키로 하다.
- ④ 후원교회 및 기관단체의 확대를 위해 이사들이 협력키로 하다.
- ⑤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관계당국과 협의 후 추진키로 하다.
- ⑥ 200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에 따른 『선교100주년 기념교회』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 5인을 선정하고 전권을 위임하다.
위원 : 강원용, 정진경, 강병훈 목사, 최창근, 김경래 장로
- ⑦ 마포구청 관계자 4명이 참석하여 양화진 공원사업 추진 결과를 설명하다.

7. 폐 회 : 김해철 이사의 기도로 폐회하다.(하오 12:30)

2005. 4. 18

이 사 장 강 원 용

『100주년 기념교회』 운영방침 (한국예수교 양화진교회)

- 1) 양화진에 잠든 복음의 은인들을 기리며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양육, 애국에 뜻을 모으는 연합교회를 지향한다.
- 2)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고 개혁의 비전을 가꾸는 깨어 있는 교회가 된다.
- 3) 故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이룩한 100주년 기념사업의 정신과 유산·유적을 보존, 전승한다.
- 4) 「100주년 기념교회」는 선임된 담임목사가 주도하여 창립하고 설립모체가 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후견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긴다.
- 5) 정기적인 교회의 집회와 행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갖게 되며 교회에의 동참을 원하는 기성교인들은 당분간 이중교적을 갖을 수 있으나 가급적 새신자와 양육된 초신자들의 헌신적 봉사에 기대를 갖는다.
- 6) 담임목사는 필요한 사역자들 선정, 영입할 수 있으며, 행정, 관리, 목회에 따른 재정 수요는 당분간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후원독지가들의 성금으로 공급된다.

●●●

자료 2005.B.003.X 협의회,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2005.4)

-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에 잠든 복음의 은인을 기리며 연합교회를 지향하고,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고 개혁의 비전을 가꾸는 깨어 있는 교회가 될 것을 기본방침으로 설립되었다.

- 7) 교회운영에 따른 제반 사안은 담임목사에게 일임하고,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선임한 「100주년 교회」설립추진 5인 위원회(강원룡,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는 교회의 요청이 있을때 자문에 응한다.
- 8) 현존 외국인 교회(union church)와의 협력을 긴밀히하며 아울러 천주교 절두산 성지 관계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9) 양화진 선교사 묘지공원을 찾아오는 내외 방문객들을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길을 모색한다.
- 10) 담임목사의 유고시 후임자는 전임자가 100주년 기념사업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계승하도록 한다.

2005년 4월 18일

(재)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100주년교회 설립추진위원회

2 - 2. 200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05년 5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2. 장 소 : 양화진 선교기념관 회의실
3. 사 회 : 상임이사 강병훈 목사
4. 참 석 이 사 : 강원용, 정진경, 강병훈, 한명국, 최창근, 김해철, 정이숙,
정현구, 이성희, 이종윤
- 참 석 감 사 : 임정산, 주광남
- 위 임 : 이철신, 김삼환
- 결 석 : 길자연, 조영준
- 배 석 : 김경래 사무총장
5. 회 의 : 강병훈 상임이사의 사회로 성원이 뒀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한다. 재단 사무총장 김경래 장로가 제21회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1) 결 의
- ①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관계당국과 협의 후 추진키로 하다.
- ② 2005년도 제21회 정기이사회 결의에 따른 『선교100주년 기념교회』 설립 추진 위원에게 법인 정관 개정(법인 본사무소 설치 등)을 비롯한 기념교회 운영관리 문제를 전권위임키로 결의하다.
6. 폐 회 : 정진경 부이사장의 기도로 폐회하다. (오후 3:30)

2005. 5. 20

이 사 장 강 원 용

●●●●

자료 2005.B.004.X 협의회, 2005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2005.5.20)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취임사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에,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를 대표하여 부이사장 정진경 목사님, 상임이사 강병훈 목사님, 사무총장 김경래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김경래 장로님께서 밝혀주신 취지대로 2년 전에 100주년기념교회를 세울 것을 결정하셨고 몇 달 전부터 제가 그 교회의 목사직을 맡아 줄 것을 위해 기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자식같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당신들의 표현대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요단강가에 서 계신다'는 어르신들의 눈물은 제 마음과 눈시울을 적셨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중압감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잠잠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장 예배당이나 교인 한 명도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더 이상 교회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제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길이라 굳게 믿어 왔던 저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10년간 주님의교회 목회와 3년에 걸친 스위스 제네바한인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는 교회목회현장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좇기 위해 제가 저야할 심자가요, 주님께서 제게 부여 해주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외의 여러 교회들의 청빙 제의가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던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100주년기념교회 목사직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교회 목회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도 그동안 제가 지켜왔던 제 신념을 즉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당신들께서 제외하신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당부하시고 3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만에, 강병훈 목사님과 김경래 장로님께서 제차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주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쳐 오신 두 어르신의 얼굴을 다시 마주 대하고 그분들의 심정을 대하는 순간,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제 뇌리 속에 탄 생각이나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틈을 주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노종들을 다시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신비스런 권위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권위 앞에서 제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제 신념, 이를테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길이라 여겨왔던 제 신념은 에벨레가 나비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고쳐와도 같았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오후 2시 30분, 하나님께서는 단 1시간 30분 만에 제 인생행로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제네바한인교회 사역을 끝으로 주님을 위해 제 스스로 떠났던 교회목회 현장으로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의 역할을 양화진의 묘지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개신교의 출발점이자 정점인 동시에 선교 200주년을 향한 못자리판인 양화진의 묘지기로서, 신앙선조들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새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사랑과 연합, 화해와 일치, 봉사와 헌신의 밑일이 되고자 합니다.



자료 2005.C.010.X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취임사(2005.7.10)

-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취임사에서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의 역할을 양화진의 묘지기"로 받아들이며 "한국개신교의 출발점이자 정점인 동시에 선교 200주년을 향한 못자리판인 양화진의 묘지기로서, 헌신의 밑일이 될 것"을 다짐했다.

미천하고 부족하기만 한 저를 믿어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격려의 전화까지 주셨던 강원용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어르신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교우님들, 앞으로 100주년기념교회 교인으로 주님 안에서 저와 함께 살아가실 교우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상과 판단을 초월해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20년 전에 저를 이 양화진 자락 곁으로 인도해 주셨고, 20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을 때면 거의 매일 양화진을 찾았습니다. 묘지와 묘지 사이에서 길을 걸으며, 때로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고도 긴 대화를 주님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20년에 걸친 그 긴 준비 과정 끝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리 속에서,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된 양화진을 이제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할 목회 현장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신비스런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저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사말을 끝맺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

협약서

한국기독교 100 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한국기독교 200 년의 새로운 비전을 함양하고, 한국교회 화합의 모형과 사도행전의 계승을 실천하며, 한국기독교 100 주년사업의 후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기념교회(이하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소유한 양화진의국인선교사묘원(이하 묘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이하 순교자기념관)의 재산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운영, 관리권 행사를 교회에 위임하였다.

이 협약서는 협의회가 발행한 목사위임서(2005. 7. 10)와, 기백 05-015(2005. 9. 14), 기백 05-017(2005. 10. 12)로 명시한 묘원 운영관리의 건과, 순교자기념관의 운영관리 사역의 위임서(2005. 11. 17) 등에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협의회와 교회의 관계 및 협의회가 교회에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가) 협의회와 교회의 관계

협의회와 교회는 한국기독교100 주년 사업의 후속관리 임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공동체 이다. 그러므로, 협의회와 교회는 묘원과 순교자기념관의 운영, 관리권 행사를 변경하거나 거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교회 운영

1. 교회는 어느 특정 교단에 소속하지 아니하며 협의회는 교회의 설립취지 실행을 지원한다.

- 1 -

●●●●●●

자료 2006.B.008.X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운영관리 협약서(2006.10)

- 협약서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관계를 "한국기독교 100주년사업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공동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교회는 독자적 교회정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단, 교회 정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과 상충될 수 없으며 만약 그럴 경우 이 협약서가 우선한다.
3. 협의회는 교회 정관 내용 중 명확히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회의 결정기관(운영위원회 등)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검토 후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
4. 최초의 담임목사는 협의회가 선임한다. 부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후임 담임목사(후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 인준을 받은 교회정관에 따라 정한다.
5. 교회는 협의회에의 재단 운영관리를 위해 일정액의 재정을 지원한다.
6. 교회는 교회현황과 주요활동 상황을 협의회 정기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양화진 운영

1. 교회는 양화진묘원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양화진 묘원 관리 규정'(이하 묘원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2. 묘원규정은 양화진묘원을 '한국기독교 성지'로 유지관리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묘원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과 기타 정부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준한다.
4. 교회는 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원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단, 외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하여 협의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 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교회는 양화진 경내의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단, 기존시설을 철거 또는 새 시설을 세울 때는 사전에 협의회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공원 녹지법, 건축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6. 협의회는 묘원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교회가 묘원관리 업무를 그 목적에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라) 순교자기념관 운영

1. 교회는 순교자기념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순교자기념관 관리규정' (이하 순교자기념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2. 순교자기념관규정은 협의회가 정한 목적에 합당하여야 한다.
3. 교회는 순교자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 단체들과 독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은 양화진 운영의 조항과 같다.

마)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와 교회는 상기한 교회의 설립 목적과 가)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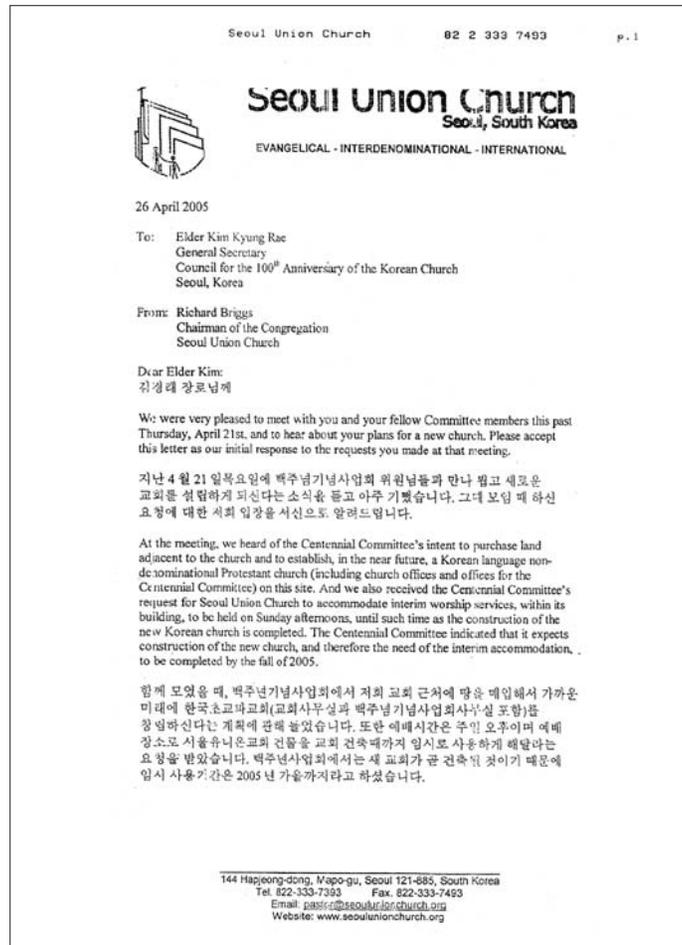
2006 년 10 월 14 일

재단
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의
이사장 정진경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이재철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관련하여 협의회, 100주년기념교회와 유니온교회 사이에 오간 공문들〉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준비 과정과 초창기에 유니온교회와 주고받은 문서들.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예를 다했으나, 유니온교회는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고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자료 2005.E.007 유니온교회,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서신(2005.4.26)

I have brought this matter to the Council of Seoul Union Church (as I promised), and we have discussed the matter. The Council concurs with the Centennial Committee that a formally executed agreement is not necessary. However, in order to make sure that all of us (Centennial Committee and SUCH Council) have a common understanding, we wanted to document some of our concerns and expectations, as follows:

저는 이 사안을 (약속한 대로) 서울유니온교회 제직회에 제출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협의는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저희 제직회에서도 백주년사업회와 동의합니다. 그러나 양측(백주년측과 서울유니온교회제직회)의 이해가 서로 동일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의 우려와 예상되는 점들을 문서화하고자 합니다.

Ø The period of usage of the Seoul Union Church facility would be from Sunday, May 29th, through December 31st, 2005. (We have booked the church building already for events prior to that date.)

서울유니온교회 건물 사용 기간은 5월 29일 주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면 합니다. (5월 29일 이전에는 교회에 행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Ø We would like to offer the use of the main sanctuary for the holding of Korean Protestant worship services between the hours of 2:30 PM to 4:30 PM on Sunday afternoons. Use of the fellowship hall for activities not involving food or beverages is also included during the same time period (2:30 PM to 4:30 PM).
본당 예배시간은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하 친교실은 동일한 시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식사와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활동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Ø The facilities should be left in the same configuration in which it was found.
모든 시설은 있는 그대로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Ø If the new church wishes to use the sound system in the main sanctuary, your sound technician needs to be trained in proper use of the system. Only trained people will be allowed to use the built-in sound system (including speakers, microphones, tape recorder, CD deck, and sound board.)

백주년교회가 본당 음향시설을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 음향담당자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내장형 음향시설(스피커, 마이크, 녹음기, CD, 사운드보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Ø Any additional usage of church facilities needs additional discussions and agreement. In particular, we need to discuss and agree on the use of the fellowship hall (including the kitchen) if food or beverages will be served.

교회 시설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따로 논의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식당과 지하 친교실 사용시 음식과 음료가 제공될 경우에는 서로 논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Ø We expect that the Centennial Committee will obtain the prior consent of the Seoul Union Church Council before installing any equipment or making any modifications to the building infrastructure.

144 Hapjeong-dong, Mapo-gu, Seoul 121-885, South Korea
Tel. 822-333-7393 Fax. 822-333-7493
Email: pastor@seoulunionchurch.org
Website: www.seoulunionchurch.org

백주년기념사업회에서는 서울유니온교회 건물내 시설 개조나 장비 설치 시
적회 교회측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Ø We are concerned about congestion in the parking area after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As you may be aware, the recent construction of the adjacent park by
Mapo-Ku resulted in a reduction in available on-site parking. Therefore, once
established, Seoul Union requests that the new church members not park in the
cemetery lot during Seoul Union Church services.

묘지공원 공사 완료 후에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인접공원 공사로 주차장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유니온교회 예배 시간 중에는 백주년교회 교인분들께서 주차를
삼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Ø During the interim period, Seoul Union would request that the Centennial
Committee remit a stipend to cover the additional costs for caretaker, cleaning,
maintenance, and utilities. Seoul Union will suggest a monthly amount to be paid by
the Centennial Committee shortly.

백주년교회는 임시 사용 기간 중에 관리집사, 청소, 유지보수, 기타 공과금(전기,
수도, 에어컨, 난방, 가스..)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 일정금액 사용비용
부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Ø Seoul Union would expect to be reimbursed for the repair cost to any building or
equipment damage, if that should occur.

건물이나 시설 파손 시, 이에 대한 보수 비용을 백주년교회측이 번상하시리라
기대합니다.

Ø After the interim period, and upo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new church,
Seoul Union would request that the Centennial Committee consider contributing an
amount monthly to Seoul Union Church to assist in the on-going cost of maintaining
the cemetery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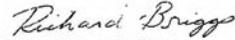
적회 서울유니온교회는 임시 사용 기간 이후, 또한 백주년교회가 완전히 설립된
이후, 백주년측이 묘지공원 관리비를 매월 일정액 기부해주시길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If the foregoing is acceptable to you, please respon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we
may determine the amounts of the necessary stipends mentioned above.

앞의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용비 (관리집사, 청소, 유지보수,
기타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금액을 정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답장을
주셨으면 합니다.

I will look forward to hearing your reply.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In Christ's Service.



Richard Briggs, Chairman
Seoul Union Church

144 Hapjeong-dong, Mapo-gu, Seoul 121-885, South Korea
Tel. 822-333-7393 Fax. 822-333-7493
Email: pastor@seoulunionchurch.org
Website: www.seoulunionchurch.org



제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모자 내기 사랑을 받리라"

☎ 02-521-0284 서울·서초구 서초동 1626-3 재일빌딩601호
 TEL: (02)521-0282~3 FAX: (02)521-0284

법인 임직원 기백 : 05-002호 2005. 4. 29
 이 사 장 김완용 수신 : Mr. Richard Briggs
 (장동교회 원목사) Chairman of the Congregation, Seoul Union Church
 부이사장 정진영 발신 : 김 경 래
 (신촌신교회 원목사)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사무총장
 상임이사 강병은 (이회복원 이사장)

이 사 김승환 (영성교회 목사) 하나님을 풍성한 은혜가 귀하와 서울유니언교회 위에 항상 임재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이 사 김자연 (영성교회 목사)

이 사 김재영 (말배부리교회 목사) 귀하가 보내주신 05. 4. 26일자 서신을 받고 4. 28일 목요일 낮 선교100주년
 기념교회 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 정한구 (서울영동교회 목사)

이 사 이성희 (연방교회 목사) 우리 추진위원들은 서울유니언교회 제직회와 위원장이신 귀하의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전통인 구두 제안을 기꺼이 수용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전합니다.
 이 사 이종운 (서울영동교회 목사)

이 사 이철신 (영락교회 목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한국인 연합교회를 영접해 주시고 친교실을 희망
 했으나 본당을 사용토록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 조양은 (신촌신교회 목사)

이 사 최창근 (영락교회 목사) 귀하가 계의하신 우려와 조언에 대해 본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귀 교
 회 사역에 걸림들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려고 합니다.
 이 사 한양국 (서울침례교회 목사)

- 감 사 임영산 (영락교회 장로) 1. 한국기독교 선교100주년기념 『양화진교회』로 불리울 기념교회는 귀 교회가
 감 사 주광남 (사랑교회 장로) 허락하신 5월 29일(주일) 오후3시 첫 준비기도회로 모이며 창립예배는 7월
 사무총장 김경래 10일(주일) 오후 3시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사무이사 이희연 2. 주일예배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며 친교실에서는 서로 논의와 동의 없
 는 식사나 음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교실은 원상 복구토록 할 것입니다.
 친교실 사용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
 자료 2005.B.008 협의회, 유니언교회에 보낸 서신(2005.4.29)

5. 교회시설의 추가 사용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할 것입니다.
6. 서울유니언교회의 동의 없는 시설물의 가설은 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유니언교회가 필요로 하는 장비의 기증일지라도 사전 협의를 할 것입니다.
7. 서울유니언교회 예배시간에는 기념교회 교인들의 주차는 삼갈 것이며 공용 주차장 사용을 권장할 것입니다.
8. 관리집사, 청소, 유지보수 등 추가비용은 서울유니언교회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것입니다.
9. 건물이나 시설과손시 또는 비치물(성경, 찬송 등)의 망실에 대해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책임지고 회복할 것입니다.
10. 기념교회가 정착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묘지공원 관리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11. 귀하와 귀 교회의 자상하고 친절한 배려에 거듭 감사하오며 앞서 언급한 제반비용을 산출하여 본 100주년기념사업협회에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용기간은 마포구청 공사 진척에 따라 신축성을 갖게될 것입니다.

주안에서 평강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선교100주년 기념교회 추진위원회

실무책임 김 경 래





절망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모라 내가 새일을 할리라"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9-37 서일빌딩 401호
 TEL. (02)332-4155/6 FAX. (02)332-4157

법인 임역원 기 백 : 05-015호 2005. 9. 14
 이사장 김완중 수 신 : 서울유니온교회
 (영동교회 전임이사) 참 조 : 운영위원회/ 100주년기념교회
 부이사장 정진경 제 목 :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결의 및 제안
 (신촌신학교 전임이사)

상임이사 강병준 (이회복원 이사장)
 이 사 김삼환 (영성교회 목사)
 이 사 김지연 (영성교회 목사)
 이 사 김병철 (동대문교회 목사)
 이 사 정현구 (서울영동교회 목사)
 이 사 이성희 (연동교회 목사)
 이 사 이종훈 (서울장로교회 목사)
 이 사 이철신 (영학교회 목사)
 이 사 정아숙 (배영신교원장)
 이 사 조영준 (영동신학교 전임이사)
 이 사 최장근 (영학교회 전임이사)
 이 사 한영국 (서울장로교회 목사)
 감사 임정산 (영학교회 장로)
 감사 주광남 (사랑의교회 장로)
 사무총장 김경래
 사무인사 이희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귀 교회와 귀 위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아름답고 보람된 관계를 120여 년간 이어오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특히 100주년기념교회를 사랑과 우정으로 맞아 주시고 집회공간과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심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와 전통, 관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대 선교사님들처럼 관용과 인내로서 신생 100주년기념교회를 형제교회로 여겨 많은 도움을 베푸시는 귀 교회와 귀 위원회의 은혜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1.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개신교 20개 교단과 26개 기관단체가 연합하여 1982년에 창설되었으며 세칭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중 양화진 선교사묘지의 법적인 소유권과 운영관리권을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물려받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위치한 순교자기념관(110,000평)과 함께 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귀속되어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



양화진 묘역에 세워진 건물은 20년전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으로 건립되었으며 그 당시 예배처소를 구하지 못해 어려웠던 서울유니온

●●●
 자료 2005.B.013 협의회, 100주년협의회의 결의 및 제안(2005.9.14)

교회를 그곳으로 옮겨 오도록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사무실도 기념관 1층 우측에 마련하였으나 서울유니온교회 측의 요청을 수락하여 옮겨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하 친교실을 한경직목사 기념홀로 삼고 한 목사님의 사진을 오늘까지 두고 있는 것은 당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장이셨던 그분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여겨집니다.
그 후 서울유니온교회가 선교사와 그 가족·친지 중심의 신앙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건물 유지와 묘지관리에도 많은 기여를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도시개발의 진행에 따라 양화진 묘지 주변 환경이 경건된 분위기를 잃어가고 강변도로 교차로와 지하철까지 통과하여 소란해 지자 본 협의회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번, 김대중 대통령에게 두 번, 건의서를 올려 양화진 선교사묘지 주변을 공원화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응답이 없었으나 이명박 장로가 서울시장이 되고 박홍섭 권사가 마포구청장이 된 2002년, 본 협의회가 제공한 양화진 주변 취약지구의 공원화 청사진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사진을 작성한 기독교실업인(CBMC) 이승률 장로와 130억의 예산을 들여 천주교 절두산 순교성지와 개신교 선교사 묘지공원을 잇는 대업을 완공시킨 박홍섭 마포구청장께 우리 모두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4. 주변 환경이 개선됨에 반비례하여 우리들의 값진 유산인 묘지들과 기념건물은 우리 한국교회의 무관심과 무엇보다 저희 협의회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20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아 늘어나는 순례객들의 아쉬움과 합정동 주민들의 비난이 크게 들어옴에 따라 본 협의회는 무책임을 통감하고 선교2세기를 내다보면서 절실한 대책을 강구한 끝에 다음 몇 가지 사안을 결의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 교회와 존경하는 귀 위원회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찬을 기대합니다.

첫째 ; 마포구의 양화진 성지공원화에 가리어진 개신교 선교사 묘역 및 선교기념관의 개·보수와 관리를 비롯하여 신관 건축(마포구, 서울시와 협의 중)주차장 증설은 이제철 목사가 시무하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책임지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 양화진 묘지의 매장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선교사묘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묘지나 불법으로 매장된 묘지는 연고자를 찾아 이장토록 하였습니다.

신규 매장의 경우, 반드시 국법에 따라 하고 마포구의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 100주년기념교회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협의회를 대신하여 관리 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 서울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회의 사전 허락 없이 개인이나 기관에 건물이나 대지(묘지 포함)의 임대 또는 변형을 하지 못하도록 살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넷째 ; 선교사 묘지공원 내에서는 놀이와 앰프, 메가폰, 악기사용을 금하며, 양화진 묘지공원 관리와 관련된 기부금품 모집을 못하도록 두 교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섯째 ; 집회공간과 시간은 서울유니온교회가 현재 사용하는 주일예배(09:30~12:30)와 화요일 및 목요일 오전 성경공부에 우선권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그 이외의 시간은 100주년기념교회가 사용하면서 묘지에 따른 제반 비용처럼 집회공간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전기, 수도, 가스, 청소, 기타 공과잡비)
관리인 급료는 서울유니온교회의 퇴직금 처리 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 지방화 추세에 따라 변해가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위치한 순교자기념관과 그 주변의 개·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해 100주년기념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본 협의회 재단운영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일곱째 ;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의 동상이 있는 인천의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의 이전 문제와 운영관리는 인천기독교연합회의 결의를 수용기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 100주년기념교회 조직 내에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지회를 두어 양화진 선교사 묘지공원과 선교기념관(서울유니온교회)의 하드웨어 관리 감독을 세무처리와 행정처리와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협의회가 이처럼 이례적인 결의와 제의를 하게 된 것은 100주년기념교회와 서울유니온교회가 그리스도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유지하고 증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귀 교회와 귀 위원회의 깊은 이해와 협력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귀 교회와 위원회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 사 장	강	원
부이사장	정	진
상임이사	강	병
재정이사	최	창
사무총장	김	경





Seoul Union Church

2005년 11월 15일
강원용 목사님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위원회

강원용 목사님 귀하:

1885년 설립된 이래 서울 유니온 교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 선교사, 기업인, 정치가 혹은 학교 교사 - 의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담당 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회로서 저희들은 쉽게 무시 될 수 없는 역사적 뿌리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일부로서 서울 유니온 교회는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 위원회로 대표되는 한국의 교회들은 진정으로 장기간 동안 따뜻하며 발전적이며, 함께 일 해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국적과 종파를 초월한 믿음의 통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드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2005년 11월 9일자 귀하께서 보낸 편지에 대해 심심한 좌절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이 편지에 동봉된 편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과 위원회의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결의” 된 사항은 우리들의 긴 역사와는 완전히 상치되는 것이며, 서울 유니온 교회의 위원회의 애초의 의도를 약의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즉 서울 유니온 교회의 특별한 처지와 서울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교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몇 개월 동안 강병훈 목사님, 김경래 장로님과 어려운 토론을 하고 있었으며 수차례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은 왜 전체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서울 유니온 교회의 위원회와 한국교회 100주년 위원회의 전체 위원회 회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전체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저희들은 한국 교회 100주년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강원용 목사님과, 부회장이신 정진경 목사님과의 면담을 시급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첨부된 문건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못 합니다. 현재 “Mission Memorial” 이라고 표시된 것은 원래 “Memorial Chapel” 이라고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서 교회의 원래의 목적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인 서울 유니온 교회의 영원한 집(permanent home)으로서 제공 되었던 것입니다.

144 Hapchung-dong ♣ Mapo-gu ♣ Seoul, 121-885 ♣ Korea229

●●●●

자료 2005.E.019 유니온교회(리처드 브릭스), 100주년협의회 강원용 이사장에 보낸 서신(2005.11.15)

2) 편지에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되었던 은혜를 저희들이 “무시”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 같은 주장은 저희들을 좌절하고 실망스럽게 합니다. 저희들이 쓴 어떤 편지, 저희들이 행한 어떤 회의에서도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집을 제공한 한국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 했습니다.

금년 봄 분과위원회가 서울 유니온 교회를 찾아와 친교실을 임시로 (2005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를 문의했을 때 저희들은 본 예배당을 사용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기념 교회를 20년 동안 사용 해 온 일은 그 교회당이 서울유니온교회 회의 영원한 집이라는 의도로서 제공된 것이었기에 지극히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 유니온 교회가 과거처럼 교회를 사용하는 일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묘지는 지난 120년 동안 “외국인 묘지”라고 알려졌던 것이며 그 이름은 묘지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묘지는 결코 선교사 묘지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수정주의입니다.

4) 편지에는 “불법적인 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법 매장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묘지 관리 사무실에 의하면, 서울 유니온 교회가 수십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외국인들이 외국인 묘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편지는 저희들이 일요일 예배 시간대(9시 30분-12시 30분)와 화요일, 목요일 아침의 성경공부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제외한) 이는 저희 교회가 기도 및 성가대 연습, 기도모임, 특별 활동 등에 필요한 경당한 시간들을 무시하는 것 입니다. 더구나 저희들의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방학 기간에도 지속되는 것들입니다.(비록 활동의 양은 줄어들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제약하는 것은 집행 이사 이신 강병훈 목사님이 서울 유니온 교회에게 저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약속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귀하의 결정들은 서울 유니온 교회로 하여금 그곳을 비워달라는 간접적인 요구서라는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 같은 제약 아래서 저희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월 9일자 편지를 받은 이후, 저희들은 권리를 다시 강조하는 이재철 목사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이재철 목사의 편지는 (첨부되어 있음) 100주년 교회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서울 유니온 교회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철 목사에 의하면 서울 유니온 교회는 최창섭 선생이 위원장인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편지는 저희를 지원하겠다는 좋은 말로 끝을 맺고 있지만 편지의 내용은 적대적이며, 서울 유니온 교회를 제약하는 것들이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이제철 목사를 만나는 경우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강 박사님, 서울 유니온 교회는 항상 한국교회 100주년 위원회가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며 저희들의 역사적인 우호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저희들은 한국교회 100주년 위원회가 분과 위원회와 100주년 교회로 하여금 서울 유니온 교회의 120년 역사를 온전히 존경하고, 한국 교회의 지난 20년 동안 서울 유니온 교회에 대한 개입이 명예로울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오며 위원장님께서 선처하여 주실 것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귀하께서 다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위원회와 서울 유니온 교회 사이의 역사적 관계는 재확립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위원회(와 이를 대표하는 한국 교회들)의 본래 목적은 서울 유니온 교회에 영원한 집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서울 유니온 교회에 외국인 묘지와 예배당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 했습니다. 100주년 교회의 행동은 이러한 의도와는 거의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 건물과 묘지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우선권은 서울 유니온 교회에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100주년 교회가 당초에 약속했던 바대로 새로운 시설로 이사할 수 있을 때까지(시간과 장소의 면에서) 백주년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주년 교회는 저희들의 진정한 노력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며, 대신 건물과 묘지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려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100주년 교회가 묘지와 교회당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장악하는데 성공한다면 100주년 기념 위원회와 서울 유니온 교회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100주년 기념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교회를 찾도록 내 쫓는데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 박사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조화롭게 화합하며 서로의 약속을 존중하며 살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만약 yes 가 yes 를 의미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분과 위원회와 이재철 목사님의 행동은 위원회와 서울 유니온 교회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yes 를 no 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같은 결과가 한국에 거주하는 기독교 증인들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같은 결과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위원회가 원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같은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귀하가 이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해 주시고, 서울 외국인 묘지와 기념관의 조화를 다시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Richard Briggs

Richard Briggs
Chairman of the Congregation
Seoul Union Church



Attachments: Your letter dated 9 November 2005

Letter from Rev. Lee Jae-Chul, dated 15 November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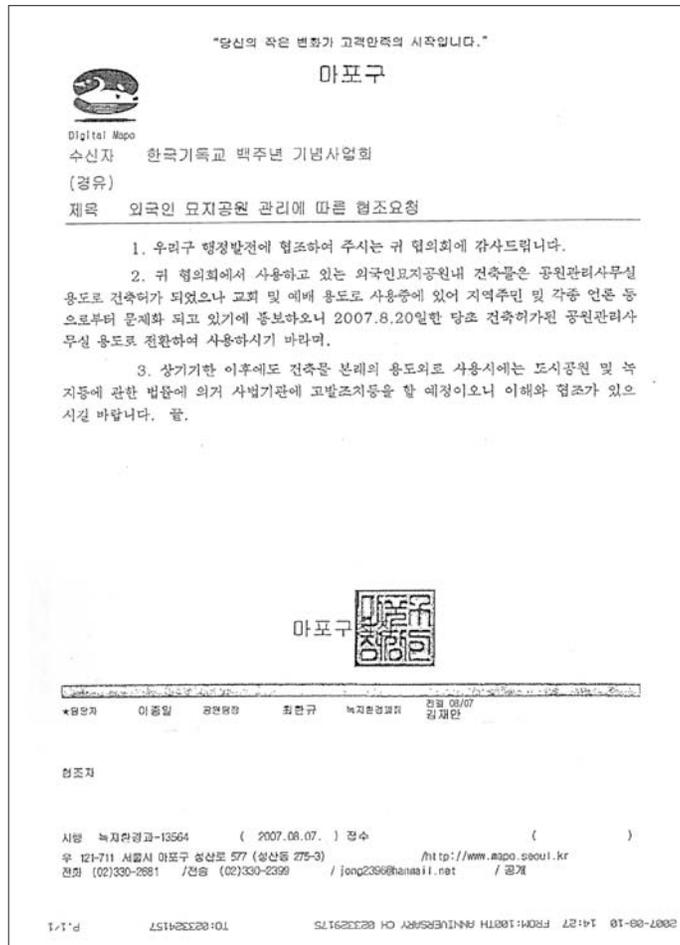
CC: Members of The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외국인 선교사 성지’라고 불린 현판
- 앞 편지에서 유니온교회는 ‘이 묘지는 결코 선교사묘지라고 불린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사진은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던 시절, 담에 부착되었던 안내문인 바, 분명히 ‘외국인 선교사 성지’라고 쓰여 있다. 스스로 양화진을 외국인선교사 성지라고 표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선교사묘지가 아닌 외국인묘지’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선교기념관의 교회용도 사용을 금지한 마포구청의 공문>

양화진선교사묘원 내 선교기념관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마포구청 공문과 이에 따라 법을 준수 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의회의 공문. 이처럼 명백히 관할 관청의 요구에 의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서울고등법원의 업무방해 주장 재정신청 소송에 대한 기각판결로 잘못된 것이 확인되었다.



● 자료 2007.A.014 마포구청, 외국인묘지공원 관리 협조요청(녹지환경과.13564/2007.8.7)



대한민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우리 내기 새일을 합히리라"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59-37 서일빌딩 401호
Tel.(02)332-4155/6 Fax.(02)332-4157 www.100thcouncil.com

2007. 8. 17

기 백 : 07-008호

법인 임역원

수 신 : 100주년 기념교회

이 사 장 정진경

참 조 : 답임목사

(신촌성당교회 임의직)

부이사장 김병훈

제 목 : 선교기념관의 합법적 사용 건

(이화학당 명예이사장)

부이사장 최항근

귀 교회에 주님의 은총이 어느 때 보다 더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락교회 원로목사)

상임이사 김경래

(재단 사무국장)

이 사 김지연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국은 본 협의회가 귀 교회에 예배당으로 사용토록 허락하여온 선교기념관이 허가된 용도 외에 사용되어 오고 있어 해당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2007년 8월 20일 이후에 건축물 본래의 용도 즉 공원관리사무실 이외에 교회 및 예배 용도로 사용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영락교회 목사)

이 사 김고광

(수포교회 목사)

이 사 김삼환

(영락교회 목사)

이 사 김해철

(말복루교회 목사)

이 사 이성희

(연동교회 목사)

이 사 이재철

(100주년기념교회 목사)

이 사 이종훈

(서울강요교회 목사)

이 사 이철신

(영락교회 목사)

이 사 정이숙

(매일선교회 원장)

이 사 정현구

(서울영동교회 목사)

이 사 하용조

(은우리교회 목사)

이 사 한영국

(서울합례교회 목사)

상임감사 정광택

(은우리교회 명예장회)

감 사 임경산

(영락교회 장로)

감 사 주광남

(사원교회 장로)

사무감 이희연

당국은 원칙적으로 교회 사무실이 해당 건축물 내에 있는 것도 본래의 용도를 벗어난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본의 아니게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하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데 대하여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며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의법 조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 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더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첨부 : 마포구청 공문 1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장 정진경



자료 2007.B.016 협의회, 선교기념관 합법적 사용 건(기백 07.008/2007.8.17)



서울고등법원

정본입니다.

제 10 형 사 부

2009. 4. 14.

법원사무관 양운



결 정

사 건 2009초재155 재정신청

신 청 인 서울유니온교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 28-12 서울외국인학교
 대표자 프린스 찰스 오텅 보아텅(Prince Charles Oteng-Boateng)
 신청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유동현, 오대환, 신동선, 이덕형, 성현상

피 의 자 1. 정진경 [redacted]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redacted]
 2. 김경래 [redacted]
 서울 마포구 합정동 [redacted]
 3. 정용섭 [redacted]
 서울 서초구 내곡동 [redacted]
 4. 이재철 [redacted]
 서울 마포구 합정동 [redacted]

불기소처분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08. 11. 11.자 2008형제23471호 결정

주 문



●●●

자료 2009.A.009 서울고등법원, 업무방해 관련 재정신청 기각판결문(2009초재155/ 2009.4.13)
 -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 사건 재정심판 결정문에서 “협의회 임원 및 기념교회 담임목사인 피의자들에게 고소 사실과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제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회는 1984.경 경성구미인묘지회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0 외 9필지(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외국인 공원묘지)를 외국인 공원묘지의 영구보전과 외국인 선교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 등의 조건으로 증여받아 1986.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신청인 교회는 증여 이후 2005.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단독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2005. 7.부터 신청인 교회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가 사용시간을 달리 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위 협의회는 2005. 9. 14.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청인 교회의 묘지관리 부실 및 불법매장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과 공원묘지의 관리 및 운영책임을 위 기념교회에 위임하고, 2005. 11. 9. 신청인 교회에 주일예배 및 성경공부를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통보한 사실, 한편 2007년도에 이르러 위 기념교회의 교인 숫자는 2,500여명에 이르는 반면 신청인 교회의 교인 숫자는 약 5-60명에 불과하여, 위 기념교회는 2007. 6. 1. 신청인 교회에 같은 해 8.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시간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신청인 교회가 위 기념교회의 시간변경 요구에 불응하자, 2007. 8. 5. 새벽에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물리적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첩보를 전해들은 위 기념교회는 2007. 8. 3.경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바꾼 사실, 마포구청은 2007. 8. 7.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묘지관리소가 아니라 종교시설로서의 예배처소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신청인 교회는 2007. 8. 12.





과 8. 19. 새벽에 이 사건 건물 현관 앞에 모여 옥외에배를 드린 사실, 위 협의회는 2007. 9. 11.자로 신청인 교회에 동 교회가 사용 중인 사무공간을 2007. 10. 31.까지 이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신청인 교회 목사가 아직 짐을 다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관리주체로서 보안 내지 방법을 위하여 출입하기 전에 사전에 통고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협의회가 부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증여 계약이 해제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외국인 공원묘지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은 이상, 위 협의회의 임원 내지 위 기념교회의 담임목사인 피의자들에게 고소사실과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3.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조규석

 판사 이성호

〈이재철 목사 사자명예훼손 소송 관련 자료〉

강북노협은 검사의 공소장을 확정판결인양 주장하지만, 이는 판사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이며, 판사는 이 건에 대해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인해 기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02-3270-4000)			
2007 형제 35978 호		2007. 10. 18.	
수신	서울서부지방법원	발신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제목	공소장	검사관	박경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피고인명	이 [REDACTED]	기인력사태	의견서 기재와 같음
피명	사자명예훼손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음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적용법조	형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견	벌금 1,000,000(일백만) 원 가납명령청구 과료 물수 추징금
번호인			
첨부: 010-9255-9951, 332-9177			

● 자료 2007.A.025 서울지검, 사자명예훼손 공소장(2007.10.18)



서울서부지방법원

등본입니다.

판 결

2008. 1. 24.

법원주사보 조 식



사 건 2007고단2557 사자명예훼손
 피 고 인 이재철 [REDACTED], 목사
 주거 서울 마포구 합정동 [REDACTED]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3-10
 검 사 권민오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 변호사 장현길
 판 결 선 고 2008. 1.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4 소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인바, 2007. 7. 8. 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사실은 위 교회 내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묘지는 등기부상 원한석의 증조부인 언더우드 2세, 고조부인 언더우드 3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1945년 해방 이후 에 언더우드 2세가 경성구미인묘지회 대표 자격으로 이 땅을 자기 개인 명의로 등기했

2008-0004651436-ETL86

1 / 2

●●
 자료 2008,A,001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08.1.16)



고, 그의 사후에는 아들 언더우드 3세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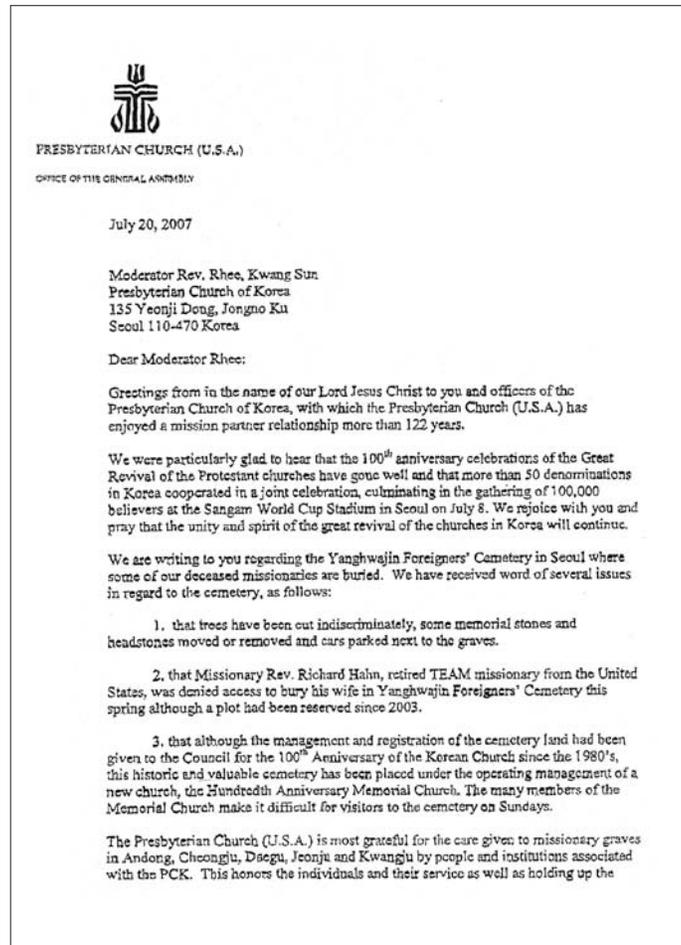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원한석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명옥 _____

〈미국 장로교와 재미한국선교사협회의 서신과 회신〉

2007년과 2008년 어간에 미국 장로교총회의 커크패트릭 목사(Rev. Kirk Patrick)와 재미한국선교사협회는 예장통합교단에 소위 양화진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보내왔다. 이들의 우려는 일방적 자료를 접하고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요원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잘못된 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후 이들은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
자료 2007.P.011 미국장로교회, 커크 패트릭 목사 서신(2007.7)

Moderator Rev. Rhee, Kwang Su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July 23, 2007
P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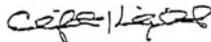
long partnership of the PC(USA) and the PCK. However, we have heard of, and the PCK denominational newspaper, the Kiddok Kongbo, has reported on difficulties at the Yanghwajin Foreigners' Cemetery. In the USA we are not able to verify the problems or ascertain the reasons for them.

There are 21 missionaries and at least 23 missionary children of the predecessor and present PC(U.S.A.) denomination who are buried at Yanghwajin so we cannot but be concerned. Of the twenty members and auditors of the independent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which was given responsibility for the cemetery, nine persons as well as Pastor Lee, Jae Cheol of the Hundred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are pastors or elde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he largest number of council members belonging to an individual denomination.

We would be most grateful if you and other leade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nd the members of the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would address the concerns that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emetery. It would set at rest the minds of our Presbyterian Church (U.S.A.) members to be assured that the cemetery is being operated and cared for in way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s for which the land was given, which was to glorify God and to honor the service of all who are buried there.

May the grace and pe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nd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Cordially yours,



Clifton Kirkpatrick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cc: Chairperson, trustees and auditors of the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Asia/Pacific Office of World Mission, PC(U.S.A.)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모리 내리 새집을 활리시라"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59-37 서일빌딩 401호
Tel.(02)332-4155/6 Fax.(02)332-4157 www.100thcouncil.com

September 17, 2007

Rev. Clifton Kirkpatrick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Dear Rev. Kirkpatrick,

Greetings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Yosep Jung is sending here.

I hope you remember me if you had received my letter which was sent to you by fax on August 7, 2007, in response to your letter(dated July 20) you sent to Rev. Rhee Kwang-sun of PC Korea.

The reason I am writing you again is that I want first of all to make sure if you have received my letter and grasped the truth around Yanghwajin cemetery in Seoul Korea.

There may be many different understandings against one truth.

I wish every body has the right understanding of one truth.

For this reason I would like to make sure you have received my letter and further more I would like your favor to help me identify who delivered to you 'the word of several issues in regard to the cemetery' as you mentioned on your letter, so that I may be able to contact with him or her in order to exchange our candid opinions in friendly and humble manner. I am afraid he or she might also have obtained some distorted information for some reasons. All these things should be clearly explained. Otherwise, we, including you and I are all fooled by anyone for some reasons.

Rev. Kirkpatrick,

Please help us to restore the trust, if broken.

Please help him or her to come forward to me so that we may be able to discuss and explain each other's opinion and come to the conclusion, the truth.

I would be most grateful if you help us, the members of the Council for 100th Anniversary of Korean Church and HAMCh to rebuild a trust with him or her who may have concerns about the cemetery. Please help me to contact with him or her directly by letting me know the name of the person and phone number.

I hope I am not bothering you too much.

May the grace and peace of our Lord be with you.

Sincerely yours,

Yosep Jung

Chairman, Yanghwajin Operating Committe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 ●
자료 2007.B.023 100주년협의회가 커크 패트릭 목사에게 보낸 서신(2007.9.17)

July 27, 2008

We the undersigned members of the Korea Missionary Fellowship gathered at Lake Junaluska, NC, hereby make the following appeal. We have been deeply disturbed to hear of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ennial Committee of the Korean Church, the Hundredth Anniversary Church which was meeting at Yanghwajin, and Seoul Union Church over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nd the Missionary Memorial Chapel on the cemetery land. We understand that the Centennial Committee and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church made the commitment some time ago to resolve this conflict, but that such resolution has not yet occurred. We express our continued concern and ask the Korean church leadership to use its influence to resolve the issue of the future of the Yanghwajin Foreigners' Cemetery and the Memorial Chapel to the glory of God and the continued respect for the historical contributions of the missionaries and other foreigners to the Korea they loved and served.

Signature Thomas A. Harton
Printed Name Thomas A. HARTON

Signature Harold T. Rice
Printed Name Harold T. RICE

Signature Wilbur T. Davis
Printed Name Wilbur T. DAVIS

Signature Natalie R. Kabaugh
Printed Name Natalie R. Kabaugh

Signature Lois Cook
Printed Name Lois COOK

Signature Helen Koepf
Printed Name Helen Koepf

Signature Roberta G. Rice
Printed Name Roberta G. Rice

Signature Douglas E. Wingeier
Printed Name DOUGLAS E. WINGEIER

Signature Jean Urquhart
Printed Name Jean Urquhart

Signature Richard B. Oliver
Printed Name RICHARD B. OLIVER

Signature John W. Cook
Printed Name John W. Cook

Signature Steve E. Pak
Printed Name Steve E. Pak

Signature M. Jean Robb
Printed Name M. JEAN ROBB

Signature Ron Moore
Printed Name Ron Moore

자료 2008,P.003 재미한국선교사협회, 통합총회에 보낸 호소문(2008.7.27)



대한민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협의회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44 선교기념관
MISSION MEMORIAL BLDG., 144, HAPJEONG-DONG, MAPO-GU,
SEOUL 121-883, KOREA
Tel : (02)332-4155/6 Fax : (02)332-4157 www.100thcouncil.com

July 1, 2009

To the members of the Korea Missionary Fellowship and friends: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Recently you may have heard some unfortunate news regarding Yanghwajin cemetery and Seoul Union Church. While I believe it would be better to meet in person, I am writing to you first with the hope that this letter will help begin narrowing down our differences and bringing us to peaceful resolution. I wish to clarify, primarily, that th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is, and always has been, dedicated to the proper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Yanghwajin cemetery, and did not in any way seek to drive Seoul Union Church from its grounds as a place of worship.

In the past, the cemetery has suffered from lack of management, sending it into disrepair. The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reques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transform the surroundings of Yanghwajin into a well cared-for cemetery and memorial park in 2001, which cost \$10 million USD. Th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was established to be faithful stewards of the cemetery, and the church has restored the damaged cemetery into what it is today, having budgeted more than \$1 million USD during Sep. 2005-Mar. 2009 period for this purpose. Congregants of th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have volunteered countless hours executing this stewardship, making the cemetery park a beautiful, peaceful place. All 555 tombs, including 167 tombs of missionaries, have been preserved intact; none have been exhumed nor damaged, contrary to rumors. Some trees have been cut or pruned in the interest of maintenance, and some inappropriately

1

●●●●

자료 2009.B.045 100주년협의회가 재미한국선교사회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2009.7)

erected monuments have been removed in a lawful manner.

Here, you can se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members hard at work to preserve the cemetery (April 2009):



And here are some pictures (labeled 'April 2009') of the cemetery that represent the physical care th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is committed to maintaining for the entire park (the pictures labeled 'April 2006' show how much the cemetery was in disrepair):



April 2006



April 2009



April 2006



April 2009



April 2006



April 2009



April 2006



April 2009



April 2006

April 2009

Th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is dedicated not only to maintaining the cemetery park's aesthetic qualities, but also, to the preservation of its historical significance for all of Korea. For this reason, the church maintains the Yanghwajin Research Institute, accessible at <http://yanghwajin.re.kr/>. The institute hosts academic studies, lecture series and archival documents that we hope will continue to educate people about the past and present of missions in Korea.

We are dismayed that Seoul Union Church's departure from Yanghwajin as a place of worship has been portrayed as an "eviction." In hindsight we do realize that a better process could have been established to make the departure more amicable. The truth is that both Seoul Union Church and th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are now in compliance with municipal law stating that regular religious activity be banned in the Mission Memorial building, because it was built as a cemetery maintenance house. We offered Seoul Union Church an alternate place of worship during a different hour, but this offer was not accepted. I further point out that some inappropriate activity and transactions have taken place with regard to Yanghwajin cemetery. As it is a designated city urban park, no new burial is allowed, nor can a single tree be cut without approval from the local district office here. Yet some descendants of certain

missionaries have claimed proprietary rights to a portion of the cemetery, despite the law. I and two other members of the council, as well as the pastor of th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were sued by Seoul Union Church for interference in execution of duty. A series of hearings took place through different levels of the judicial system, and eventually, the higher court rejected the petition, which confirmed that no charges should have been brought against us. Despite troubling activities such as illegal burials and sales of burial plots attributed to the leaders and caretaker of Seoul Union Church during their custodianship, we choose not to pursue charges.

I always thank God for his grace in having sent us servant-missionaries 12 decades ago, many of whom are buried at Yanghwajin cemetery. The seeds they sowed bore many fruits, and now there are 12 million Korean Christians and 50,000 Korean Christian churches nationwide. Our only hope is to preserve Yanghwajin cemetery as it should be, so that we can tell future generations about the great works and Christian love that missionaries have shown to the people of this country.

I would like to invite your help for us to achieve this vision. And I would also like to invite each and every one of you to Yanghwajin so that you may see how well th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 manages and maintains the cemetery. Please also visit us at <<http://yanghwajin.net>> for further information.

Yours sincerely,



Rev. Chung Jin-Kyung
Chairman of the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 및 관리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7년 가을, 마포구청과 국무총리실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내용은 양화진은 국유지이며,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양화진에 외국인을 안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당시 양화진 관리(수목 제거 등)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양화진의 합법적 소유자는 100주년협의회이며,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관련법상 불가능하며, 양화진에 안장하는 것 역시 관련법상 절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검토

07.9월 기획관리조정관

I. 인요한 위원 발언 요지

- 양화진 외국인묘지는 ①국유지이므로 ②유니온교회가 계속 사용권을 가지고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100주년 기념사업회는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④외국인이 계속 매장될 수 있도록 해야함

II. 양화진 외국인묘지 연혁

- 1890.8 의아문(외교부)이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의거, 사유지였던 양화진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묘역으로 조성
- 1913.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경성구미인묘지회 (Kyung Sung European American Cemetry)로 등기
- 해방-1961. 언더우드 2세와 3세가 '경성구미인묘지회' 대표로 등기
- 1961. '외국인토지법'으로 외국인은 토지소유를 못하게 됨
- 1978. 서울시 도시계획(전월2호선 공사 등) 추진상 보상문제로 확인결과 통 부지의 '외국인토지법' 위반이 밝혀짐
 ※ 언더우드3세는 수년간 소유권 취득을 위해 노력했으나 내무부는 외국인토지 취득을 불인정
- 1985.6 '경성구미인묘지회'에서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회'에 증여를 하면서 법원판결로 소유권 이전
- 1986.10 100주년기념사업회는 선교기념관을 완공
 동 선교기념관에서 유니온교회* 예배 시작
 * 이전에는 특정한 교회 없이 여러 곳을 순회하며 예배
- 2005.7 100주년기념사업회는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 양화진묘역과 선교기념관 관리를 위임
 ※ 이후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예배장으로 공동사용

- 1 -

● 자료 2007.A.036 국무총리실,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검토(2007.9)

【양화진 외국인 묘지 현황】

- 위 치 : 마포구 합정동(13,224㎡)
- 도시계획 : 외국인 묘지공원(지정일 : '65.5.6)
- 시 설 : 분묘 429기, 건축물(선교기념관) 1동(지하 1층, 지상 2층)

III.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쟁점사항

① 소유권 문제 : 국유지로 볼 수 없음

- 現 소유자(등기설정권자) : (재)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 ※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외국인토지법('61)상 토지소유가 불가능하게 되어 동 외국인묘지를 100주년기념사업회에 증여키로 결정('85.3)하고,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법원판결로 소유권 등기('85.6)
- 유니온 교회(외국인)측 주장
 -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 실질적으로 국유지임
- 정부(마포구·서울시, 법제처) 입장
 -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법적명의자였던 '경성구미인 묘지회'의 법률적으로 정당한 증여에 의해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85.6)한 것이므로 국유지로 볼 수 없음

② 선교기념관의 교회용도로 사용문제 : 관련법상 사용불가

- 선교기념관을 교회로 사용하던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시간을 놓고 충돌*
 - *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05.7 설립)가 유니온교회에 대해 '07.8.5일부터 예배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유니온교회가 반발
- 마포구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동 기념관을 당초 용도대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공문 조치('07.8.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상 '공원시설'은 관리사무소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상 선교기념관을 교회 용도로 변경하기는 어려움

- 공문조치 이전까지는 마포구청에서 양교회가 선교기념관을 관리사무소 이외에 예비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

- 동조치에 따라 현재 100주년 기념교회는 묘지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교육관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니온교회는 연희동 외국인 학교에서 예배를 보고 있음

③ 개발관련 문제 : 관련법상 개발 불가

- 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원시설에 한하여 시설설치가 가능하며, 현재 개발 추진사항도 없음

④ 외국인 등 추가 매장 가능 여부 : 관련법상 매장 불가

- 양화진 외국인묘지는 묘지가 아닌 공원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설치제한지역으로서 추가매장은 불가함

-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상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묘지설치가 불가능함

- 또한 동 묘지공원은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6호선이 지나고 양화대교 복단 및 강변북로와 접하고 있으며 인근이 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 제4호 사목*에도 저촉됨

* 사.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추가매장 관련, 유니온교회가 37기의 묘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바 있고

- 금년 5월에는 동 묘지사용권을 가진 미국 국적 목사부인의 매장문제로 마포구청의 매장허가가 필요하다는 100주년기념교회측과 유족이 마찰을 빚음

보 고 서

문서번호	녹지환경과-17779	★담당자	공원팀장	녹지환경과장
보존기간	5년	이종일	최현규	전결 10/22
시행일자	2007.10.22.			김재만
공개여부	공개	협조		

제목 : 외국인묘지공원 관련 민원관계자 면담 및 검토결과(의견) 보고

우리구(과)에 접수된 외국인묘지공원에 대한 민원사항 처리차 민원관계자 면담 및 검토결과(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진정인 인적사항

- 제 출 일 : 2007.10.17
- 진 정 인 : 경성구미인묘지회 원 한 석(대리인 : 변호사 민병일 등)
- 제출방법 : 서면
- 민원내용
 - 진정인은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묘지관리권을 인정받았으나,
 -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외국인묘지공원의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기화로 원래 진정인들의 묘지관리권을 방해하고,
 - 공원내 수목벌채,형질변경,불법건축물 증축등 사해가 빈번하니 조치요구 및
 - 세부적인 사실은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의 관리소장 이강필씨를 통하여 파악요망
- 민원발생 경위
 - 진정인 단체에서 등 부지를 관리하여 오던중 2005년부터 현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인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100주년기념교회)에서도 등 부지를 관리
 - ※ 2개 단체에서 관리
 - 양 단체간 소유권 분쟁 및 매장등에 대한 갈등을 하여 오던중, 진정인 단체의 입지가 열악해지자 공원환경정비등을 불미로 민원제기
 - ※ 유사한 민원을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면담시)에 제기, 조사한바 있음.
 - 국무조정실 자체보고(국무총리)자료 별첨

2. 민원관계자 면담

- 면 담 일 : 2007.10.19 17:00 ~ 18:20
- 장 소 : 합정동 로타리 합정마트2층 탑 커피숍(민원관계자 지정)
- 면 담 자 : 이 강 필(민원인 단체에서 위임한 외국인묘지공원 관리사무소장)
- 면담내용 : 민원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등

●●

자료 2007_A037 마포구청, 외국인묘지공원 관련 민원관계자 면담 및 검토결과(의견) 보고(녹지환경과,17779/2007.10)
 - 마포구청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합법적 소유자 및 관리권자로서 수목제거 등의 행위는 주어진 권리 아래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3. 세부민원내용 및 민원검토결과(의견)·면담자 의견

진정내용	민원검토	면담자 의견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소유토지이나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업상의 소유권과 공적인 시설 관리권은 구분되어야 함	-86.10.8:도시공원조성 시행완료 · 관리권자: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05.7:기독교백주년기념교회 추가 이용관리 (05.7월이전 유니온교회<진정인단체>에서 이용관리) -기독교백주년 기념교회는 외국인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권자(토지소유자)인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에서 구성된 하부조직으로 내부 관리위임은 적절함. (협의회 재단법인 정관 제4조<사업>참고)	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의 하부조직임을 인정하며 정관등에 설립목적등이 명백하다면 이는 적법하다는 입장
공원부지내에 불법건축물 신축	-우리구에서 기 적출하여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한바 있고,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예정	-유니온교회(진정인단체)에서 관리시에도 부득이한 시 설설치는 있었음 -추가발생한 통나무형태의 건축물 조치요망
토지의 형질변경	-잡목제거,주변환경정비 등 묘지관리차원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형질변경은 불가피함.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50cm미만의 절·성토 및 정지 등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때, -공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절·성토는 법률의 운영 및 공익에 현저하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자에게 행정 지도 예정. -또한,공원내 보도블럭 설치는 2004년 당시 외국인 묘지 공원측(현 진정인 단체)요청이 있어 우리구 (토목과)에서 일부 포장.	-유니온교회에서 관리시에는 월60만원에 외국인묘지 공원을 관리하여 왔음. -따라서, 공원환경이 열악 했던 것이 사실임. -진정인들은 지상권(묘지)을 주장하고 있는바, 묘지정비 및 수목제거시 사전에 진정인 들과 협의등의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였다는 의견

진정내용	우리구의견	면담자 의견
공원내 수목 벌채	-04.4:수목제거(비좁은 5층 13주) · 외국인묘지공원측(현 진정인 단체)의 요청에 의거 우리구에서 제거 -06.3:수목제거(비좁은1주) · 우리구 자체판단 제거 -06.11:수목제거(비좁은 1종 11주) ※ 토지관리자 -제거사유 · 묘지내 일조량 부족으로 분묘 및 주변잔디 고사로 인한 토사유실 및 경관저해 · 뿌리생장으로 분묘내 안장인사 유해손상 · 고령목으로 수목도복 우려 및 인근주택 일조권 침해 민원발생 -동 사항은 진정인 단체에서 관리하던 시설부터 공원 및 묘지관리차원에서 노령목 제거 -공원 및 묘지관리차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조치라 판단되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자에서 행정지도 예정	상기사항과 동일함
다량의 각종 물건적치	-상기와 같이 우리구에서 시행한 보도블럭 포장 및 공원환경정비시 자재를 임시적치한 사항으로 -현재는 물건적치사항 없음.	현재,물건적치사항이 없는 것을 인정
공원내 불법주차	-우리구에서 수차례 공원내 불법주차사항이 없도록 계도, - 관리자측에서도 불법주차 예방을 위하여 인근토지(주차장)을 임대 활용중에 있음. -따라서, 현재 불법주차는 감소된 상태로 관리자 에게 추가 행정지도 예정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요구

4. 향후조치계획

- 진정인이 지목한 행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우리구에서 도시공원 관리권자로 고시한바 있는(1986.10.2일자 공고) 토지소유자의 허부조직으로,
- 2005년 이전 진정인 단체에서 관리시에는 동 공원은 환경(조경사업)정비 부재로 공원환경이 열악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체계적인 관리정비로 공원환경 개선
- 공원환경 정비 및 묘지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및 수목벌채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 판단되며, 이는 도시공원 운영관리 및 공익에 현저하게 피해가 우려되지 않느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 건축물 증축은 기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기 급회 자진철거토록 계고 및 무단주차행위에 대하여도 주차행위를 금지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붙임 : 국무조정실 자체보고자료 1부. 끝.

<한국기독교 지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소송자료>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현재는 2007년 12월 제기한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의 소장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5년 한경직 목사와 언더우드3세가 중심이 되어 이룩한 양화진 토지의 증여 및 등기이전 과정을 '권원이 없는 자'들이 '편법'으로 '서로 공모'하여 추진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아름다운 협력정신으로 진행한 양화진 성지화 작업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진정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 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경성구미인묘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4
 대표자 Peter Underwood (한국명 원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유동원, 오대환, 신동선, 이덕형, 성현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2 순영빌딩 5층
 전화: (02) 584-2842~4 팩스: (02) 584-2845

피신청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9-37 서일빌딩 401호
 이사장 정 진 경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85. 6. 17. 접수 제445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1 -

 2009. 12. 23. 접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

 명 劉炳日·劉秉炫·吳大煥·成炫常·李德馨·申秉壹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4의2 순영빌딩 5층 (우)137-873
Tel (02) 584-2842~4 Fax (02) 584-2845 e-mail mbr@uritel.co.kr

● 자료 2008.D.006 경성구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1). 그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5. 3. 4. 합정동 144 외 14필지 14,287㎡(약 4,322평)의 소유권을 피신청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형식상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갑제6호증의 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신청인은 위 형식적으로 작성된 증여증서에 기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153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1985. 5. 8. 승소 확정판결을 얻어 등 판결의 집행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순차로 경료 하였습니다(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7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의제자백 판결에 따른 대위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 후 증여대상 토지 15필지 중 이 사건 토지(7필지)를 제외한 8필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에 따라 서울시에 수용이 되었고 신청인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갑제9호증의 1 내지 8).

- 6 -



辯護士 簡炳日·劉東炫·吳大煥·成炫常·李德馨·申東宣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4외2 순양빌딩 5층 (우)137-873
Tel (02) 584-2842~4 Fax (02) 584-2845 e-mail mbil@unitel.co.kr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

사 건 2010가합4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경성구미인모지회
피 고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을 추가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들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현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허위



법률사 閔炳日·吳大煥·李德馨·申東宣¹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4의 2 은양빌딩 5층 (우)137-873
Tel (02) 584-2842~4 Fax (02) 584-2845 e-mail mbll@unitel.co.kr

●●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모지회, (소유권 이적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2010.6)

의 의제자백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갑제7호증). 의제자백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외국인들로 구성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주변으로 지하철이 건설되면서 토지가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고, 원고는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토지법상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는데¹⁾, 국가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묘지의 사용·관리권만을 부여하고 소유권의 취득은 허가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갑제5호증의 1,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이러한 편법을 써서 미등기, 무허가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원고와 피고 역시 편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요컨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사용·관리권자이었음에도 피고와 공모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 외국인토지법(1994.1.7. 법률 제4726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인에 대한 특례) ①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인, 주주 또는 업무부 집행하는 임원의 판수이상, 자본의 반역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전조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허가 및 제한등)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지당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辯護士 閔炳日·吳大煥·李德馨·申東宣²⁾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포동 1554의 2 문양빌딩 5층 (우)137-873
Tel (02) 584-2842~4 Fax (02) 584-2845 e-mail mbil@unitel.co.kr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권원없는 자들에 의하여 마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 반사회적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이며, 이 사건 토지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될 것입니다(국유재산법 제6조).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 및 사용권을 부여하였고(갑제5호증의 2), 원고는 최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관리하여 왔습니다. 갑제5호증의 2는 내무부장관 명의의 공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묘지관리를 위한 토지사용과 관리권만은 계속 귀하를 비롯한 묘지연고자들에게 인정할 방침입니다”라는 문장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 문장은 “국가가 원고에게 과거 묘지관리를 위한 토지사용과 관리권을 부여하였으며 장래에도 계속 토지사용 및 관리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가는 원고에게 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관리권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목시적으로 승낙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일반재산은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한 계약(대부계약, 국유재산법 제2조 제8호)’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와 국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일



辯護士 閔炳日·吳大煥·李德馨·申東宣³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4의 2 호영빌딩 5층 (우)137-873
Tel (02) 584-2842~4 Fax (02) 584-2845 e-mail mbil@unitel.co.kr

<유니온교회의 양화진 내 불법 매장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유니온교회가 관리하던 시기에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버젓이 행해졌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실시한 양화진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조사에 의하면 양화진이 공원으로 지정된 1965년 이후부터 1986년까지 안장된 숫자가 66명이며, 1986년 이후에 안장된 이는 42명에 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것이다. 이외에도 유니온교회는 모두 37기의 묘지를 미리 예약받고 관련 비용을 받았다. 유니온교회는 이에 대해 묘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받은 것이라 하지만 이 시기에 양화진에 시신을 묻는 것은 불법이었다. 마포구청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명칭과 매장 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라는 명칭은 하위세부표기로서 교체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양화진 지역에서의 매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양화진선교사묘원 내 매장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Reserved Site>	
C-1	Clark Family
C-4	Clark Family
D-4	Moore Family
D-11	Widdowson Family
E-3	Kinsler Family
G-12,13	Hahn, Richard
H-3-A	Charles K. Bernheisel
J-7	Coen Family
L-3	Stokes Family
L-5	Shaw Family
L-8	Gorman Family
L-12	Bonwick Family
L-14	Il-han New(Yu) Family
LL-2	Galt Family
LL-12	Underwood Family
LL-14	Underwood, John T. and Jean W.
LL-21	Seventh Day Adventist Mission
LL-22	Seventh Day Adventist Mission
LL-23	Seventh Day Adventist Mission
LL-24	Seventh Day Adventist Mission
N-5	Pelkey Family
N-11	House Family
N-14	Murry Family
O-2	Avellone Family
O-4	Burns Family
O-6-1	Hale Family
O-22	Malone Family
O-33,34	Nelson Family
O-36-1	Floyd Kelnhoffer
O-38	Wife of Raess, John R. (2005. 8.16)
P-2	Gustin Family
P-8	Hervey Lane Family
R-3	Pitargue Family
R-4	Baptist Mission
R-5	Baptist Mission
R-7	Pak Family
R-12	Baptist Mission

● 자료 2005.D.024 양화진묘지 사전 매매 리스트 및 영수증(2005.12)

서울외국인묘지관리위원회
1대은인장사-국고
다른1대은보유권회보관

외국인장사
BURIAL APPLICATION

Type or Print
관계제출신시도

For SEOUL FOREIGNERS' CEMETERY
Seoul, Korea

Name: Julia Kim Hahn
이름
Date of Birth: July 11, 1920
생년월일
Place of Birth: Wailuku, Oahu, Hawaii
출생지
Residence: 경기도 의왕시 내산 2동
주소 (상주거주지)
Employment: Retired from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TEAM Mission)
직업

..... phone (.....)

Father's Name: Isidiah Kim Citizenship: U. S. A.
아버지 이름
Mother's Name: So Nam Sohn Citizenship: U. S. A.
어머니 이름

Date of Death: _____ Place of Death: _____
사망일
사망장소
Cause of Death: _____
사망원인
Attending Physician: _____
진료의사

Nearest Relative (Or official or person concerned with burial)
가장 가까운 친척 (장사할 때 관계 있는 사람)
name 이우정 relation - relative
이름
address 강남구 구반포 2동
주소
date _____ 02) _____
일

RECEIPT
영수증

Date of Burial: _____ Burial Plot Number: _____
장사일
장사할 곳 번호
Amount Paid: _____ Date Paid: _____
지불액
지불일

* 봉안료 197,000 원 받았습니다.
봉안료 197,000 원 받았습니다.

Member of Cemetery Committee
묘지위원회의 위원 (명:)

"당신의 작은 변화가 고객만족의 시작입니다."



마포구

Digital Mapo

수신자 마포구 합정동 467 동원한강파크빌 [redacted] 님
(경유)

제목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

1. 우리구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redacted]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redacted] 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합정동 소재 공원에 대한 문의 사항으로 공원이름은 외국인묘지공원으로 현재 명칭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표지판에 표기되어 있는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절두산 순교박물관은 하위 세부표기로 도로표지판을 교체 설치할 계획은 없으며,
3. 동 공원은 1965년 지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1985년 도시공원법 제6조(現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공원조성 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로서는 공원의 축소 및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4. 또한, 동 지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제15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매장(수목장 포함)이 불가한 지역이며 수목장은 현 행정상 규정된 장례제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원관리 : 녹지환경과(330-2681)과장 김재만, 담당팀장 최한규, 담당 이종일
 - 도로표지판 관리 : 교통행정과(330-2886) 과장 박도식, 담당팀장 권봉성, 담당 박천기
 - 매장에 관한사항 : 사회복지과(330-2625) 과장 정영열, 담당팀장 반경호, 담당 조광현
- 끝.

마포구



★담당자	이종일	공원팀장	최한규	녹지환경과장	전결 05/22
					김재만

협조자 담당자 이기선

시행 녹지환경과-8872 (2007.05.22.) 접수 ()
 우 121-711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577 (성산동 275-3) /http://www.mapo.seoul.kr
 전화 (02)330-2681 /전송 (02)330-2399 /jong2396@hanmail.net /공개

●●
자료 2007_A.035 마포구청, 민원사항(양화진묘지의 명칭 및 매장문제)에 대한 회신(2007.5.22)

"당신의 작은 변화가 고객만족의 시작입니다."



Digital Mapo

마포구

수신자 (재)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경유)

제목 양화진 외국인묘지공원에 관한 질의 회신

1.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 재단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기백 07-023호(2007.12.3) "양화진 외국인묘지공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설치된 외국인묘지에 대하여서는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에 "본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890년대에 설치된 "기존묘지인 외국인묘지"에 대해서 묘지설치허가는 「불필요하다」 할 것이며,

2) 도시공원인 양화진 외국인묘지공원내의 신규매장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의 "묘지설치 제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도시공원))" 으로서 신규 매장이 불가 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마포구



★담당자 이덕상 노인시설팀장 반경호 사회복지과장 12/06 정영열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25019 (2007.12.06.) 접수 ()
우 121-7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567 (성산동 275-3) <http://www.mapo.go.kr/organ/sabok/index.html>
전화 330-2627 /전송 330-2629 /kkuds@hanmail.net / 공개

●●●
자료 2007,A,038 마포구청, 양화진묘지공원에 대한 회신(2007,12,6)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

(2010.7.8 현재)

묘역구분	선교사	선교사 가족	선교사 소계	일반인	미확인	기타 소계	계
A-C	53	37	90	46	23	69	159
D-F	27	18	45	51	6	57	102
G-I	10	-	10	143	1	144	154
기타			-	2	-	2	2
계	90	55	145	242	30	272	417

1) 성공회 묘역 어린이 안장자 수는 미확인 불포함(80명 내외 추정).
 2) 일반인과 미확인 안장자 중 선교사 관련 안장자 여부 지속 확인중.
 3) 미확인 안장자는 unmarked 25명, unknown 5명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묘지 조성시기별 현황

(2010.7.8 조사)

시기	안장자 수 (선교사/일반인)	안장 선교사
1890.7~1910.8(구한말)	57(41/16)	Bell, W. I.(A-49), Gale, H. G.(Heron/C-21), Gifford, D. L. 7 M. H.(B-36), Hal, W. J.(C-19), Jacobson, A. P.(C-01), Heron, J. W.(C-21), Kendrick, R. R.(B-09), Mckenzie, A. P.(B-38), Miller, A. R.(A-69), Moore, S. F.(A-24), paine, J. O.(B-42), Scranton, M. F.(B-44) 등
1910.9~1945.8(일제시대)	82(59/23)	Brockman, F. M.(B-16)/Bunker, D. A. & A. E.(A-22)/Campbell, J. E. p.(B-08)/Chaffin, V. D.(A-20)/Hirst, S. B.(A-43)/Hodges, C. H.(B-06)/Logan, M. L.(D-10)/Pieters, E.F.(A-33)/Turner, A. B.(B-07)/Underwood, H. G. & L. S. H.(F-25)/Welbon, A. G.(A-51) 등
1945.9~1965.8(공원 이전)	89(16/73)	Appenzeller, A. R.(B-37)/Appenzeller, H. D.(C-12)/Avison, D. B.(F-47)/Genso, J. F. & M. R.(A-28)/Hall, R. S.(C-19)/Hulbert, H. B.(B-07)/Jensen, A. K.(C-05)/Soda Galchi(C-20)/Underwood, E. V. W.(F-24)/Underwood, H. H.(F-25)/Widdowson, M.(A-31) 등
1966~1986.10(협의회 이전)	66(13/53)	Avison, K. I.(F-48)/Chadwell, A. E.(B-08)/Chaffin, A. B.(A-20)/Moore, J. H.(B-25)/Reynolds, J. B.(A-46)/Shaw, W. E. & A. H.(F-21)/Stokes, A. A.(F-17)/Underwood, J. V. D.(F-27) 등
1986.11~2005.7(유니온교회)	42(16/26)	Underwood, H. G. II(F-29)/Underwood, G. C.(F-31)/Rue, G. H.(F-42)/Ellison, M. K.(H-05)/Appenzeller, R. N.(C-12)/Bourns, B. V.(F-02)/Kinsler, F. & D. W.(B-32)/Jensen, M. K.(C-03)/Jensen, C. L.(C-04)/Hall, S. & M. B.(C-19)/Baird, W. H. & R. H.(F-19)/Goodwin, C.(B-14)/Reavis, E. J.(B-26)
조성시기(사망시기) 미상	81(-/81)	
계	417(145/272)	

자료 2010.C.012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 안장자 현황(2010.7.1)



●●●●●
불법 매장된 유골함 이장
 - 유니온교회로부터 묘지를 예약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므로 매장하지 말라는 이유로 100주년협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유골함을 매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100주년협의회는 유족에게 이장을 요청했으나 유족들은 3개월만에 경찰 입회 아래 불법 매장된 유골함을 옮겼다. 이러한 불상사는 유니온교회 측이 불법적인 매장예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니온교회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료〉

유니온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신교 예배를 드린 교회로서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선교사 후손이 참석하며 정통성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1992년 이후 유니온교회의 교인 수는 150명 내외였고, 제직은 7명~18명이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제직 중 양화진선교사모원과 관련이 있는 선교사 후손은 없으며,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모두 유니온교회의 제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또, 2006년 유니온교회 교인명부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p>유니온교회의 제직 명단(1992~2006)</p> <p>1992년 (교인수 : 장년 153명/여원이 50명) Horace Underwood, Paul Hepworth, Paul Blankinship, Marlin Nelson, James Aldrich, Jim Comelson, Evy Jenkins, John Pershe, Jarry & Babara Sandos, J. P. Reder, Junathan Borden, John Rita Kary, Serutan-Wilson, Mark Capin, Merrill Guldos, Edie Moon, Babara Pak</p> <p>1993년 (교인수 : 장년 160명/여원이 50명) Horace Underwood, Peter Capone, Young Yoon, J. P. Reder, Mark Capin, Ray Purvis, Amy Tan, Carol Mitchell, Jim Comelson, Jarry Sandos, Royce Brunk, Christa Robbe, Carl Texter, Babara Pak, Sirae Pak, Priscilla Kumpe, Gail Mattews, Edie Moon</p> <p>1995년 (교인수 : 장년 200명/여원이 70명) Emmanuel Appiah, Lance David, Don Edwards, Horace Underwood, Coleen Taylor, Johnny Chung, Edie Moon, Lois McCracken, Nancy Underwood, Julian Aman, Lee & Robin Parsons, Bob Aman, David Gilmore, Jerry Sandos</p> <p>1996년 (교인수 : 장년 200명/여원이 50명) Don Edwards, Horace Underwood, Coleen Taylor, Keith & leigh Ann Wayne, Edie Moon, Lee & Robin Parsons, Nancy Underwood, David Gilmore, Lois McCracken, Kerm Gingerrich</p> <p>1998년(교인수 : 장년 150명/여원이 50명) Rob Black, Horace Underwood, Bryan Alkema, Helen Rader, Bell & Vickie Coutts, Jeremy Van Jay Reinhardt, Nancy Underwood, Sue & Derek Ddwards, John Hanrahan, David Gilmore, George & Mabel Skesdiang, Chris & Yvonne Chov, Greg & Aeines Hendrix</p> <p>1999년 (교인수 : 장년 160명/여원이 50명) Rob Black, Horace Underwood, Bryan Alkema, Helen Rader, Bryan & laurie Bestvater, John Hanrahan, Jay Reinhardt, Sue & Derek Ddwards, Kris & Sarah Kappler, Mike & gail Benton, Mark Pratt</p> <p>2000년 (교인수 : 장년 160명/여원이 50명) Rob Black, Horace Underwood, Bryan Alkema, Helen Rader, Mark Pratt, Jonathan Borden, Paul Johnston, Nancy Underwood, David Busch, Andrew Ford, Mike & gail Benton, Chung Soo Kim</p> <p>2001년 (교인수 : 장년 160명/여원이 50명) Rob Black, Horace Underwood, Allison Rootsey, Jonathan Borden, Mark Pratt,</p>

● 자료 2005.E.025 유니온교회의 교역자, 제직 명단 자료(1886~2005)

Helen Rader, Andrew & Christine Ford, Nancy Underwood, David Busch, Prince Charles, Chung Soo Kim

2002년 (교인수 : 장년 160명/어린이 50명)

Rob Black, Richard Briggs, Allison Rootsey, Lee Parsons, Jonathan Borden, Gary & Laurie Small, Horace Underwood, Nancy Underwood, Jeff & Debbie Dehaven, Prince Charles, Helen Rader, Jack & Edie Moon

2003년 (교인수 : 장년 160명/어린이 50명)

Richard Briggs, Allison Rootsey, J. P. Rader, Jonathan Borden, June Bryd, Prince Charles, Crystal Hardin, Jeff Dehaven

2005년 (교인수 : 장년 160명/어린이 50명)

Richard Briggs, Sandra Black, Valerie Briggs, Rob Black, Craig Gingerich, Brian Leising, Tom Thompson

2006년 (교인수 : 장년 150명/어린이 50명)

Gabriel Horvath, Jean Wood, J. P. Rader, Barry Bengier, Jim Milliken, Jon Hill, Chung Soo Kim, John Kim, Chris Vaia, Shelley Foster, Bill Foster, Helen Rader

-이 자료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유니온교회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정기 이사회에 제출한 교회현황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것임.

Seoul Union Church General Meeting

1. 성원보고 (개회 13' : 22)

< 유니온교회 : Prince >

지금부터 Seoul Union Church General Meeting을 위하여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제적 인원 66명중 현재 참석 인원 56명, 서면결의서 접수자 7명을 포함한 6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조합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곧 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Opening Prayer

3. 안건 심의

제1호 의안 : Change to By Laws

< 유니온교회 : Prince >

외국인이 자기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못하니깐 한경직 목사님이 100주년 교회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을 때 100주년 교회가 우리의 요구대로 다 지어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엌시설도 우리가 다 설계를 했습니다. 예산의 50%를 유지·관리하였고, 저기 앉아계신 이강필 선생님이 14세부터 70세까지 56년 동안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

회의록 1

●●
자료 2007.E.005.X 유니온교회, 교인 총회 회의록(2007.6.3)

- 유니온교회는 2007년 6월3일, 교인총회를 열고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분리시키고, 양화진선교사모원의 소유권을 묘지회에 양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교인총회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즉, 이날 총회에는 전체 교인 66명 중 56명이 현장 참석하고 7명이 서면결의하여 모두 63명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유니온교회가 발행한 교회요람(Directory 2006)에 의하면, 교인 총수는 190명, 이중 성인교인은 150여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총회 회의록이 정확하다면, 유니온교회의 교인수는 지금까지 과장된 것이고, 2006년 요람이 정확하다면, 1년 사이에 교인 수가 1/3로 줄었거나 총회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된다.

- 중 략 -

< 사 회 : 원덕한 >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성구미묘지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외교관, 선교사, 후손 여러 대표들이 경성구미 구라파하고 미국인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유니온 교회보고 우리를 흡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hange to Seoul Union Church Bylaws

Current

1. h. The Facilities, Cemetery and Property Maintenance Ministry Team shall supervise the operation of the Memorial Building and the Foreigners' Cemetery. Its responsibilities include the cemetery, the church building and grounds, kitchen repairs, and caretaker logistics.

(Revised : May 4, 1991; May 1, 1994; May 26, 2002; Nov. 24, 2003; May 14, 2006)

Proposed

1. h. The Facilities, Cemetery and Property Maintenance Ministry Team shall supervise the operation of the Memorial Building and the Foreigners' Cemetery (including grounds, kitchen repairs, and caretaker logistics) in cooperation with the Kyung Sung European American Cemetery Association (KSEACA) as long as the Church continues to meet at the Memorial Building at the Foreigners' Cemetery.

< Peter >

회의록

경성구미묘지는 훨씬 이전에 존재해 있던 유니온 교회에 1985년경 흡수되어 있었는데, 다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성구미묘지는 후손들이 대표성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유니온 교회와 다시 나뉘는 것에 대하여, 즉 경성구미묘지만 따로 우리한테 관리를 맡기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총 재적 인원 66명중 찬성 56명, 서면결의 7명을 포함한 6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4. Closing Prayer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료〉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는 해산된(유니온교회에 흡수된) 조직이었다. 단지, 양화진선교사 묘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주장하는 정관을 보거나, 분리를 결의한 유니온교회 교인총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현재의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과거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승계한 조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한글로 된 ‘경성구미인묘지회 정관’과 영문으로 된 ‘Articles of Seoul Occidentals Cemetery Association’ 에는 모두 1980년 3월10일자로 제정(또는 개정)된 자료라고 쓰여 있다. 한글 정관은 1980년 3월10일 작성된 것으로 사본이 존재하며, 영문 정관은 2007년 양화진 등기이전 무효소송에 제출된 자료로서 2007년에 작성(typing)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4조의 회원 규정을 보면, 한글정관은 ‘유니온 교회의 교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영문은 ‘member of seoul Union Church and the surviving family and/or relatives of foreigners’ cemetery’로서, 유니온교회 교인 뿐만 아니라 안장자의 살아 있는 가족이나 친척까지로 그 범위를 넓혔다. 이는 명백히 영문 정관이 추후에 조작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원래 정관으로는 회원자격이 없는 자(유니온교회 교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글 정관 14조에는 ‘경비는 교인, 유자, 유족들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문 정관 14조에는 ‘deceased(고인:故人)’ 등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한글 ‘교인’을 ‘고인’으로 잘못 읽어 오역한 것이다.

경성구미인모지회

정 관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경성구미인 모지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1890년 7월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로부터 구미인의 모지로서 하사받은 이후 현재 까지 경성구미인 모지회의 회원모지토 사용되어 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 소재하는 외국인모지 공원의 소유보전과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에 둔다.

제 4 조 (회 원)

본 회의 회원은 서울외국인교회 (Seoul Union Church)의 교인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위원의 선임, 예산책정, 사업계획 등 기본안건을 결의한다.

●
자료 1980.D.001 경성구미인모지회 정관. 한글(1930.3.10)

- 중략 -

제 14 조 (경비)

본 회의 통상경비는 서울외국인고회의 예산의 한 계정으로 수립하여 고인들의 헌금으로 충당하며 특별히 요하는 경비는 고인, 유지들과 유족들의 특별찬조금으로써 충당한다.

- 중략 -

제 18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9 조 (개정)

본 정관은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정관개정에 대한 총회의 결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0 조 (정관작성인)

본 회의 정관작성인의 성명, 주소는 다음과 같다.

이를 증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1980년 3월 10일 작성하다.

정관작성인 성명

정관작성인 주소

Articles of Seoul Occidentals Cemetery Association

Article 1 (Name)

The name of this Association is in the language to Korean language, "Kyseongsung Gumiin Myoji Hoe" and in the English, "Seoul Occidentals Cemetery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ociation").

Article 2 (Object)

The Association has the objects of protecting the property of the foreign park cemetery and administrating it located at Hapjeong-dong, Mapo-gu, Seoul, South Korea, where has been used as the membership cemetery of "Seoul Occidentals Cemetery Association" since the Emperor Gojong of the Republic of Korea bestowed as the cemetery for Occidentals on July 1890.

Article 3 (Office)

The Office of this Association shall be located at 144, Hapjeong-dong, Mapo-gu, Seoul, Korea.

Article 4 (Membership)

The qualifications of this Association's member shall be the member of Seoul Union Church and the surviving family and/or relatives of foreigners' cemetery located at Hapjeong-dong, Mapo-gu, Seoul.

Article 5 (General Meeting of Membership)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hip shall resolve the basic matters, such as the election of a committee, the compilation of the budget, business plan, etc.

● ●

자료 1980.D.002 Articles of Seoul Occidentals Cemetery Association(1980.3.10)

- 중 략 -

Article 14 (Expenses)

The ordinary expenses of this Association, placed to a title of account of the budget of "Seoul Union Church," shall be financed by charitable donations from the deceased and the extraordinary expenses shall be financed by the special contribution from the deceased, those interested, and/or the bereaved family.

- 중 략 -

Article 18 (Fiscal Year)

The fiscal year of this Association shall be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every year.

Article 19 (Amendment)

The Articles may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membership. The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membership for amending the Articles shall be made by the approval of two-third of membership.

Article 20 (Makers of Articles)

The makers' names and addresses of the Articles are as follows:

In Witness Whereof, this Articles is made and executed on March 10, 1980.

Kyung sung European American Cemetery Association General Meeting.

1. Opening Prayer

2. 안건 심의

제1호 의안 : Change to the Constitution

a) Article 10: Executive Committee

제2호 의안 : Election of new Executive Committee

제3호 의안 : Changes to the Constitution

a) Article 12: Term of Office

b) Article 14: Expenses

c) Article 4: Membership

< 사 회 : 원택한 >

저는 정확히 68년 전 유니온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2차 대전과 6.25전쟁 때를 제외하면 계속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나한테 특별하고 묘지도 내 마음에 특별합니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강에서 마포나룻배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였는데, 지금은 다니지 못합니다.

회의록

●●●
자료 2007.D.006.X 경성구미인묘지회, 총회 회의록(2007.6.3)

하였습니다.

Changes to the Constitution

3.c) Membership

Article 4(Membership)

Membership in the Association shall be the members of Seoul Union Church.

Article 4(Membership)

Membership in the Association shall be open to relatives and descendents of individuals buried at the foreigner's cemetery in Hapjung-dong, Mapo-ku, Seoul and related parties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cemetery. Membership shall be conferred the preservation of the cemetery. Membership shall be conferred to eligible applicants upon approval by the Executive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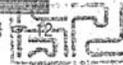
Changes to the Constitution

3.c) Membership

Article 4(Membership)

Membership in the Association shall be the members of Seoul Union Church and relatives and descendents of individuals buried at the foreigner's cemetery in Hapjung-dong, Mapo-ku, Seoul and related parties.

회의록



Article 4(Membership)

Membership in the Association shall be open to relatives and descendents of individuals buried at the foreigner's cemetery in Hapjung-dong, Mapo-ku, Seoul and related parties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cemetery. Membership shall be conferred to eligible applicants upon approval by the Executive Committee.

< Peter >

우리가 한국 기독교 단체, 즉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소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교회가 직접 소송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경성구미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 인요한 >

우리가 불법으로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100주년 교회는 나무도 베고, 가건물도 짓고, 무허가 건물도 3개나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건수가 더 많습니다.

< Peter >

200년 후 한국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죽었을 때 묘지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 사 회 : 원덕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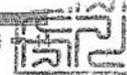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문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적 인원 66명중 찬성 53명, 서면결의 7명을 포함한 60명이 찬성
하였습니다.

4. Closing Pr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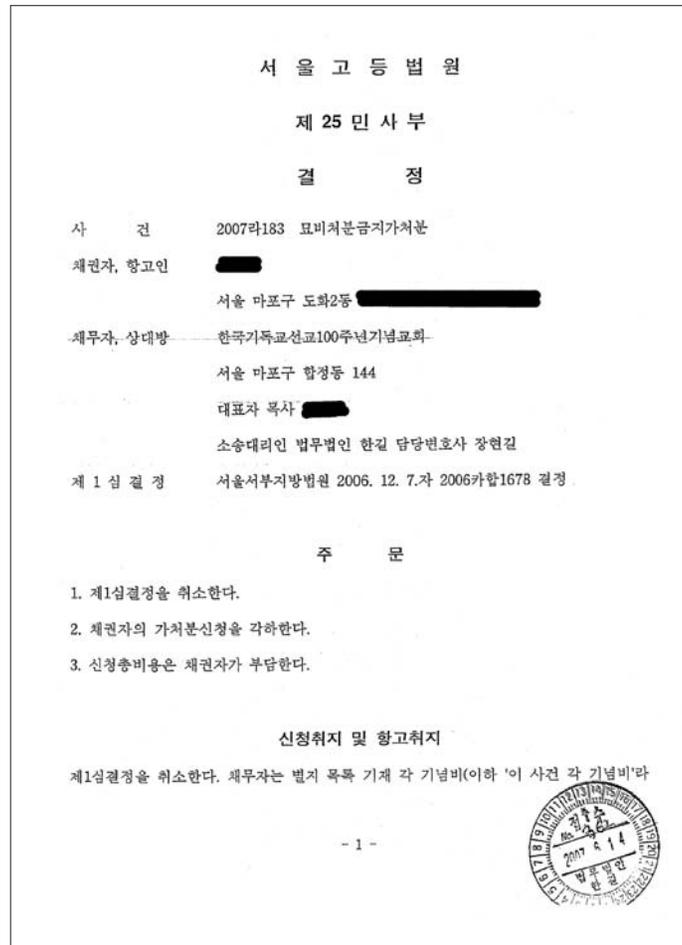
(폐회 15 : 14)

회의록



〈양화진선교사모원 내 불법 기념비 철거가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모원을 관리하면서 모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기념비 등을 정리했다. 대부분 취지에 공감하여 자진 철거나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일부는 이 조치에 반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인정했다.



● 자료 2007.A.008 서울고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항고) 결정문(2006.12)

고 한다)에 관하여 이전, 정리, 파손,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5-3 묘지 6,177㎡(이하 '이 사건 묘원'이라고 한다)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양화진의국인선교사묘원의 일부로서, 1985. 6. 17. 재단법인 한국 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재단법인은 2005. 7.경 채무자 교회에게 이 사건 묘원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채무자 교회는 내부 관리규정을 두어 이 사건 묘원을 관리하여 왔다.

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교동교회는 2002. 4. 10.경 이 사건 묘원에 설치된 헤이든 기포드의 묘 부근에 이 사건 1 기념비를, 최봉인의 묘 부근에 이 사건 2 기념비를 각 설치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우이중앙교회는 2005. 8. 28.경 이 사건 묘원에 설치된 왈터 존슨의 묘 부근에 이 사건 3 기념비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각 기념비는 모두 채권자의 후원하에 설치된 것으로서 위 각 기념비의 뒷면에는 '건립후원자 신호철 장로'라는 문구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2.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적법 여부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헤이든 기포드, 최봉인, 왈터 존슨의 묘에 관하여 적법한 관리권 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는 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기념비를 설치하였으므로 위 각 기념비를 유지, 관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채무자는 아무 권한 없이 위 서교동

교회 및 우이중앙교회 등에 대하여 위 각 기념비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위 각 기념비를 철거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가처분신청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6. 12. 27.경 이 사건 각 기념비를 위 각 묘지 부근에서 철거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기념비에 대한 철거, 이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8.

재판장 판사 길기봉

 판사 차행진

 판사 송인권

기념비 목록

1.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5-3 묘지 6,177㎡ 지상 헤이든 기포드 기념비
2. 위 지상 최봉인 장로 기념비
3. 위 지상 존슨 선교사 기념비. 끝.

<이재철 목사의 선교기념관 대관요청 편지>

이재철 목사가 주님의교회를 개척한 직후 예배처소를 구하기 위해 선교기념관의 임대사용에 대해 유니온교회에 문의한 서신이다. 이 편지를 예정통합교단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이재철 목사가 양화진에 진입하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개척교회 교역자가 합당한 예배처소를 찾기 위해 문의한 서신을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당시 유니온교회는 한국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The Lord's Church
September 20, 1988
To: Seoul Union Church Council
Via: Robert Souer, Chairman
Cemetery-Property Committee
Subject: Request for use of Seoul Union Church Building
First of all my thanks for giving of your precious time yesterday. As I said orally then, we would like to request use of the Seoul Union Church building as indicated below, and we humbly request that you consider our request.
1. The church making the request: The Korean Jesus Presbyterian (Hap-dong) The Lord's Church is making the request.
2. Background of 'The Lord's Church: "The Lord's Church" was started on June 16, 1968. In order to witness to and put in practice the gospel and love of Jesus Christ 50% of the church budget is to be used for 'missions and relief', and already we have promised to build a church in the fishing island of Myodo. At present about 80 persons are meeting weekly for service.
3. Background on myself: I was born in Pusan on April 11, 1949 and am at present the pastor of "The Lord's Church". My name is Lee Chai Chel. In February of 1971 I graduated from the French Dept. of the Korean Foreign Language College and was employed by an air line in the Netherlands until 1974. In 1974 I organized the Hong Song Company and was involved in airlines and printing until 1983 when I entered the graduate school of the Presbyterian Seminary from which school I graduated early this year. At present I am serving as an educational evangelist for YoungAe Church and am also in charge of 'The Lord's Church'. From January 1 next year I will be giving full time to "The Lord's Church".
4. The reason for asking for use of the Seoul Union Church Building
At present we are worshipping in the training room of the Young Women's Educational Building in Hannam Dong. While we had no problems at first when there were about 20 persons gathering, all of a sudden the numbers greatly increased and as this place is not a church we started to run into many problems. Among the problems the greatest is that because the owner of the building is Buddhist we can not hold daybreak prayer meetings, and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facility we can not establish a Sunday school.
And so some of the members are saying we should secure a building in Kangnam and move out of Hannam Dong, but I as the pastor have asked them to delay a decision.
I want to emphasize to my people that a church is not made of bricks but is built on true love and service. And so as a church that is only three months old, I would like to emphasize to my people that we should first show our love for others by investing more for others even if it means we have to rent space for ourselves for a period.
It happens that my home is just across from Seoul Union Church and two or three times a week I stroll through the Church grounds. And it bothers me each time as I see the doors of the church closed.
And at the same time as 'The Lord's Church' needs a place of worship, I am making this irrational request. If we could worship in these holy

● 자료 1988.C.003 이재철 목사가유니온교회에 선교기념관 건물 임대 사용을 요청한 편지 (1988.9.20)

precincts where missionaries preached the Gospel there could be no greater joy than this.

5. Desired time of use: we would like to hold Sunday service (after the Seoul Union Church services), Sunday evening worship, Wednesday worship, and daybreak worship every day. And that is not all, prayer meetings during the week, youth meetings, etc. there are many things we would like to do. Therefore if possible, we would like to use all the time when the Seoul Union Church is not using the building.

6. Rent: We will pay for all of the electric, water, heating cooling, cleaning expenses as set by the Seoul Union Church. And we will replace all materials and facilities damaged through our use. In addition we will share in other needed expenses as agreed upon.

I realize just how irrational this request that I present to you may sound. But if it is in the will of the Lord, I believe the Lord will inspire the hearts of your church committee members and if that faith I write this letter. I place this before you in hope that our simple prayer may become a realization and that much joy may come to many belie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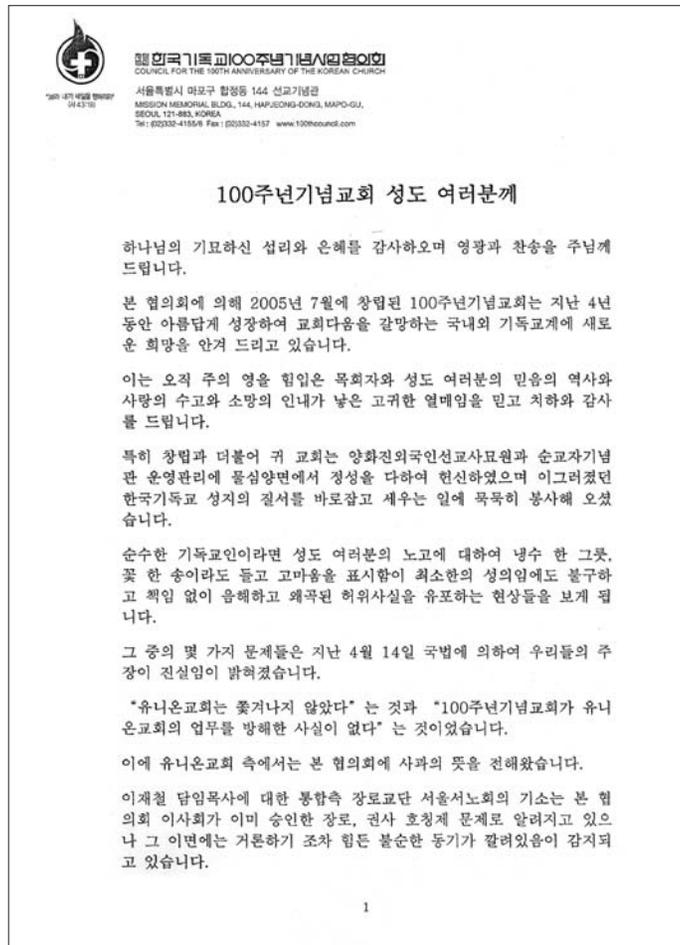
I pray for the Lord's richest blessings to be on the members of Seoul Union Church, their committee members and the Chairman.

The Lord's Church
Evangelist Lee Jae Chol

377-9 Hapchong Dong, Mapo Ku, Seoul
Telephone: Home 333-4893
Office 333-5161

〈유언이 된 정진경 목사님의 서신〉

한경직 목사, 강원룡 목사에 이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3대 이사장으로 헌신한 정진경 목사가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양화진선교사모원을 성지로 가꾼 성도들이 겪는 고통에 마음 아파하며 위로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자료 2009.B.027 정진경,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에게(편자유언장/2009.8.27)

성도 여러분, 100주년기념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협의회는 “후견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긴다” 고 명시한 기본방침
에 따라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이룩한 100주년기념사업의 정신과 유
산, 유적을 보존, 전승하고”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고 개혁의 비전
을 가꾸는 깨어있는 교회를 지향” 하는 창립정신이 바로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100주년기념교회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음을 우리 이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진실과 공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교회를 위해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과 100
주년기념교회,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
다.

2009년 8월 28일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장 정진경



〈부록 2〉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장 선교사 현황

2010년 7월 1일 100주년기념교회 조사 결과

No-	이름		한글이름	성별	출생일	소천일	국적	교단	구분	묘비번호
1	Akerholm	Earland	옥거흠(玉居欵)	남성	1888.03.13	1920.03.15	스웨덴	구세군	선교사	D-20
2	Anderson	Lillian Beede		여성	1892.08.15	1934.11.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F-39
3	Appenzeller	Alice Rebecca	아편설래(亞篇薛羅)	여성	1885.11.09	1950.02.20	미국	감리교	선교사 (교육)	B-37
4	Appenzeller	Henry Dodge	아편설래(亞篇薛羅)	남성	1889.11.06	1953.12.01	미국	감리회	선교사 (교육)	C-12
5	Appenzeller	Ruth Noble		여성	1894.06.14	1986.11.25	미국	감리회	선교사	C-12
6	Avison	Douglas Bray		남성	1893.07.22	1952.08.04	캐나다	북장로회	선교사 (의료)	F-47
7	Avison	Kathleen Isabel		여성	1898.08.10	1985.08.06	캐나다	북장로회	선교사	F-48
8	Bair	Blanche Rosa	백의례 (裴義禮)	여성	1888.	1938.03.10	미국	감리회	선교사	A-21
9	Baird	Richard H.	백의취 (裴義就)	남성	1898.09.01	1995.01.01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F-19
10	Baird	William M.	백의림 (裴義林)	남성	1897.02.07	1987.08.05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F-19
11	Barnhart	Barton Jack		남성	1924.02.10	1925.03.13	미국		선교사 자녀	B-06
12	Bell	L. L. Withespoon		여성	1867.05.13	1901.04.12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A-49
13	Billings	Helen Elizabeth		여성	1914.10.06	1921.06.08	미국		선교사 자녀	F-40
14	Blair	Honora McClure		남성	1910.	1919.	미국		선교사 자녀	B-17
15	Bonwick	Cathie		여성	1914.04.28	1927.09.06	영국	구세군	선교사 자녀	F-32
16	Bourns	Beulah V.	보은수(普恩授)	여성	1906.03.28	1990.03.28	캐나다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 (의료)	F-02
17	Brien	Daniel Henry	부라인	남성	1856.09.23	1940.06.30	미국		선교사 (의료)	A-37
18	Brockman	Barbara		여성	1914.	1922.	미국		선교사 자녀	B-14
19	Brockman	Frank Marion	파락만 (巴樂萬)	남성	1878.	1929.06.10	미국	YMCA	선교사	B-16
20	Brockman	W. A.		여성	1840.02.26	1915.03.07	미국		선교사 어머니	B-15
21	Bunker	Annie Eilers	방거부인(房巨夫人)	여성	1860.08.31	1938.10.08	미국	북장로회, 감리회	선교사 (의료)	A-22
22	Bunker	Dalzell A.	방거 (房巨)	남성	1853.08.10	1932.11.28	미국	북장로회, 감리회	선교사 (교육)	A-22
23	Campbell	J. Eaton Peel	강모인(姜慕仁)	여성	1853.04.01	1920.11.12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교육)	B-08
24	Cartwright	Stephen Hayter		남성	1874.	1909.06.23	캐나다	성공회	선교사	I-16
25	Chadwell	Arther Ernest	차에덕 (車愛德)	남성	1892.08.01	1967.11.21	영국	성공회	선교사	I-08
26	Chaffin	Anna B.	채부인(蔡富仁)	여성	1883.	1977.	미국	감리회	선교사 (교육)	A-20
27	Chaffin	Victor D.	채피득 (蔡彼得)	남성	1881.	1916.06.05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20
28	Clark	Burton		남성	1903.04.03	1904.12.21	미국		선교사 자녀	B-22
29	Clark	Gordon		남성	1905.	1905.	미국		선교사 자녀	B-22
30	Coen	Miles Stanley		남성		1919.	미국		선교사 자녀	D-09
31	Cram	N. McDonald		남성	1903.10.05	1905.03.22	미국		선교사 자녀	B-12
32	Denio	Sproulie H.	전리오(田理梧)	남성	1910.01.18	1964.06.10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H-49
33	Durack	Julia Agnes		여성	1925.	1974.	미국	가톨릭	선교사	F-07
34	Ellison	Milbra Kathryn		여성	1909.01.22	1990.10.10			선교사	H-05
35	Fox	Norman		남성	1928.	1930.	호주		선교사 자녀	F-45
36	French	Lincoln		남성	1898.03.01	1923.04.18	미국		선교사 자녀	D-11
37	Frick	Jenny Sofia		여성	1886.08.16	1912.04.29	스웨덴	구세군	선교사	A-12

No-	이름	한글이름	성별	출생일	소천일	국적	교단	구분	묘비번호	
38	Gale	Hattie G.	여성	1860.	1908.03.29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C-21	
39	Gale	James McDowell	남성		1914.11.	캐나다		선교사 자녀	C-22	
40	Gale	Vivian Scarth	남성	1916.02.14	1917.08.07	캐나다		선교사 자녀	D-08	
41	Galt	Edith Julia	고미옥(高美玉)	여성	1917.05.01	1961.05.23	미국	CWS	선교사	F-14
42	Gamble	B. A. Jenkins	여성	1879.08.05	1927.01.14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B-13	
43	Genso	John Frederick	김소(金昭)	남성	1884.	1951.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28
44	Genso	John Rittgers	남성	1911.	1914.	미국		선교사 자녀	A-28	
45	Genso	Mable Rittgers	여성		1957.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28	
46	Gerdine	Joseph Lumpkin Jr.	남성	1915.11.19	1915.11.20	미국		선교사 자녀	B-11	
47	Gifford	Daniel Lyman	기보(奇普)	남성	1861.01.09	1900.04.1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B-36
48	Gifford	Mary Hayden	기보부인(奇普부인)	여성	1857.08.23	1900.05.05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교육)	B-36
49	Gillett	(Baby)	여성	1905.	1905.	미국		선교사 자녀	B-18	
50	Goodwin	Charles	구두인(具斗仁)	남성	1913.05.05	1997.06.28	미국	성공회	선교사 (교육)	I-14
51	Greenfield	Maude Saxe	여성	1874.	191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29	
52	Hall	Edith Margaret	여성	1895.	1898.	미국		선교사 자녀	C-19	
53	Hall	Frank Sherwood	남성	1934.	1934.	미국		선교사 자녀	C-19	
54	Hall	M. Bottomley	여성	1896.06.21	1991.09.19	미국		선교사	C-19	
55	Hall	R. Sherwood	여성	1865.09.19	1951.04.05	미국	감리회	선교사 (의료)	C-19	
56	Hall	Sherwood	남성	1893.11.10	1991.	캐나다	감리회	선교사 (의료)	C-19	
57	Hall	William James	하락(賀樂), 홀(忽)	남성	1860.01.16	1894.11.24	캐나다	감리회	선교사 (의료)	C-19
58	Hardie	Marie	여성	1893.08.09	1893.08.10	캐나다		선교사 자녀	B-02	
59	Hardie	Margaret Joy	여성	1903.09.01	1909.02.10	캐나다		선교사 자녀	B-02	
60	Heron	John W.	헤론(惠論)	남성	1856.	189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의료)	C-21
61	Hill	Florence	여성	1891.	1922.01.05	영국	구세군	선교사	D-19	
62	Hill	Wilfred	남성			영국		선교사 자녀	D-18	
63	Hillman	Mary R.	여성	1870.04.21	1928.02.01	미국	감리회	선교사	B-43	
64	Hirst	Carol	여성	1920.11.15	1924.	미국		선교사 자녀	A-44	
65	Hirst	S. Belle Harbaugh	여성	1875.03.28	1928.02.19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43	
66	Hobbs	B. Eller Puch	여성	1880.08.24	1934.04.08	영국	구세군, BFBS	선교사	D-15	
67	Hodges	Cecil H. Noble	허세실(許世實)	남성		1926.04.21	영국	성공회	선교사	I-06
68	Hulbert	Homer Bezaleel	홀벌(訖法)	남성	1863.01.26	1949.08.05	미국	감리회	선교사	B-07
69	Hulbert	Sheldon	남성	1896.02	1897.03	미국		선교사 자녀	A-57	
70	Jacobsen	Anna P.	아각선(雅各善)	여성	1868.	1897.01.2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의료)	C-01
71	Jensen	Anders Kristian	전선(全善)	남성	1897.03.14	1956.11.20	미국	감리회	선교사	C-05
72	Jensen	Clair Lee	여성	1929.	1996.	미국		선교사 자녀	C-04	
73	Jensen	Maud Keister	여성	1904.09.27	1998.10.12	미국	감리회	선교사	C-03	
74	Johnson	Walter Virgil	남성	1874.08.30	1903.03.18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B-39	

No-	이름		한글이름	성별	출생일	소천일	국적	교단	구분	묘비번호
75	Kendrick	Ruby Rachael		여성	1883.01.28	1908.08.15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B-09
76	Kenmure	A. Gordon		남성	1896.09.10	1897.01.01	영국		선교사 자녀	B-46
77	Kilbourne	Kathleen Ann		여성	1950.05.06	1950.05.08	미국		선교사 자녀	D-13
78	Kinsler	D. Woodruff	권도희	여성	1907.06.20	2001.03.14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B-32
79	Kinsler	Francis	권세열(權世烈)	남성	1904.01.13	1992.01.09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교육)	B-32
80	Kohler	Magda	고월리(高月麗)	여성	1887.06.18	1913.05.23	스웨덴	구세군	선교사	F-44
81	Lewis	Ella A.	유익선	여성	1863.10.27	1927.09.14	미국	감리회	선교사	C-24
82	Livesay	M. Gwynneth		여성	1933.07.19	1934.04.10	미국		선교사 자녀	A-32
83	Lois	Lay S.		여성	1854.	1899.	영국	성공회	선교사 (의료)	I-13
84	Logan	Mary Lee		여성	1856.09.17	1919.12.07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D-10
85	Lucas	Edward Albert		남성	1916.07.03	1916.07.18	미국		선교사 자녀	A-19
86	Mayer	Walter Lambuth		남성	1908.10.19	1908.11.23	미국		선교사 자녀	B-01
87	Mckenzie	Annie P.		여성	1838.	1900.12.18	캐나다		선교사	B-38
88	Miller	Anna R.		여성	1865.	1903.06.17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69
89	Miller	E. Hughes		여성	1840.	1919.	미국		선교사 어머니	D-36
90	Miller	Frank		남	1902.	1902.	미국		선교사 자녀	A-60
91	Miller	Fred		남성	1898.	1899.	미국		선교사 자녀	A-60
92	Moore	James H.	모아곰	남성	1914.09.27	1967.04.04	미국	감리교	선교사	B-25
93	Moore	Samuel Forman	모삼울 (毛三葉)	남성	1860.	1906.12.22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24
94	Morris	Charles David	모리시(慕理是)	남성	1869.05.10	1927.01.18	미국	감리회	선교사	F-36
95	Nora			여성		1919.11.30	영국	성공회	선교사 (의료)	I-13
96	Ohlinger	David B.		남성	1881.	1893.	미국		선교사 자녀	C-24
97	Ohlinger	Wilhelma B.		여성	1884.	1893.	미국		선교사 자녀	C-25
98	Paine	Josephine O.	페인(陔仁)	여성	1869.02.21	1909.09.25	미국	감리회	선교사 (교육)	B-42
99	Pak	Jay Sung	박재성	남성	1971.02.07	1983.04.24	한국		선교사 자녀	E-07
100	Pauling	Gordon		남성	1895.12.20	1899.01.11	미국		선교사 자녀	A-58
101	Pieters	E. Campbell		여성	1873.	1906.01.04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B-30
102	Pieters	Eva Field	필(弼)	여성	1869.	1932.07.2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의료)	A-33
103	Preston	Samuel Rhea		남성	1904.08.19	1904.09.22	미국		선교사 자녀	A-03
104	Quinn	Margaret J.	악란지(若蘭誌)	여성	1862.04.27	1934.08.31	캐나다		선교사	A-23
105	Randle	Pauline Glass	우란들(禹蘭莛)	여성	1890.06.08	1925.05.19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B-10
106	Reavis	Edith Josephine		여성	1927.12.27	1988.02.24	미국	복음주의동맹	선교사	B-26
107	Reynolds	John Bolling		남성	1894.	1970.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A-46
108	Reynolds	William Davis III		남성	1893.	1893.	미국		선교사 자녀	A-46
109	Richards	William	이도식	남성	1878.	1920.02.05	영국	구세군	선교사	D-24
110	Robertson	Charles Moormar		남성		1920.05.05	미국		선교사 자녀	D-31
111	Rue	Mae Belle		여성	1900.	1936.	미국	안식교	선교사	F-42

No-	이름		한글이름	성별	출생일	소천일	국적	교단	구분	묘비번호
112	Rue	George Henry	류제한(劉濟漢)	남성	1899.06.27	1993.11.18	미국	안식교	선교사 (의료)	F-41
113	Scranton	M. F. Benton		여성	1832.12.09	1909.10.08	미국	감리회	선교사	B-44
114	Shaw	A. Hamilton		여성	1895.07.02	1971.05.08	미국	감리회	선교사	F-21
115	Shaw	William Earl	서위렴(徐偉廉)	남성	1890.08.22	1967.10.05	미국	감리회	선교사	F-21
116	Shaw	William Hamilton		남성	1922.06.05	1950.09.22	미국		선교사 자녀	F-20
117	Smith	Doreen		여성	1924.	1928.6.	영국		선교사 자녀	D-23
118	曾田 (Soda)	嘉伊智 (Gaichi)	소다가이찌	남성	1867.10.20	1962.03.28	일본		선교사	C-20
119	Stokes	Arlene Amstutz		여성	1916.11.19	1966.03.12	미국	감리회	선교사	F-17
120	Sylvester	Douglas		남성	1919.04.18	1920.01.19	영국		선교사 자녀	D-22
121	Sylvester	Gordon		남성	1915.10.19	1920.01.28	영국		선교사 자녀	D-21
122	Toft	James	두영서(杜永瑞)	남성	1865.07.04	1928.06.15	영국	구세군	선교사	D-17
123	Turner	Arthur Beresford	단아덕(端雅德)	남성	1862.12.02	1910.10.28	영국	성공회	선교사	I-07
124	Turner	Benjamin Ligon		남성	1915.07.18	1915.12.24	미국		선교사 자녀	B-19
125	Turner	James William			1913.01.12	1913.03.12	미국		선교사 자녀	B-20
126	Turner	Rosalie (infant)			1914.06.13	1914.06.14	미국		선교사 자녀	B-20
127	Underwood	E. Van Wagoner		여성	1888.04.11	1949.03.17	미국	복장로회	선교사	F-24
128	Underwood	Gail Clarke		여성	1955.03.25	2000.06.15	미국		선교사 자녀	F-31
129	Underwood	Horace Grant	원두우(元杜尤)	남성	1859.07.19	1916.10.12	미국	복장로회	선교사	F-25
130	Underwood	Horace Grant II.	원일한(元一漢)	남성	1917.10.11	2004.01.15	미국	복장로회	선교사 (교육)	F-29
131	Underwood	Horace Horton	원한경(元漢慶)	남성	1890.09.06	1951.02.20	미국	복장로회	선교사 (교육)	F-26
132	Underwood	J. Vida Davidson	태요안	여성	1915.09.19	1976.02.02	미국	복장로회	선교사	F-27
133	Underwood	L. S. Horton	호돈(好敦)	여성	1851.06.21	1921.10.28	미국	복장로회	선교사 (의료)	F-25
134	Vinton	Cadwy		남성		1894.08.22	미국		선교사 자녀	C-09
135	Vinton	Letitia Coulter		여성	1873.01.31	1903.12.04	미국	복장로회	선교사	C-07
136	Vinton	Tommy		남성		1896.08.19	미국		선교사 자녀	C-08
137	Vinton	Walder		남성			미국		선교사 자녀	C-10
138	Webster	Elizabeth		여성	1856.09.20	1898.03.18	영국	성공회	선교사 (의료)	I-19
139	Weems	Benjamin Burch		남성	1914.03.14	1986.01.31	미국		선교사 자녀	F-12
140	Weems	Ruth Coblenz		여성	1916.05.02	1966.01.23	미국		선교사 자녀	F-13
141	Welbon	Alice Rittenhouse		여성	1912.05.30	1914.02.09	미국		선교사 자녀	A-50
142	Welbon	Arthur G.	오월번(吳越燾)	남성	1866.08.04	1928.04.05	미국	복장로회	선교사	A-51
143	Welbon	Harvey Thomas		남성	1903.05.17	1903.05.27	미국		선교사 자녀	A-52
144	Widdowson	Mary	위도선 부인	여성	1898.04.04	1956.05.10	영국	구세군	선교사	A-31
145	Young	Mabel B.		여성	1883.09.04	1935.11.07	캐나다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 (의료)	C-13

양화진의 진실 I

-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 노회협의회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

펴낸 곳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4 전화 02-332-4155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2-3 전화 02-332-9177

펴낸 날 2010년 8월 25일

〈비매품〉

